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8-67-02

한국과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와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가치관 비교연구

김영란, 조선주, 배호중, Ma ChunHua, Zhang LiPing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8-67-02

한국과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와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가치관 비교연구

인쇄일 2019년 2월 24일
발행일 2019년 2월 28일
발행인 이재영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414-1114
팩 스 044)414-1144
인 쇄 일지사 ☎ 02-503-6971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비매품
ISBN 978-89-322-5090-8 94320
978-89-322-5080-9 (세트)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2018년도 협동연구사업 중국종합연구”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8-67-02	한국과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와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가치관 비교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란 연구위원	조선주 선임연구위원 배호중 전문연구위원
협력연구기관	중국사회과학원		Ma ChunHua 교수 Zhang LiPing 교수

Ⅰ 국문요약 Ⅰ

1. 서론

가. 연구 배경과 목적

한국과 중국은 국가주도의 인구억제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출산 제고로 정책을 전환한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1970년대 국가주도로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하였다. 198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 2.06명으로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 이하로 감소한 이후 30년 이상 저출산 사회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06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역시 1980년대부터 엄격한 인구정책을 시행해왔으며, 2013년 말 기준 합계출산율이 1.67명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노인부양비 증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인구문제에 직면하여 2015년 10월 29일 제18기 5중전회에서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시행을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산율이 반등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미지수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1월 21일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출생아 수는 1,523만 명으로 2017년에 비해 200만 명이 급감하였다.

2005년부터 장기간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정책을 추진해온 한국과 달리 중국은 명시적인 대응 정책이 없으며, 자녀 양육 지원정책도 거의 없다. 명시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출산율 반등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양육지원정책이 거의 없고 자녀부양의 책임을 모두 부모가 온전히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 인구억제정책의 폐기라는 정책 선회만으로 출산율 반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저출산 대응정책에서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 결혼과 출산은 가장 사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동안 저출산 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취업여부, 소득수준, 학력,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외에 결혼에 대한 태도나 자녀가치관 등 가족 관련 가치관도 결혼과 출산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태도는 연령별 성별로 다르다. 연령이 어릴수록 선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동일 연령대에서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최근 저출산 관련 만혼과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가치관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양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나.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의 총인구 추이와 생산가능인구 추이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혼인 및 출산 관련 현황을 알기 위하여 합계출산율, 초혼연령, 20세~34세 미혼인구비율 변화 등을 파악하였다.

둘째, 한국과 중국의 여성경제활동 현황 및 추이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셋째, 한국과 중국의 인구억제정책 동향 및 변화를 정리하였다.

넷째,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중국은 명시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족지원정책을 살펴보았으며, 한국은 저출산 대책 중 양육지원정책과 결혼지원정책 중 신혼부부 주거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다섯째, 서울과 베이징의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결혼과 자녀에 대한 인식, 결혼 및 출산 의향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이다. 한국과 중국의 인구구조, 혼인 및 출산 관련 통계자료, 양국의 인구 정책 및 저출산 대응정책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둘째, 서울과 베이징의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수도인 서울과 베이징에 거주하는 25세~34세 미혼여성 각각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인식, 자녀에 대한 인식, 응답자 본인의 결혼의향 및 사유, 자녀출산의향 등이다. 조사는 양국의 조사전문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패널을 활용하여 온라인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학술포럼을 개최하였다. 학술포럼은 중국 공동연구진 및 중국의 관련 전문가와 한국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개최 일시 및 장소는 2019년 1월 17일(목) 오후 2시~6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이다.

넷째, 중국 현지 연구진워크숍 및 전문가워크숍 개최이다. 중국 현지 연구진 워크숍은 연구 내용과 조사설계, 조사표 전반에 대하여 중국 공동연구진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중국내 인구관련 전문가와의 워크숍을 진행하여 중국의 인구 현황 및 정책 동향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연구진 워크숍은 2018년 11월 6일, 11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전문가 워크숍은 2018년 11월 7일에 개최하였다.

2. 한국과 중국의 인구동향

가. 한국

2000년대 이후 저출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2년 처음으로 50만 명 이하가 되었으며 2017년에는 40만 명 이하로 떨어져 357,771명을 기록하였다.

합계출산율은 1970년에 4.53명이었으며 인구억제정책의 영향으로 1977년에 2.99명을 기록, 3명대가 무너졌다. 1984년에 1.74명으로 2명대로 낮아진 이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5년은 1.08명을 기록하여 출산 쇼크를 경험하였다. 2005년 이후 합계출산율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7년에 다시 1.05명을 기록하였다.

평균초혼연령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1990년에 남성 27.79세, 여성 24.78세였으며, 2005년에는 남성 30.87세, 여성 27.72세로 남성이 30세를 넘어섰다. 그리고 2017년에는 남성 32.94세, 여성 30.24세로 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이 30세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세에서 34세까지의 성별 미혼인구 비율 변화를 보면 만혼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4세의 경우 1970년에 여성은 절반이, 남성은 대부분이 미혼이었으나 2015년에는 여성 96.8%, 남성 98.8%로 남성과 여성 대부분이 미혼이다. 25~29세는 1970년에 여성 9.7%, 남성 43.4%가 미혼이었으나 2015년에는 여성과 남성 모두 미혼 인구 비율이 기혼보다 더 높다. 30~34세는 1970년에 여성과 남성 대부분이 기혼이었으나 2015년에는 남성은 절반 이상이, 여성도 10명중 약 4명이 미혼이다.

나. 중국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의 초혼 연령은 22세에서 25.4세로 늘어났고 남성은 24.11세에서 27.21세로 늘어났다.

1995년부터 2016년까지 20~34세 연령의 여성과 남성의 미혼 비율을 보면 1995년에 비해 남성과 여성 모두 미혼 비율이 상승하였다. 1995년에 20~24세 여성은 47.4%가 미혼이었으나 2016년에는 73.5%로 늘어났다. 20~24세 남성 미혼 비율은 1995년 68.7%에서 2016년 85.7%로 증가하였다. 25~29세 여성의 미혼 비율은 1995년 5.3%에서 2016년 26.5%로 늘어났다. 25~29세 남성은 1995년에 18.2%가 미혼으로 기혼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었으나 2016년에는 절반에 가까운 42.2%가 미혼이었다. 30~34세는 남녀 모두 기혼 비율이 다수이긴 하지만 1995년과 비교하여 남녀 모두 미혼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중국의 남성과 여성의 결혼은 최근으로 올수록 모두 늦어져 만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상승과 하락 등 변화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1993년 대체출산율보다 낮은 2.03명을 기록했다. 2000년 전후 최저치 1.50명으로 낮아진 후에 소폭 상승하여 2013년 1.60명이 2015년 말 중국은 두 자녀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고, 출생아 수는 2015년 1,655만 명에서 2016년의 1,786만 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2017년에 다시 1,723만 명으로 줄었고 조출생률도 12.95%에서 12.43%로 하락했다. 또 중국 국가통계국의 1월 21일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출생아 수는 1,523만 명으로 2017년에 비해 200만 명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한국과 중국의 인구정책과 가족지원정책

가. 한국

1) 인구정책 개괄

한국의 인구정책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는데 당시에 급격히 늘어나는 출생아수를 억제하여 사회발전을 도모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출산 억제정책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민의 능동적인 참여로 20여년 만인 1983년에 합계출산율 2.1명 이하의 인구대체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으로 낮추는데 성공하였다. 합계출산율이 1.6명~1.7명으로 충분히 낮아진 1980년대 중반 이후에도 출산억제정책은 지속되었으며, 1996년에 들어서야 정부의 인구정책은 출산억제정책에서 인구자질향상을 위한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출산수준은 1.5명 미만으로 낮아졌고, 인구를 둘러싼 정책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급기야 2001년부터는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에 머무르면서 저출산 해결 및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가 국가 최대의 현안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2004년 출산장려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한다고 선언하였으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5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06년 8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4대 분야 237개 세부과제를 통해 5년간 42.2조원을 투입하였다. 이어 2011년부터는 3대 분야, 231개 세부과제, 109.9조원 규모(저출산 부문에는 60.5조원 투입)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었으며, 2016년부터는 197.5조원 규모(저출산 부문에는 108.4조원 투입)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2016).

2) 가족지원정책

가족지원정책은 가족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가족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은 신혼부부 대상의 주거지원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임신·출산 지원, 양육보육지원, 교육지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이들 정책 가운데 일부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신혼부부 대상 주거지원정책은 공급정책과 금융지원으로 구분되는데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택 공급 정책은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주택, 신혼희망타운, 분양주택 특별공급이 있고, 금융지원으로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대출 상품이 있다. 지원 대상자는 결혼 후 일정기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이며, 제도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자녀양육지원정책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정책 영역이다. 대상이나 지원내용에 따라 많은 지원제도들이 있

지만 본고에서는 임신출산지원, 양육 및 보육지원, 교육지원으로 크게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임신·출산지원은 먼저 임신출산 의료비와 난임 관련 의료비 지원, 신생아 의료비와 건강관리 지원 등 의료비 지원이 있다. 다음으로 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임신출산 시기 휴가 지원이 있고 출산 및 입양 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경제적 지원이 있다.

양육 및 보육지원은 크게 육아기 시간 지원으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가 있고,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이 있다. 다음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0~5세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비용이 전액 지원되며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도 지원된다.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와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양육 및 보육지원의 경우도 소득기준에 무관하게 전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데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이용비용이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교육지원은 한국에서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무상으로 교육을 받는다. 다음은 교육급여,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등이 있다. 그러나 의무교육 이외의 교육지원은 소득기준에 따라 대부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나. 중국

1) 인구정책 개괄

중국은 1980년대 이후 산아제한정책을 30여 년간 실시했고, 제한적인 조건에서 완화하는 과정을 거친 후 최근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였다. 중국의 인구억제정책은 ‘출산장려책-출산억제정책-산아제한계획-엄격한 산아계획’ 등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949년 건국 초기에 인구 증가에 대해 정부가 지원, 홍보, 격려를 하며 다자녀를 둔 엄마들을 대상으로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즉, 1949년부터 1953년까지 인구증가를 정책기조로 내세우며 출산장려를 통한 노동력 확보와

생산력 증대를 도모하였다.

1953년 첫 인구조사 결과 예측치를 웃도는 인구성장을 기록하며 인구증가 문제가 대두되자 인구억제정책 시행 및 피임, 인공유산에 대한 각종 제재조치를 완화하였다.

이후 중국 국무원은 1971년 「출산제한 추진에 대한 업무 보고서(关于做好计划生育工作的报告)」에서 “계획 출산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1973년 12월 “더 늦게(晚), 더 낮게(稀), 더 적게(少)”라는 산아제한방침이 정해졌다. 1978년 2월 26일 출산제한 추진과 인구 목표에 관한 내용은 처음으로 국무원 총리의 「정부보고서(政府工作报告)」에 실렸다.

1978년 중국 중앙정부는 「‘국무원 출산제한 팀’ 첫 업무 회의 보고서(关于国务院计划生育领导小组第一次会议的报告)」를 내놓으면서 국민의 혼인 연령과 자녀수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시했다. 이어서 1979년 1월 ‘한 자녀 정책’ 시대와 ‘법률로 국가를 다스리는 법치시대’에 접어들면서 ‘한 자녀만 낳기를 장려하라’는 구호가 생겨났다. 이후 ‘한 자녀 정책’은 1979년 중국의 모든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한편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중국의 인구 추세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노동력 문제, 고령화 문제와 인구 구조 문제 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14개 성(省)이 연이어 두 번째 자녀 출산 간격 제한을 취소했다. 2013년 11월 중국 공산당의 18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에 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여러 중요한 결정 사항(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을 내놓으면서 출산 제한이라는 근본적인 국가 정책을 바탕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외동 자녀일 경우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고 출산 정책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3년 12월 중국중앙정부와 국무원이 「출산정책에 대한 수정 의견(关于调整完善生育政策的意见)」을 내면서 출산 정책조정의 중요한 의미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명시화했다. 부부 중 한 명이 외동 자녀일 경우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단독 두 자녀(单独两孩)’ 정책이 법으로 제정되고 실시되었다.

이후 2015년 10월 29일 폐막된 제18기 5중전회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보다 개방하여 ‘전면적 두 자녀 정책(全面二孩)’의 시행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2) 가족지원정책

중국에는 명시적인 가족정책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산아제한 가정의 장려 및 지원에 관련된 정책이 있었고, 출산 보험, 출산휴가제도,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금 등이 있다. 또한 보육서비스도 거의 없다.

산아제한 가정 장려금과 현금 보조는 2015년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실시 이후 자율적으로 한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대한 장려혜택은 시행하지 않게 되었다.

출산 보험은 여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 급여와 출산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점차 출산 보험 모델로 대체되고 있다. 고용 사업체는 해당 사업체 급여 총액의 일정 비율(0.5%미만)을 출산 보험금으로 납부하며 근로자 개인이 납부하지 않는다. 출산보험금은 출산보조금과 의료보조금을 지급한다.

중국은 보편적 복지제도 성격의 아동 지원금은 없다. 그러나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생활보조, 학비보조, 의무교육단계 학생에 대한 각종 비용 면제가 있다.

휴가제도의 경우 법정 출산 휴가만 있으며 한국과 같은 법정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법정 출산휴가는 98일이며, 출산 전 15일간 쉴 수 있다. ‘전면적 두 자녀 정책(全面二孩)’ 실시 후, 전국 31개 성, 구, 시에서는 출산 휴가를 모두 연장하였다.

4. 서울과 베이징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 비교

가. 응답자 특성

연령은 서울은 25~29세 60.5%, 30~34세 39.5%이며, 베이징은 25~29세

73.6%, 30~34세 26.4%이다. 응답자 평균연령은 서울 28.9세, 베이징 28.2세이다. 교육수준은 서울과 베이징의 학제에 따라 각각 조사하고 양국의 학제를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재범주화하였다. 조사 결과 서울과 베이징 모두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졸업이 서울 73.9%, 베이징 70.2%이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서울과 베이징 모두 전문대 졸업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인 서울과 베이징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나. 결혼 관련 가치관

서울의 미혼여성은 베이징의 미혼여성과 비교하여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고, 유보적인 견해인 선택사항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베이징보다 훨씬 높다. 또한 결혼을 강력하게 부정하는 견해인 “하지 말아야 한다”는 서울(2.2%)이 베이징(7.5%)보다 더 낮았다. 서울의 미혼여성은 결혼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고 선택적이고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결혼과 가족생활관련 항목에 대한 의견을 보면 가족생활 관련 최근의 변화인 비혼, 비혼동거, 결혼 후 무자녀, 부부중심의 결혼생활 등에 대하여 베이징보다 서울이 동의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다”에 대해 서울은 4점 척도에서 3.17점, 베이징은 2.89점으로 서울의 동의 정도가 더 높다.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와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에 대해서도 서울이 베이징보다 동의 정도가 높았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부부당사자보다 가족 간의 관계를 우선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서울의 동의 정도가 베이징보다 낮았다. 이는 베이징의 경우 결혼은 가족관계가 더 우선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도 괜찮다”에 대해서는 서울 2.19점, 베이징 2.15점으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서 서울과 베이징 미혼여성의 동의 정도가 유사했다. 한국과 중국 모두 비혼 출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경우 법적인 혼인이 아닌 경우 출생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혼출산에 대하여 동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을 것이다.

다. 자녀 관련 가치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보면 “꼭 있어야 한다”에 대하여 서울은 5.8%만이 동의하였다. 반면 베이징은 30.3%가 동의하여 차이를 보인다.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에 대해서는 서울은 59.9%, 베이징은 31.7%가 동의하고 있다. 이를 보면 서울의 미혼여성은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생각을 하는 비중이 높고 베이징 미혼여성은 자녀가 있는 게 더 낫거나,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더 높다.

자녀양육의 가치는 4개 항목에 대하여 동의 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다”에 대해서 서울 2.97점, 베이징 3.25점으로 서울 미혼여성의 동의 정도가 베이징 미혼여성보다 낮다. “노후 경제적 부양을 위해서 자녀가 필요하다”항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베이징보다 서울의 미혼여성이 동의정도가 낮다. 그러나 “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든 일이다”,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 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등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나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는 서울의 미혼여성의 동의 정도가 높았다. 이는 서울의 미혼여성은 베이징의 미혼여성보다 자녀 양육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결혼 의향

현재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1순위와 2순위로 2개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1순위와 2순위를 중복응답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과 베이징 모두 “마땅한 사

람이 없어서”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많은 사유를 보면 서울은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이므로(21.1%)”, “결혼제도가 남자집안 중심이기 때문에(18.0%)”,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17.4%)”, “결혼하는데 드는 비용이 마련되지 않아서(17.2%)”의 순이었다. 즉, 서울의 미혼여성은 결혼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결혼제도의 가부장성, 일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며 결혼비용 문제는 순위가 낮았다.

한편 베이징은 “결혼 후 생활비 지출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서(20.8%)”, “결혼생활과 직장일을 동시에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19.1%)”, “나의 여가문화생활에 지장있을까봐(15.3%)”,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14.8%)”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용문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대한 걱정이 순위가 높고, 개인 생활이나 일 우선은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았다. 특히 결혼제도가 남자 집안 중심이라는 결혼제도의 가부장성 관련 항목은 서울은 18.0%인 반면 베이징은 3.9%에 불과하여 차이가 있고, 베이징의 경우에는 경제적 문제나 일·가정 양립 등 사유로 인한 비중이 높아 서울과 차이를 보인다.

향후 결혼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결혼할 생각이 있다”가 서울 41.1%, 베이징 49.4%로 가장 많았고,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는 서울 20.4%, 베이징 25.7%로 두 번째로 많았다. 서울과 베이징을 비교하면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베이징보다 서울이 8.3%p 낮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비중은 서울(20.2%)이 베이징(12.3%)보다 높다. 즉, 서울이 베이징과 비교하여 결혼의향이 낮은 수준이며, 결혼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다. 또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의 경우에도 서울이 11.9%, 베이징 6.1%로 서울이 더 높다. 전반적으로 서울의 미혼여성이 베이징의 미혼여성보다 결혼의향이 낮고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 희망 자녀수 및 사유

결혼을 하게 되면 희망하는 자녀수는 서울 1.8명, 베이징 1.6명으로 서울이 베이징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를 보면 서울 17.4%, 베이징 22.1%로 베이징의 동의 비율이 높았다. 자녀 중에서 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베이징이 서울보다 높은 것이다.

자녀를 1명보다 적게 두기를 희망하는 경우 그 사유를 보면 서울과 베이징 모두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서울은 30.1%, 베이징은 29.7%이다. 두 번째는 서울은 “출산 및 육아로 본인의 여가문화생활에 지장있을까봐(1.4%)”, “출산 및 육아로 직장 내에서의 불이익이 우려되어서(9.3%)”의 순이었다. 베이징은 “아이를 맡길 사람이 없어서(16.8%)”, “아이를 맡길 시설이 없어서(7.7%)”의 순이다. 희망 자녀수가 0명인 경우와 1명인 경우를 구분하여 분석하여도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서울의 미혼여성들은 개인 생활에 자녀가 장애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명 이상의 자녀는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이 있다고 하여도 추가적으로 출산할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반면 베이징의 경우에는 돌봄 사유가 많아 자녀돌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있을 경우 출산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5.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및 시사점

결론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저출산은 강력한 인구억제정책을 시행한 정

책적 요인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주도의 인구억제정책에 대하여 일반국민들이 수용하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결혼이나 출산은 개인의 사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며 동일한 사회경제적 여건에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출산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즉, 결혼과 출산행위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개인의 가치관 요인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 결과 한국과 중국은 이제 인구에 있어서 저출산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국가는 자녀를 낳으라고 하지만 일반 국민 개개인은 자녀를 낳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사회경제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자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 낮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국민 개개인의 결혼이나 출산 의향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명시적으로 출생 장려에 대한 우대 정책이 없고 전면적 두 자녀 정책 또한 출산장려라기 보다 한 자녀에 대한 우대와 두 자녀에 대한 패널티를 없앴을 뿐이다. 또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나 보육 관련 공적 서비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도 없는 상황이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의 정책환경은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정책 환경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긍정적인 점은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 측면이다. 서울과 베이징을 비교했을 때 베이징의 미혼여성들은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결혼의향도 높고, 출산의향도 높다. 또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은 서울보다 높은 수준이며,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서울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결혼을 하지 않는 사유나 출산을 적게 하려는 사유가 경제적 비용 문제나 돌봄 문제가 더 많았다. 서울에서는 근본적으로 결혼제도의 문제, 자녀 보다는 개인 생활을 중시하는

태도 등이 많았던 것과는 비교되는 지점이다. 베이징 미혼여성의 응답 경향을 볼 때 중국에서 향후 돌봄 지원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확충하고 결혼과 자녀 양육관련 경제적 지원제도,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도입한다면 출산을 할 의향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에 비해 중국은 저출산 문제에 관한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합계출산율이 한국보다 높고,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의향도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과 달리 새롭게 도입할 정책 수단은 거의 없어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의향이 매우 낮아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한국에서 여성의 결혼 및 출산 의향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결혼과 출산을 포함한 일상생활 전반에 있어서 성불평등 문화구조가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사회문화적 전환이 요구되며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에서 출산율 관련 전망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중국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국의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중국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은 결혼이나 자녀 관련 사회문화적인 구조의 변화가 요구된다. 특히 명시적인 차별은 없지만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차별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

나. 정책제언

1) 한국 - 가족제도의 성불평등 구조 변화

한국에서 저출산 대응정책은 질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사회경제적 요인이 결혼과 출산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관련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하고 여성의 결혼출산 의향이 낮아지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결혼제도는 다분히 가부장적이다. 또 육아와

가사는 여전히 여성의 책임으로 간주된다. 공적인 영역에서 차별은 명시적으로 사라졌지만 보이지 않게 여성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이 증가 추세이지만 여성보다 낮은 비율이다. 또 가족이나 일상생활에서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들이 남아 있다. 최근 한국은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저출산 대책에서 출산을 강요하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고 성평등과 아동에 집중하는 등 프레임을 바꾸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결혼과 출산을 포함한 가족생활, 일상생활에서 성불평등한 구조, 가부장적 문화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한국 사회는 중국보다 가족지원 관련 재정지출이 많은 국가이다. 그러나 여전히 자녀돌봄의 주요한 책임은 가족이 맡고 있으며 가족 안에서 여성의 역할로 되어 있다. 또 일상생활 중에서 가족생활 측면에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요소가 많다. 예를 들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족호칭의 경우도 남편의 집안에 대한 호칭은 거의 존대하는 것 등이 그렇다. 제사나 장례 등에서도 남성 중심의 문화가 당연시 되고 있다. 젊은 미혼여성을 중심으로 이러한 가족문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측면으로 인하여 결혼을 기피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은 성불평등한 사회문화구조 및 가족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겠다.

성불평등한 사회문화구조 및 가족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문화 구조 내 성불평등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명시적으로 법이나 제도상 성차별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가부장적 가족제도인 호주제가 폐지되었고, 「민법」상 상속 등에 있어서도 딸과 아들의 차별은 없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경제활동에서의 남녀 차별은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는 교육기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가족 내 역할에서 육아나 가사는 여성이 주로 하고 있

으며 이러한 가족 내 역할로 인하여 기혼여성들은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은 여전하다. 또, 가부장적 가족관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 명절이나 제사 등 여성의 부담이 있으며, 남편의 가족관계를 중시하는 가족문화가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음은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법제도상 성불평등 실태가 아닌 사회문화구조 내 뿌리깊이 남아 있는 가부장적 규범이나 가부장적 규범에 기반한 불평등 실태를 불평등의 내용, 불평등이 작동하는 장소나 방식, 관계 등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부장적 가족관계 호칭의 재정비, 가부장적 가족의례 문화 개선 등이다.

둘째, 가족 내 육아 및 가사 분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참고로 김영란 외(2018: 150)는 성평등한 가사노동 수행을 위하여 가사노동의 핵심 주체로서 남성의 주체성 회복과 역량 강화를 돕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확대 등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를 위한 물리적 구조적 조건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 엄마(여성)을 중심으로 구성 운영되어온 자녀양육환경(예를 들어 녹색어머니회 등) 정비, 남성의 육아 및 가사 수행 기술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성불평등한 가족제도 및 사회문화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전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구조나 의식구조는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첫 번째 정책과제를 통해 발굴된 성불평등 실태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변화를 이끌어 내기위한 문화적인 혁신 운동 및 캠페인 추진이 필요하다.

2) 중국 - 가족지원정책 도입

중국에서는 가족지원정책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결혼 및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보육지원을 위한 공공서비스,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등이다.

결혼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은 주거비가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또, 결혼식을 간소화하도록 유도하는 인식개선도 고려가능하다.

다음 자녀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수혜자격 기준을 확대하거나 초등학교와 유치원 과정을 의무화하여 교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

보육지원을 위한 공공서비스는 현재는 거의 없고 대부분 조부모가 돌봄을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자녀를 적게 낳으려는 이유로 “돌봄 시설이 없어서”, “돌봄 사람이 없어서” 등 돌봄 사유의 비중이 높았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자녀 돌봄에 있어서 조부모 자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공적 보육지원서비스는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적 보육지원서비스 이용 시 보육료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도 도입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는 일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을 들 수 있다. 중국은 현재 출산휴가는 있으나 육아휴직제도가 없기 때문에 영아돌봄은 조부모가 지원하며 조부모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일을 그만두거나 비용이 비싼 민간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일하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에서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가장 먼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한국의 사례에 의하면 가족지원정책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성불평등한 가족문화가 지속될 경우 여성의 결혼 및 출산 의향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국에서도 한국과 동일하게 성불평등한 사회문화구조를 개선하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제1장 서론	29
1. 연구 배경 및 목적	30
2.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36
3. 연구의 한계점 및 의의	40
제2장 한국과 중국의 인구동향	43
1. 한국	44
가. 총인구 추이	44
나. 혼인 및 출산	46
다. 여성의 경제활동	50
2. 중국	56
가. 총인구 추이	56
나. 혼인 및 출산	57
다. 여성의 경제활동	63
3. 양국의 인구동향 비교	68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	75
1. 한국	76
가. 인구억제정책의 추진 및 적극적 저출산 대책으로의 전환	76
나. 한국의 저출산 대응 가족지원정책	92
2. 중국	99
가. 인구억제정책 추진 및 두 자녀 정책으로의 전환	99

나. 중국의 가족지원정책	106
3. 양국의 정책 동향 비교	120

Ⅳ 제4장 서울과 베이징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 비교 123

1. 조사개요	124
가. 조사 목적 및 조사 대상	124
나. 조사 내용	125
다. 표본 설계	128
2. 응답자 특성	133
가. 일반적 특성	133
나. 부모 및 가족관련 사항	138
3. 결혼 및 자녀 가치관 비교	140
가. 결혼 관련 가치관	140
나. 자녀 관련 가치관	146
4. 본인의 결혼 및 출산 의향 비교	149
가. 결혼 관련	149
나. 자녀 관련	153
다. 결혼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 관련	156
5. 출산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157
6. 요약 및 시사점	159

Ⅳ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63

1. 결론 및 시사점	164
2. 정책제언	167

가. 한국 : 가족제도의 성불평등 구조 변화 167
나. 중국 : 가족지원정책 도입 170

Ⅱ 참고문헌 173

Ⅲ 부록 185

1. 조사표(국문) 186
2. 조사표(중문번역본) 197

표 차례

표 1-1	이상적이라 여기는 자녀의 수(중국)	33
표 2-1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1970년~2017년)	51
표 2-2	한국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1970년~2017년)	52
표 2-3	한국 여성의 연령대별 고용률	54
표 2-4	한국 취업자의 교육정도 분포	55
표 2-5	중국의 인구와 부양비	57
표 2-6	중국의 20~34세 미혼인구 비율	60
표 2-7	중국의 연령대별 성별 경제활동 인구 변화	66
표 2-8	중국 취업자의 교육정도 분포	67
표 3-1	가족계획정책의 변천	80
표 3-2	신혼부부 대상 주거지원정책	94
표 3-3	육아지원정책	98
표 3-4	산아제한 가정 장려 및 지원 정책과 현금 보조금	108
표 3-5	취약 아동에 대한 지원금/보조금	113
표 4-1	조사 항목 및 측정	127
표 4-2	한국 서울의 층별 모집단 현황	129
표 4-3	한국 서울의 층별 표본배분 결과	130
표 4-4	응답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	133
표 4-5	응답자의 경제활동상태 및 직업	134
표 4-6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	135
표 4-7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주택점유형태	136
표 4-8	주거비 부모지원 및 주거비 대출 여부와 월세 금액	137
표 4-9	베이징 응답자의 베이징 호구 여부 및 베이징 거주기간	137
표 4-10	부모의 평균 연령	138
표 4-11	부모의 교육수준	138
표 4-12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및 월평균소득	139

표 4-13	형제자매 여부	139
표 4-14	결혼 필수에 대한 의견	141
표 4-15	결혼과 가족형태관련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 평균비교	142
표 4-16	가족 내 성역할에 대한 동의 정도 평균비교	143
표 4-17	적정 결혼 및 적정 첫 자녀 출산 연령에 대한 평균비교	143
표 4-18	결혼비용의 동등한 분담에 대한 동의 정도 평균비교	144
표 4-19	성별 결혼비용 분담 비중 평균비교	145
표 4-20	자녀 필수에 대한 의견	146
표 4-21	자녀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평균비교	147
표 4-22	부모의 자녀부양 책임에 대한 동의 정도 평균비교	148
표 4-23	현재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순위+2순위	150
표 4-24	현재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순위	151
표 4-25	결혼할 생각이 있는지 여부	152
표 4-26	결혼할 생각이 있는 경우 그 사유	153
표 4-27	결혼 후 희망 자녀수와 아들에 대한 의견	154
표 4-28	자녀를 1명 이하로 두기를 희망하는 경우 그 사유: 1순위	155
표 4-29	희망 자녀수가 0명인 경우와 1명인 경우 각각 그 사유: 1순위	156
표 4-30	결혼비용과 신혼집 관련 부모 지원 기대	157
표 4-31	국가 및 직장의 양육지원에 대한 의견 비교	158
표 4-32	출산양육지원 항목별 필요정도 비교	159

그림 차례

그림 1-1	중국 여성의 연령대별 미혼율 추이	32
그림 1-2	중국 남성의 연령대별 미혼율 추이	32
그림 1-3	단계별 연구내용 및 연구 방법	40
그림 2-1	한국의 총인구 추이	44
그림 2-2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추이	45
그림 2-3	한국의 출생아 수	46
그림 2-4	한국의 합계 출산율	47
그림 2-5	한국의 조혼인율	48
그림 2-6	한국의 초혼연령 추이	49
그림 2-7	한국의 연령대별 미혼비율	50
그림 2-8	중국의 총인구 추이	56
그림 2-9	중국의 조혼인율	58
그림 2-10	중국의 초혼연령추이	59
그림 2-11	중국의 출생아수와 조출생률	62
그림 2-12	중국의 합계출산율	63
그림 3-1	한국의 인구정책 개괄	77
그림 3-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저출산 대책 핵심 추진 방향 ·	91
그림 5-1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방향	169
그림 5-2	중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방향	172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3. 연구의 한계점 및 의의



1. 연구 배경 및 목적

한국과 중국은 국가주도의 인구억제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출산 제고로 정책을 전환한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1970년대 국가주도로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하였다. 198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 2.06명으로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 이하로 감소한 이후 30년 이상 저출산 사회가 지속되고 있다(통계청, 2017a). 이에 한국 정부는 2006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 역시 1980년대부터 엄격한 인구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2013년 말 기준 합계출산율이 1.67명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그 결과 노인부양비 증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인구문제에 직면하여 2015년 10월 29일 제18기 5중전회에서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시행을 발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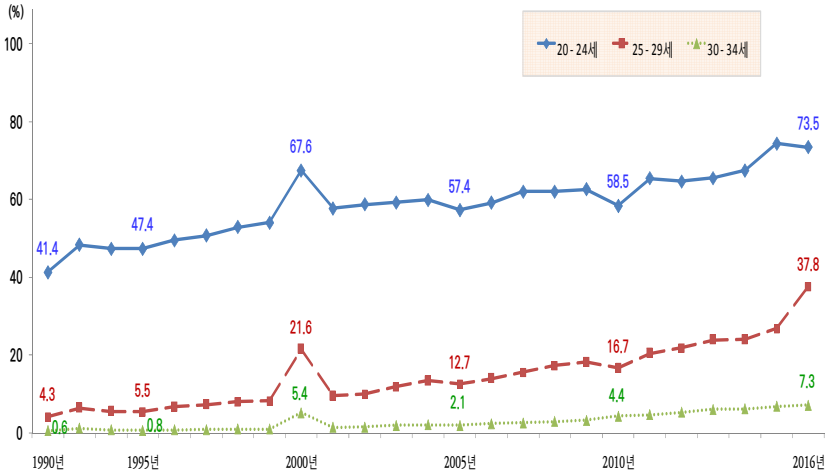
한국의 경우 적극적으로 저출산 대응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저출산의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만혼과 비혼의 증가, 소자녀화 및 자녀출산 연기 등이 직접적인 요인이다. 한국의 초혼연령은 1990년 남성 27.8세, 여성 24.8세에서 2017년 남성 32.9세, 여성 30.2세로 높아졌다. 30~34세 미혼인구 비율을 보면 남성은 1990년 13.9%에서 2015년 55.8%로, 여성은 5.5%에서 37.5%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17b). 특히 미혼여성의 경우 결혼을 필수로 생각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20~29세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를 보면 결혼을 필수로 생각하는 비율(‘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1998년 54.8%에서 2016년 30.6%로 낮아져 10명중 3명만이 결혼을 필수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20~29세 남성은 76%에서 47.2%로 낮아졌으나 여성들보다는 결혼을 필수로 생각하는 비율이 17.2%p 높다(통계청, 2017d).

물론 한국에서 이처럼 미혼인구의 결혼가치관의 변화 배경에는 고용 불안정, 결혼 및 주거비용 부담, 자녀양육비용 부담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저출산의 요인이 되는 것은 미혼 인구의 증가 및 출산 지연 등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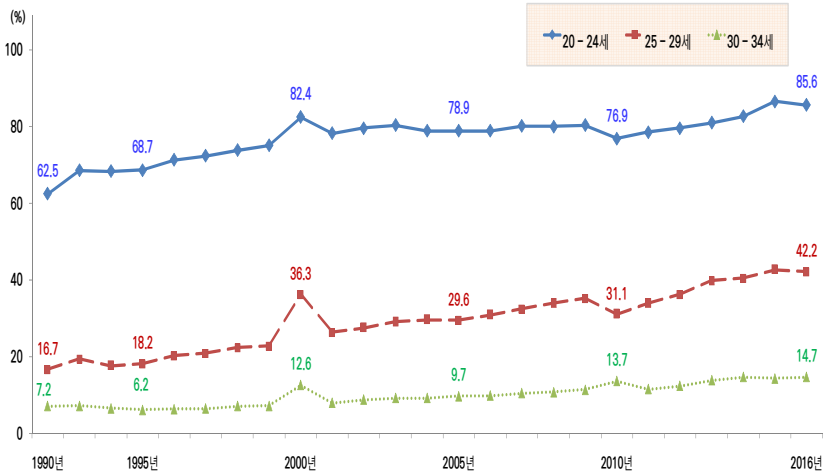
한편 중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최근 인구억제정책을 포기하고 두 자녀 정책으로 선화하였으나,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산율이 반등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미지수이다. 즉, 중국에서도 한국과 유사하게 초혼연령이 상승하고 있다. 아래 [그림 1-1]과 [그림 1-2]를 보면 20~24세 여성의 미혼율은 1990년 41.4%에서 73.5%로 급증하고 있다. 25~29세 여성들도 1990년 4.3%만이 미혼이었으나, 2016년에는 10명중 4명이 미혼이다. 또 남성의 미혼인구 비율 증가와 비교하면 여성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 20대 후반 남성 미혼인구가 31.1%에서 2016년 42.2%로 11.1%p 증가한 반면 여성은 16.7%에서 37.8%로 21.1%p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국에서도 한국과 유사하게 여성들의 만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1 중국 여성의 연령대별 미혼율 추이



자료: China Population and Employment Statistical Yearbook 2017-1991, and the data of 2000 from census 2000.

그림 1-2 중국 남성의 연령대별 미혼율 추이



자료: China Population and Employment Statistical Yearbook 2017-1991, and the data of 2000 from census 2000.

또한 베이징(北京), 귀양(贵阳), 창사(长沙), 광저우(广州) 및 난닝(南宁) 지역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응답자 중 29.48%, 10명중 3명 정도가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한 조사 결과도 있다(HU Deng & GUO Lin, 2009). 그 외에 이상적인 자녀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인구대체 이하 수준인 1.67명이며, 2명이하인 비율이 84.6%로 나타나고 있다.

표 1-1 이상적이라 여기는 자녀의 수(중국)

	이상적이라 여기는 자녀의 수, %				평균	표준 편차	95% 신뢰구간	
	1.00-1.49	1.50-1.99	2.00-2.09	2.1+			하한	상한
Total	23.5	47.3	8.8	20.4	1.82	0.44	1.76	1.88
1980~1989	9.1	31.8	9.1	50.0	2.13	0.50	1.98	2.28
1990~1999	20.7	43.1	3.4	32.8	1.90	0.47	1.77	2.02
2000~2011	29.8	54.8	11.3	4.0	1.67	0.32	1.61	1.73

자료: Jiawei Hou et al., 2014, "A change in the desired fertility of Chinese Population: 1980-2011", Chinese Social Sciences, No.4

2010년 이후 4차례에 걸친 전국 대표 설문 조사 결과 출산 의도와 행동의 차이는 정책적 제약이 33%에 불과하며 나머지 변화는 사회 경제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평균 출산 의도 수준은 1.86으로 대체 수준보다 훨씬 낮다. 이는 기존의 가족계획정책이 사람들의 출산율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러한 조사 결과들은 현재 진행 중인 선택적인 두 자녀 정책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게 한다(WANG Jun & WANG Guangzhou, 2016).

즉, 중국도 한국과 유사하게 초혼연령이 상승하고 미혼여성을 중심으로 결혼에 대한 의향이 낮아지고 있는 등 낮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지속

할 가능성이 높은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중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최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여성들에 대해 일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최근 더 높아지고 있다는 연구결과¹⁾도 있어 아직까지 결혼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경향이 높아 한국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YANG Juhua & DU Shenghong, 2017).

종합하면 한국과 중국은 저출산·고령화라는 유사한 인구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혼인 및 출산에 대한 태도는 상이할 가능성이 있다. 유사한 상황은 양국 모두 최근 평균초혼연령이 상승하고 있으며 미혼여성을 중심으로 결혼에 대한 의향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 양국 모두 유사한 가족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자녀부양책임의식이 높은 나라라는 점, 그래서 가족계획사업의 영향으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 부담을 느끼는 수준이 높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기대 자녀수가 양국 모두 2명 이하라는 점 등이다. 그러나 상이한 점은 한국의 경우 미혼 여성들이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는데 중국의 경우는 아직은 한국보다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정책 환경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은 매우 다르다. 한국은 2005년 이후부터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정책을 추진해왔다.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고용정책, 주거복지정책 등 사회정책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역시 저출산을 핵심 국정 아젠다로 설정하고 대응

1)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더 좋다”에 대한 동의 비율이 2000년 36.35%에서 2010년 46.24%로 증가함. 남성보다 여성의 동의수준이 더 높았음(YANG Juhua & DU Shenghong, 2017).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2005년부터 장기간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정책을 추진해온 한국과 달리 중국은 명시적인 대응 정책이 없으며, 자녀 양육 지원정책도 거의 없다.

그럼에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낮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출산율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에서 출산율을 하락시킬 요인들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정체하거나 등락을 하고 있는 것은 가족 정책지출비용의 상승과 무관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김영란 외, 2015: 113)도 있다. 즉, 한국에서 저출산 대응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합계출산율은 현재 수준보다 하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이다.

그 배경에는 한국에서 각 개인은 자녀 부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결혼을 아예 하지 않거나 결혼하더라도 자녀수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고 그 결과 전사회적으로는 저출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양육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에도 일반국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이유이다.

중국 역시 한국과 유사하게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의식이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명시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출산율 반등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양육지원정책이 거의 없고 자녀부양의 책임을 모두 부모가 온전히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 인구억제정책의 폐기라는 정책 선회만으로 출산율 반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일시적으로 출생아 수 증가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고 기대 자녀수가 2명 미만임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대체 이상 수준의 합계출산율로 반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하겠다.

저출산 대응정책에서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 결혼과 출산은 가장 사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동안 저출산 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취업여부, 소득수준, 학력,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이외에 결혼에 대한 태도나 자녀가치관 등 가족 관련 가치관도 결혼과 출산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태도는 연령별 성별로 다르다. 연령이 어릴수록 선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동일 연령대에서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필수로 생각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청년세대의 가족관련 가치관은 향후 결혼 및 출산 관련 변동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미혼여성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결혼, 출산 등의 가치관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저출산의 주요한 요인으로 주목하고 있으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도 가치관과 인식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최근 저출산 관련 만혼과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가치관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양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2.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의 총인구 추이와 생산가능인구 추이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혼인 및 출산 관련 현황을 알기 위하여 합계출산율, 초혼연령, 20세~34세 미혼인구비율 변화 등을 파악하였다.

둘째, 한국과 중국의 여성경제활동 현황 및 추이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셋째, 한국과 중국의 인구정책으로 추진된 인구억제정책 동향 및 변화를 정리하였다.

넷째,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중국은 명시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족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한국은 저출산 대책 중 양육지원정책과 결혼지원정책 가운데 신혼부부 주거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다섯째, 한국과 중국의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을 비교분석하였다. 서울과 베이징의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기반하여 결혼과 자녀에 대한 인식, 결혼 및 출산 의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이다. 한국과 중국의 인구구조, 혼인 및 출산 관련 통계자료 및 양국의 저출산 관련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또한 양국의 인구 정책 동향 및 추진과정과 육아지원정책 등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둘째, 서울과 베이징의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수도권 서울과 베이징에 거주하는 25세~34세 미혼 여성 각각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평균초혼연령을 고려하여 정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인식, 자녀에 대한 인식, 응답자 본인의 결혼의향 및 사유, 자녀출산의향 등이다. 조사는 양국의 조사전문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패널을 활용하여 온라인설문조사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학술포럼을 개최하였다. 중국 공동연구진 및 중국의 관련 전문가와 한국의 전문가를 초청한 학술포럼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

였다. 개최 일시 및 장소는 2019년 1월 17일(목),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이다. 학술포럼의 세부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PROGR
14:00 - 14:20	개회식	사회: 배호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산연구센터 전문연구원) 개회사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축사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주제 발표 및 토론		좌장: 이상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14:20 - 15:30	발표 1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와 혼인 및 출산 동향 Ma Chunhua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발표 2	한·중 미혼여성의 결혼출산가치관 비교 및 시사점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산연구센터 연구위원) 조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
15:30 - 16:30	지정토론	Song Jian (중국 인민대학교 인구학과 교수)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산연구센터장) 김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16:30 - 17:00	종합토론	
17:00	폐회	
论坛内容		
14:00 - 14:20	开幕式	主持人: Hajoong Bae (韩国女性政策研究院 家庭·低生育研究中心 专门研究员) 开幕辞 InSook Kwon (韩国女性政策研究院 院长) 祝贺辞 PyeongSeob Yang (对外经济政策研究院 世界地区研究中心 所长)
主旨报告及评论		主持人: SangMan Lee (庆南大学 远东问题研究所 教授)
14:20 - 15:30	报告 1	中国的人口政策变化和婚姻及生育动向 Ma Chunhua (中国社会科学院 教授)
	报告 2	韩中未婚女性的婚姻生育价值观比较及启示 YoungPan Kim (韩国女性政策研究院 家庭·低生育研究中心 研究委员) SeonJu Cho (国女性政策研究院 性认知预算中心长)
15:30 - 16:30	评论	Song Jian (中国人民大学 社会与人口学院 教授) EunJi Kim (韩国女性政策研究院 家庭·低生育研究中心长) EunJung Kim (韩国保健社会研究院 副研究委员)
16:30 - 17:00	综合讨论	
17:00	闭幕式	

넷째, 중국 현지 연구진워크숍 및 전문가워크숍 개최이다. 중국 현지 연구진 워크숍은 연구 내용과 조사설계, 조사표에 대하여 중국 공동연구진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중국내 인구관련 전문가와의 현지 워크숍을 진행하여 중국의 인구 현황 및 정책 동향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연구진 워크숍은 2018년 11월 6일, 11월 8일 2차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전문가 워크숍은 2018년 11월 7일 개최하였다. 연구진 워크숍과 전문가 워크숍의 구체적인 개최 내용과 일시 및 장소는 다음과 같다.

<p>연구진 워크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제1차 연구진 Worksh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보고 자료 리뷰, 최종 보고서 집필 보완 등 ■ 장소: Novotel Beijing Peace Hotel(Spring room) ■ 시간: 2018년 11월 6일(화) 09:30~18:00 ■ 참석자: 본원 연구진+중국 공동연구진 <hr style="border-top: 1px dotted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제2차 연구진 Worksh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 설계 및 조사표 논의 ■ 장소: Novotel Beijing Peace Hotel 카페 ■ 시간: 2018년 11월 8일(목) 09:30~14:00 ■ 참석자: 본원 연구진+중국 공동연구진
<p>전문가 워크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중국의 인구학자들과의 Research Worksh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 중국의 저출산 현상과 대응 정책 등 ■ 장소: 人民大學 崇德西樓 212호 세미나실 ■ 일시: 2018년 11월 7일(수) 09:00~14:00 ■ 참석자: 본원 연구진+人民大學 인구학과 소속 연구자들

[그림 1-3]은 단계별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1-3 단계별 연구내용 및 연구 방법

	연구내용	연구방법
1단계	<p>배경: 인구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구조 추이 혼인 및 출산의 변화 여성 경제활동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전문가 워크숍 연구진 워크숍
2단계	<p>정책환경(국가수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억제정책 저출산대책(중국의 경우 양육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전문가 워크숍
3단계	<p>결혼 및 출산에 대한 태도(개인수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가치관 출산가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문조사 - 한국과 중국 수도권 거주 미혼여성 각 400명
4단계	<p>정책적 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국의 유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억제정책의 경험 저출산 인구현상 양국의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출산 대책 여부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미혼여성의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문조사 분석 연구진 워크숍 전문가 자문

3. 연구의 한계점 및 의의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연구 여건상 서울과 베이징 거주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비교하였기 때문에 양국 전체의 미혼여성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가진다. 따라서 설문조사를 기술할 때

서울과 베이징의 미혼여성으로 명시하고 설명하였다. 다만 일반적으로 대도시 지역이 다른 지역의 변화를 선도한다는 점에서 양국의 가치관 변화를 전망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는 미혼자를 대상으로 결혼출산가치관을 비교 연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미혼가구의 저출산 지원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제2장 한국과 중국의 인구동향

1. 한국
2. 중국
3. 양국의 인구동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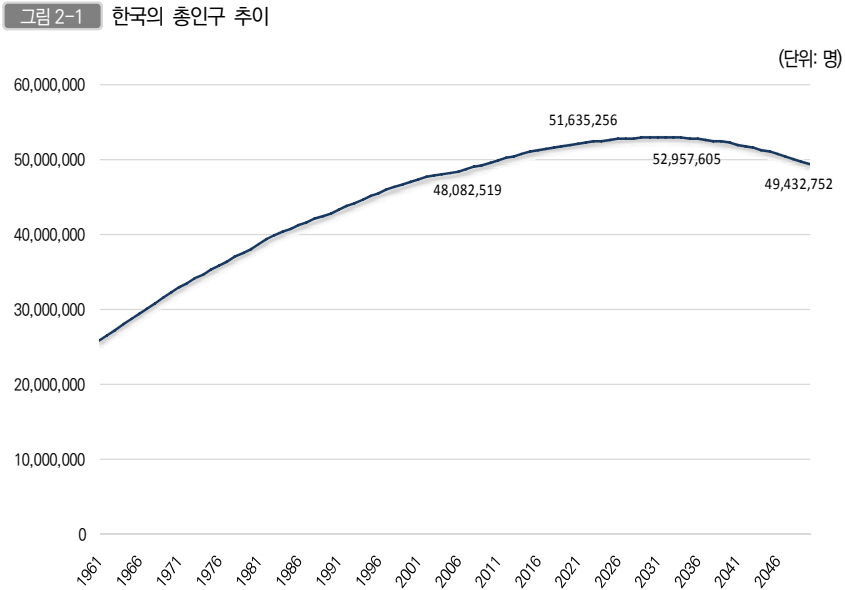


1. 한국

가. 총인구 추이

1) 총인구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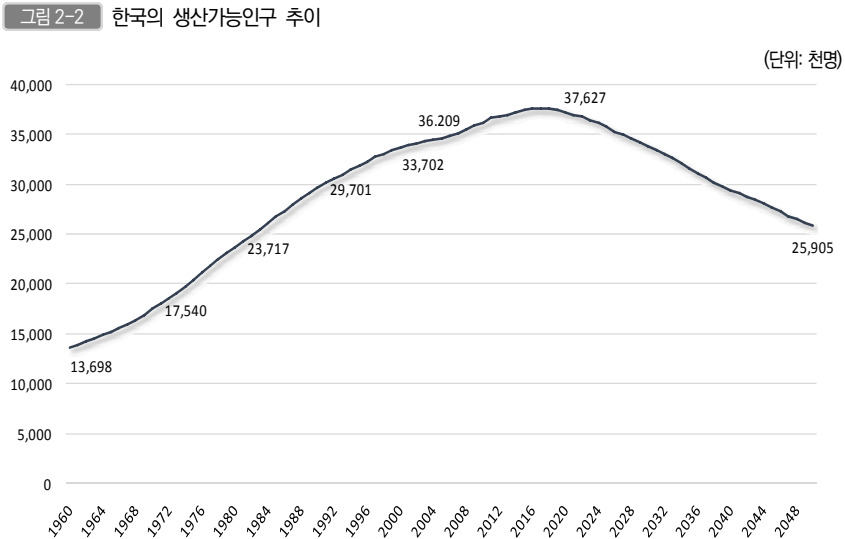
한국의 총인구는 2018년 약 5,100만이다. 한국의 총인구는 1961년 2,500만이었으며 계속 증가하여 2012년에 5천만이 넘었다.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에 의하면 한국의 인구는 2031년 5,200만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각 년도

2)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가능인구는 총인구 추이와 관련이 깊다. 아래 [그림 2-2]에서 1961년 13,698천명이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627천명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생산가능인구는 37,574천명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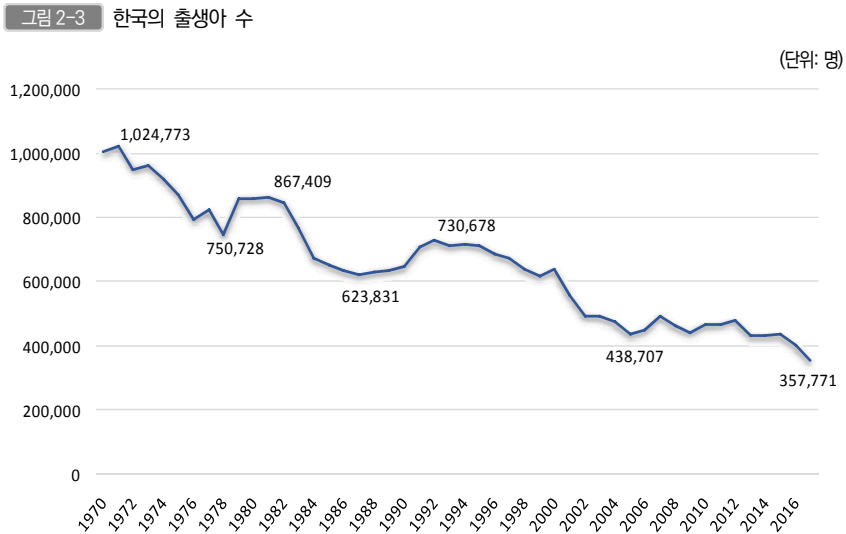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각 년도.

나. 혼인 및 출산

1)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출생아수는 1970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1970년에서 1980년대 까지 출생아수 감소는 자연 감소보다는 인구 억제정책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저출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아래 [그림 2-3]을 보면 2002년에 처음으로 50만 명 이하가 되었으며 2017년에는 40만 명 이하로 떨어져 357,771명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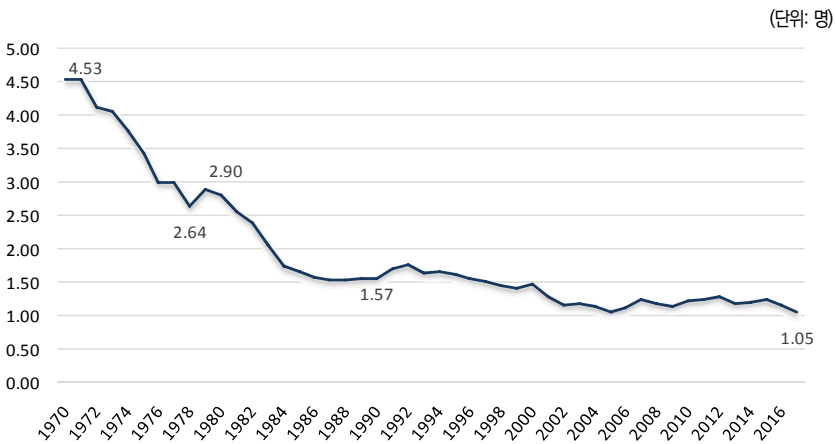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 각 년도.

합계출산율은 1970년에 4.53명이었으며 인구억제정책의 영향으로 1977년에 2.99명을 기록 3명대가 무너졌다. 이후 1984년에 1.74명으로

2명대이하로 낮아졌다. 이후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5년은 1.08명을 기록하여 출산 쇼크를 가져온 해이다. 2005년 이후 합계출산율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7년에 다시 1.05명을 기록하였다. 2018년의 경우 작년 동월 대비 출생아수보다 낮은 출생아수를 기록하고 있어 1명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2-4 한국의 합계 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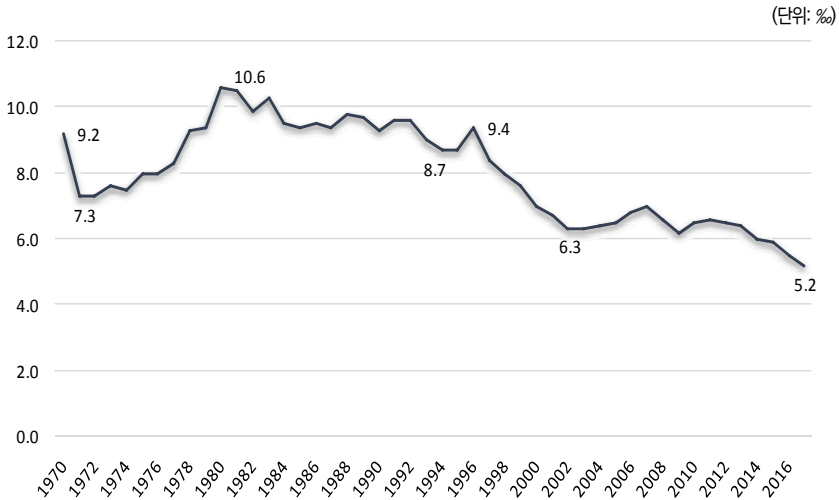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 각 년도.

2) 혼인

조혼인율을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조혼인율은 해당연도 인구수 대비 혼인건수를 의미하는데 1970년 9.2%에서 1980년 10.6%을 거쳐 1996년 9.4%이후로 계속 하락추세이다. 2017년 조혼인율은 5.2%를 기록하고 있다.²⁾

2) 조혼인율(粗婚姻率)은 인구 1천명 당 혼인건수를 의미한다. 최근에는 혼인건수에도 주목하고 있는데 1980년대 및 1990년대 초반 40만여 건에 이르던 혼인건수가 2016년 30만건 이하로 감소하였다(통계청,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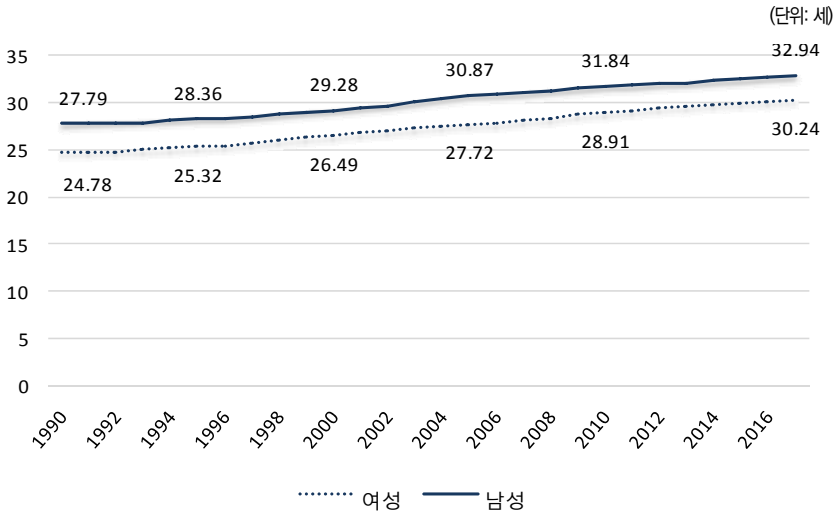
그림 2-5 한국의 조혼인율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 각 년도.

다음으로 평균초혼연령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균초혼연령은 1990년에 남성 27.79세, 여성 24.78세였으며, 2005년에는 남성 30.87세, 여성 27.72세로 남성이 30세를 넘어섰다. 그리고 2017년에는 남성 32.94세, 여성 30.24세로 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이 30세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대 초반 여성 가운데 미혼인구가 많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6 한국의 초혼연령 추이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 각 년도.

이어서 다음 [그림 2-7]에서 20세에서 34세 까지의 성별 미혼인구 비율 변화를 보면 만혼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세~24세 미혼 인구 비율을 보면 1970년에 여성 57.2%, 남성 92.6%이다. 여성은 절반이 미혼이고 남성은 대부분이 미혼이었다. 2015년에는 여성 96.8%, 남성 98.8%로 남성과 여성 모두 거의 모두가 미혼이다.

다음 25세~29세 연령대의 미혼 인구 비율은 1970년에 여성은 9.7%, 이고 남성은 43.4%로 여성은 10명중 1명만이 미혼이고 남성은 절반이 미혼이었다. 그러나 2015년이 되면 여성은 77.3%, 남성은 90.0%로 급증한다. 즉, 2015년에 20대 후반 여성과 남성은 미혼 인구 비율이 기혼보다 더 높다.

마지막으로 30세~34세 미혼 인구 비율을 보면 1970년에 여성 1.4%, 남성 6.4%로 미혼이 매우 적고 대부분이 기혼이었다. 그러나 2015년의

경우 30~34세 여성 중 37.5%, 남성 중 55.8%가 미혼으로 나타났다. 30~34세 남성은 절반 이상이, 여성도 10명중 약 4명이 미혼인 것이다.

그림 2-7 한국의 연령대별 미혼비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다. 여성의 경제활동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70년도에는 38.4%로 나타났으며, 1975년에는 41.9%로 잠시 증가하였다가 1990년대까지 40%를 넘지 못하였다.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50%에 가까운 48.8%(2000년), 49.1%(2004년)를 유지하다가 2004년부터 최초로 50%를 넘었으며, 이후 2017년까지 52.7%에 머무르고 있다.

표 2-1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1970년~2017년)

(단위: %)

연도	합계
1970년	38.4
1975년	46.7
1980년	39.5
1985년	41.9
1990년	32.6
1995년	38.9
2000년	48.8
2001년	49.4
2002년	49.9
2003년	49.1
2004년	50.1
2005년	50.3
2006년	50.5
2007년	50.5
2008년	50.2
2009년	49.3
2010년	49.6
2011년	49.8
2012년	50.1
2013년	50.3
2014년	51.5
2015년	51.9
2016년	52.2
2017년	52.7

자료: 장하진 외, 1955~1995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에서 재인용
 2000~2017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12 검색일: 2018. 10. 8.)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1975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대 후반이 35.6%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30대 초반이 42.1%로 나타났다. 즉, 여성의 고용률은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의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을 기점으로 M자형의 모양을 보인다.

M자 현상은 2000년대가 되면서 30대 초반, 30대 후반 연령대로 연기되었다. 이는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이 1990년 이후 계속 높아졌기 때문이라 하겠다.

표 2-2 한국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1970년-2017년)

(단위: %)

연도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1970년	40.3	43.9	31.7	36.3	43.1	47.2	48.6	45.2	39.1	26.9	10.6
1975년	47.6	56.5	35.6	42.1	51.2	57.8	59.8	57.1	50.9	33.6	12.0
1980년	34.0	53.0	30.2	33.5	43.0	49.0	51.3	49.0	43.2	31.3	13.0
1985년	21.1	55.1	35.9	43.6	52.9	58.2	59.2	52.4	47.2	19.2	
1990년	16.7	51.4	29.7	28.0	35.3	40.4	43.6	42.9	38.8	29.1	11.3
1995년	11.0	61.3	42.7	35.8	42.4	47.2	46.8	46.2	43.1	36.8	16.8
2000년	12.5	61.2	55.9	48.9	59.4	63.9	64.9	55.4	51.3	46.1	22.7
2001년	12.7	62.0	57.6	49.2	59.9	63.7	64.6	56.7	50.9	45.7	22.8
2002년	11.8	62.6	59.5	50.0	59.6	64.0	64.2	58.2	49.7	46.5	22.9
2003년	11.4	61.9	60.8	49.9	58.3	64.2	61.6	55.7	49.1	42.8	21.3
2004년	11.1	62.8	64.0	50.5	58.9	65.6	62.9	56.6	49.9	44.1	22.2
2005년	10.2	62.6	66.2	50.3	59.0	65.6	63.2	58.4	49.4	43.3	22.4
2006년	8.8	59.2	67.8	53.1	59.6	65.6	64.5	58.5	50.0	43.6	22.7
2007년	8.1	56.6	68.3	53.8	58.7	66.6	65.0	59.3	50.8	43.6	23.4
2008년	7.6	54.5	69.4	53.4	58.6	65.9	65.8	60.2	52.6	42.0	23.0
2009년	7.5	52.9	69.1	52.1	56.3	65.4	65.3	60.7	52.0	41.8	22.4
2010년	8.5	53.5	69.6	54.8	55.9	65.9	65.6	61.3	53.4	41.5	21.9
2011년	9.0	52.3	71.1	55.5	55.7	65.7	66.8	62.3	54.1	42.3	22.0
2012년	9.1	53.5	71.5	56.5	55.7	64.3	67.7	62.5	54.9	44.1	23.0
2013년	8.7	52.2	71.7	58.4	55.5	63.9	68.0	64.0	56.1	45.1	23.2
2014년	9.4	54.5	73.2	59.9	56.8	63.8	69.7	66.2	57.9	46.4	23.8
2015년	9.9	56.3	72.7	61.6	55.9	64.8	70.4	67.4	58.7	48.3	23.2
2016년	9.6	56.6	74.7	62.1	58.0	64.7	70.0	67.0	59.0	49.0	23.5
2017년	10.1	55.3	74.9	63.5	59.7	63.7	71.0	67.7	60.9	49.3	24.1

자료: 장하진 외, 1955-1995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에서 재인용
 2000-2017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2 검색일: 2018. 10. 8.)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은 1980년대에는 45~49세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995년에는 40~44세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20대 후반의 고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30대를 기점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실례로 2016년 20대 후반이 69.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이어서 40대 후반(68.6%), 50대 전반(65.9%)순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의 고용률은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의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30대 후반을 기점으로 M자형의 모양을 보이고 있다. 여성의 고용률은 2010년 이후 증가 추세이며, 연령대별 고용률은 2010년과 비교하면 30~34세(7.3%p)와 60~64세(7.7%p)의 고용률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2-3〉 참조). 또한 연령대별 고용률에서 30대 초반 여성의 고용률이 증가하는 현상은 여성의 고학력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표 2-4〉에서 취업자의 학력 분포를 보면 2000년에 여성은 고졸이 많았으나 2018년으로 올수록 대졸이상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남성 취업자 역시 여성과 동일하게 2000년 대비 2018년에 대졸이상의 비중이 고졸 비중보다 많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2000년에 취업자 중 대졸이상의 비중은 남성 28.4%, 여성 19.2%로 남성이 여성보다 9.2%p 높다. 반면 2018년에는 취업자 중 대졸이상의 비중이 남성은 48.8%, 여성 48.3%로 여성과 비교하여 차이는 0.5%p에 불과하다.

표 2-3 한국 여성의 연령대별 고용률

(단위: %)

연도	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1970년	38.2	-	-	-	-	-	-	-	-	-	-	-
1975년	39.4	-	-	-	-	-	-	-	-	-	-	-
1980년	41.3	30.3	49.6	31.3	40.0	52.3	56.1	56.8	53.5	46.0	-	-
1985년	40.9	19.0	51.6	35.3	43.2	52.2	57.7	59.0	52.3	47.1	-	-
1990년	46.2	17.1	61.7	41.8	49.1	57.5	60.3	63.6	59.8	54.2	43.4	18.4
1995년	47.6	13.4	62.9	47.0	47.2	58.8	65.3	60.2	58.6	53.9	45.8	20.2
2000년	47.0	10.8	56.3	53.7	47.3	57.7	61.9	63.3	54.1	50.3	45.5	22.7
2005년	48.4	9.1	57.2	63.0	48.6	57.3	64.0	61.6	57.4	48.1	42.9	22.4
2010년	47.8	7.7	48.7	66.2	52.9	54.3	64.2	64.2	60.2	52.3	40.4	21.2
2011년	48.1	8.1	48.2	67.8	53.2	54.1	64.2	65.6	61.2	53.2	41.3	21.4
2012년	48.4	8.3	48.9	68.0	54.8	54.1	62.9	66.4	61.5	53.9	43.1	22.6
2013년	48.8	7.9	47.5	68.0	56.7	54.4	62.6	66.7	63.1	55.2	44.5	23.1
2014년	49.5	8.6	49.5	68.8	57.7	54.9	62.3	68.0	64.7	56.6	45.7	23.5
2015년	49.9	8.8	50.8	68.6	59.8	54.1	62.9	68.6	66.0	57.3	47.5	22.9
2016년	50.2	8.7	50.6	69.5	60.2	56.5	62.8	68.6	65.9	57.6	48.1	23.2
2017년	50.8	9.3	49.7	69.6	61.0	58.1	61.8	69.7	66.3	59.6	48.4	23.5

주: 1970~1995년은 경제활동인구총량, 1996년은 경제활동인구총량, 1997년은 경제활동인구총량, 1998년은 경제활동인구총량, 1999년은 경제활동인구총량, 2000년은 경제활동인구총량, 2001년은 경제활동인구총량, 2002년은 경제활동인구총량, 2003년은 경제활동인구총량, 2004년은 경제활동인구총량, 2005년은 경제활동인구총량, 2006년은 경제활동인구총량, 2007년은 경제활동인구총량, 2008년은 경제활동인구총량, 2009년은 경제활동인구총량, 2010년은 경제활동인구총량, 2011년은 경제활동인구총량, 2012년은 경제활동인구총량, 2013년은 경제활동인구총량, 2014년은 경제활동인구총량, 2015년은 경제활동인구총량, 2016년은 경제활동인구총량, 2017년은 경제활동인구총량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및 경제활동인구 각년도 통계청, 2017c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서 재인용함(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blId=DT_1D07012S&conn_path=2)
 검색일: 2018. 10. 12.)

표 2-4 한국 취업자의 교육정도 분포

(단위: %)

성별	연도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전문대	대학교육이상
남성	2018	4.9	7.2	39.1	48.8	12.7	36.1
	2015	5.7	7.5	40.3	46.6	12.5	34.1
	2010	7.6	8.9	41.4	42.1	11.7	30.4
	2005	9.0	10.4	44.7	35.9	9.1	26.7
	2000	11.5	13.0	47.2	28.4	7.1	21.2
여성	2018	10.0	8.8	37.3	43.8	14.3	29.6
	2015	11.6	9.7	38.8	39.9	13.7	26.2
	2010	15.3	11.1	39.1	34.5	13.0	21.5
	2005	18.7	12.8	40.7	27.7	11.4	16.4
	2000	24.8	16.3	39.7	19.2	7.9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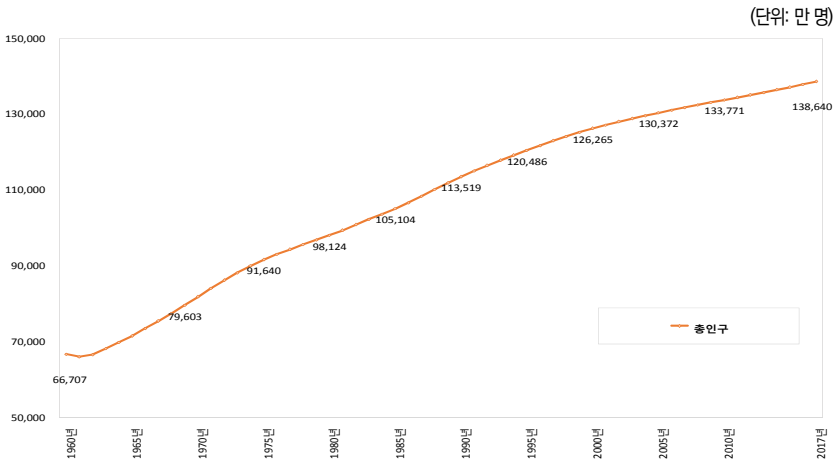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http://gsis.kwdi.re.kr:8083/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DA7025&comm_path=I3 검색일: 2018. 10. 12.)

2. 중국

가. 총인구 추이

아래 [그림 2-8]은 세계은행의 중국 총인구 추이 자료이다. 1960년대 이후 중국의 인구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21세기 이후 상승 폭이 줄어들었다.

그림 2-8 중국의 총인구 추이



자료: World Bank Development Indicators

〈표 2-5〉는 1997년 이후 중국의 인구와 부양비를 제시한 것이다. 최근으로 올수록 0~14세 인구와 15세~64세 인구는 정체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2016년에는 0~14세 인구가 2015년보다 증가하였는데 이는 1자녀정책 폐기에 따라 일시적으로 출생아수가 늘어난 결과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의 인구는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은 사실이다.

표 2-5 중국의 인구와 부양비

(단위: 만 명, %)

	총인구	0세~14세 인구	15세~64세 인구	65세 이상 인구	총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노년부양비
1997년	123,626	32,093	83,448	8,085	48.1	38.5	9.7
1998년	124,761	32,064	84,338	8,359	47.9	38.0	9.9
1999년	125,786	31,950	85,157	8,679	47.7	37.5	10.2
2000년	126,743	29,011	88,847	8,821	42.6	32.6	9.9
2001년	127,627	28,716	89,849	9,062	42.0	32.0	10.1
2002년	128,453	28,773	90,302	9,377	42.2	31.9	10.4
2003년	129,227	28,559	90,976	9,692	42.0	31.4	10.7
2004년	129,988	27,947	92,161	9,879	41.0	30.3	10.7
2005년	130,756	26,543	94,144	10,068	38.8	28.1	10.7
2006년	131,448	26,027	95,037	10,384	38.3	27.3	11.0
2007년	132,129	25,633	95,794	10,702	37.9	26.8	11.1
2008년	132,802	25,232	96,574	11,023	37.4	26.0	11.3
2009년	133,450	24,688	97,419	11,343	36.9	25.3	11.6
2010년	134,091	22,259	99,898	11,934	34.2	22.3	11.9
2011년	134,735	22,231	100,243	12,261	34.4	22.1	12.3
2012년	135,404	22,342	100,334	12,728	34.9	22.2	12.7
2013년	136,072	22,315	100,557	13,199	35.3	22.2	13.1
2014년	136,782	22,569	100,398	13,815	36.1	22.5	13.7
2015년	137,462	22,715	100,361	14,386	37.0	22.5	14.3
2016년	138,271	23,091	100,246	14,933	37.9	22.9	15.0

주: 총부양비는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의 합으로 구성되며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의 정의와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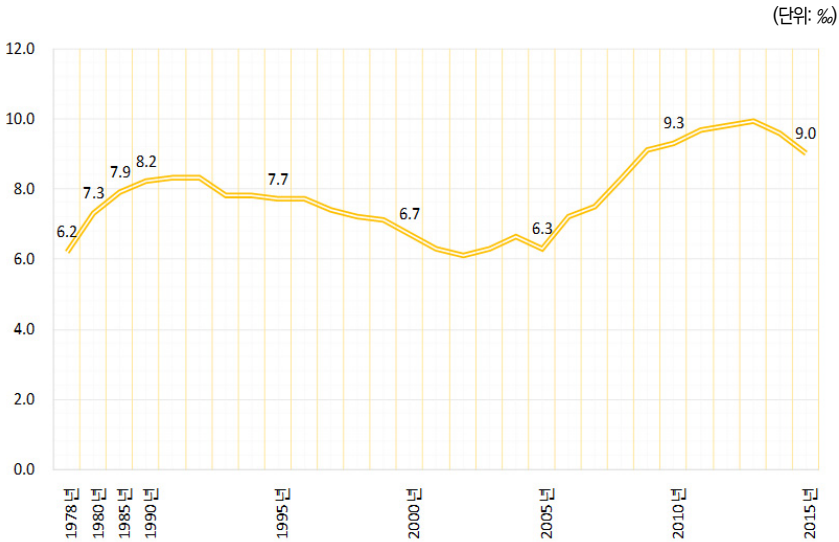
- 유소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유소년인구(0~14세)의 비
 ※ 유소년부양비 = 유소년인구(0~14세) ÷ 생산가능인구(15~64세) × 100
- 노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이상)의 비
 ※ 노년부양비 = 고령인구(65세이상) ÷ 생산가능인구(15~64세) × 100

자료: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China, <http://data.stats.gov.cn/easyquery.htm?cn=C01>(검색일: 2019. 2. 1.)

나. 혼인 및 출산

중국의 혼인율은 2002년 6.1%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05년부터 상승세를 유지하여 2013년에 1978년 후의 최고치인 9.92%를 기록했으나 그 후 다시 하락세를 보여 변화가 비교적 큰 편이다.

그림 2-9 중국의 조혼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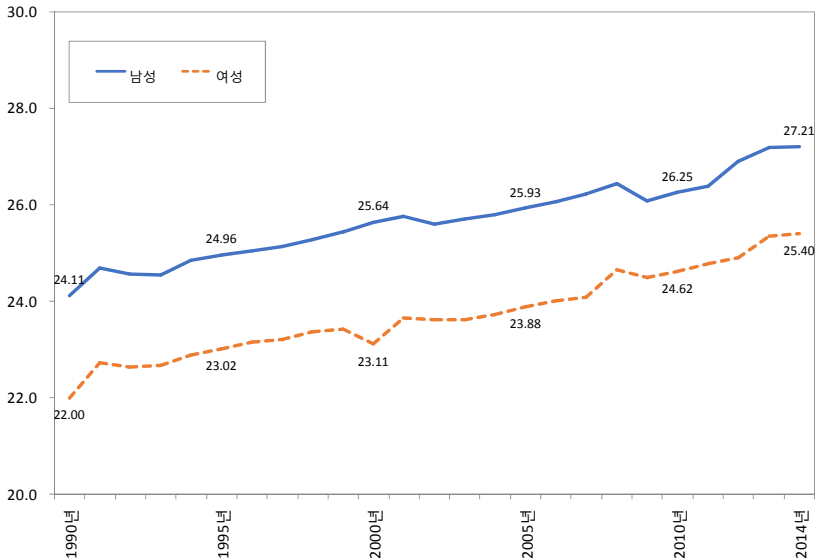
자료: 중국민정통계연감(1990-2017)

남성과 여성의 초혼 연령은 변동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1990년부터 상승세를 보인다.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의 초혼 연령은 22.0세에서 25.4세로 늘어났고 남성은 24.1세에서 27.2세로 늘어났다. 이는 중국의 도시와 농촌을 망라한 전체적인 추이다. 도시와 농촌을 비교했을 때 대도시의 남성과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이 더 높다. 상하이 여성연합회(上海妇联)에서 발표한 ‘개혁개방 40년 상해여성의 발전에 대한 조사 보고서(改革开放40年女性发展调研报告)’에 따르면 2015년 상해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0.3세, 여성은 28.4세였다.³⁾

3) <http://www.shanghai.gov.cn/nw2/nw2314/nw2315/nw5827/u21aw1351535.html>. (검색일: 2019. 2. 1.)

그림 2-10 중국의 초혼연령추이

(단위: 세)



자료: China Population and Employment Statistical Yearbook 1991, 2011, 2016, 2017, Table 2-32.
The results are calculated based on SMAM (singulate mean age at marriage).

〈표 2-6〉은 1995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의 20~34세 연령의 여성과 남성의 미혼 비율이다. 1995년에 비해 남성과 여성 모두 미혼 비율이 상승하였다.

1995년에 20~24세 여성은 절반 정도인 47.4%가 미혼이었으나 2016년에는 73.5%로 미혼 인구 비율이 전체의 2/3를 넘는다. 남성은 미혼 인구 비율이 1995년 68.7%에서 2016년 85.7%로 증가하였다.

25~29세 여성의 미혼 비율은 1995년 5.3%에서 2016년 26.5%로 크게 늘어났다. 25~29세 남성도 1995년에 18.2%가 미혼으로 대부분 기혼이었으나 2016년에는 절반에 가까운 42.2%가 미혼이었다.

30~34세는 남녀 모두 기혼 비율이 다수이긴 하지만 1995년과 비교하

여 남녀 모두 미혼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중국의 남성과 여성의 결혼은 최근으로 갈수록 모두 늦어져 만혼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표 2-6 중국의 20~34세 미혼인구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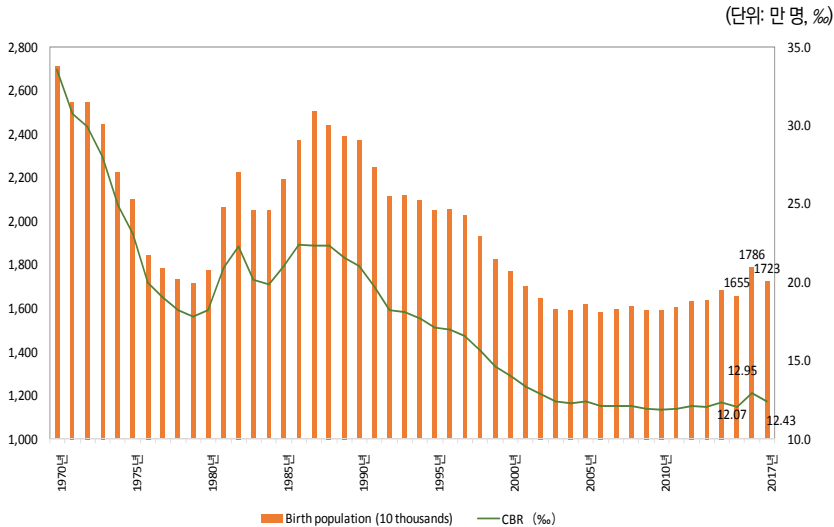
	20~24세		25~29세		30~34세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1995년	68.65	47.44	18.17	5.53	6.16	0.82
1996년	71.29	49.57	20.30	6.81	6.36	0.88
1997년	72.35	50.82	20.94	7.39	6.50	0.97
1998년	73.82	52.97	22.36	8.15	7.17	1.16
1999년	75.08	54.15	22.81	8.39	7.27	1.16
2000년	78.64	57.46	24.68	8.67	7.45	1.35
2001년	78.23	57.86	26.36	9.62	7.96	1.55
2002년	79.54	58.80	27.58	10.08	8.77	1.68
2003년	80.33	59.35	29.07	12.02	9.21	2.07
2004년	78.88	59.97	29.62	13.50	9.28	2.20
2005년	78.85	57.36	29.56	12.71	9.71	2.08
2006년	78.81	59.17	30.85	14.08	9.89	2.49
2007년	80.13	62.15	32.52	15.71	10.46	2.78
2008년	80.04	62.18	33.92	17.43	10.77	3.08
2009년	80.30	62.73	35.19	18.25	11.49	3.42
2010년	82.44	67.55	36.29	21.62	12.62	5.35
2011년	78.49	65.45	33.90	20.60	11.54	4.81
2012년	79.57	66.21	36.29	21.98	12.44	5.42
2013년	80.89	65.54	39.85	23.97	13.85	6.23
2014년	82.62	67.53	41.09	24.07	14.71	6.31
2015년	86.55	74.49	42.67	26.92	14.36	6.95
2016년	85.68	73.48	42.17	26.48	14.71	7.27

자료: China Population Statistics Yearbook 1996-2017,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그림 2-11]은 연도별 출생아 수와 조출생률이다. 중국은 연도별로 출생아 수의 변동 폭이 높다. 1970년대에 중국은 ‘한 자녀 정책’을 엄격하게 실시하지 않았으나 출생아 수나 조출생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1979년 출산억제 정책이 엄격히 실시되고 나서 출생아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1987년에는 인구수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출생률도 변화가 있었다. 그 후에는 출생아 수와 조출생률이 다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2010년 ‘단독 두 자녀’ 정책, ‘두 자녀 정책’이 실시된 이후 다시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출생아 수는 정책 도입 전과 비교하여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인다.

2015년 말 중국은 두 자녀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고, 출생아 수는 2015년 1,655만 명에서 2016년의 1,786만 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2017년에 다시 1,723만 명으로 줄었고 조출생률도 12.95%에서 12.43%로 하락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둘째 아 출생 수가 상승세를 유지하여 720만 명에서 883만 명으로 늘었으나 첫째아 출생 수는 973만 명에서 724만 명으로 줄었다. 즉, 2015년 말 두 자녀 정책 실시 이후 출생아수 규모 증가는 첫째아 출생 보다는 둘째아 출생, 즉, 자녀가 있는 가구의 추가출생에 의한 효과일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아 출생 수가 줄어든 것은 만혼 등의 여파로 결혼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중국 국가통계국의 1월 21일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출생아 수는 1,523만 명으로 2017년에 비해 200만 명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1 중국의 출생아수와 조출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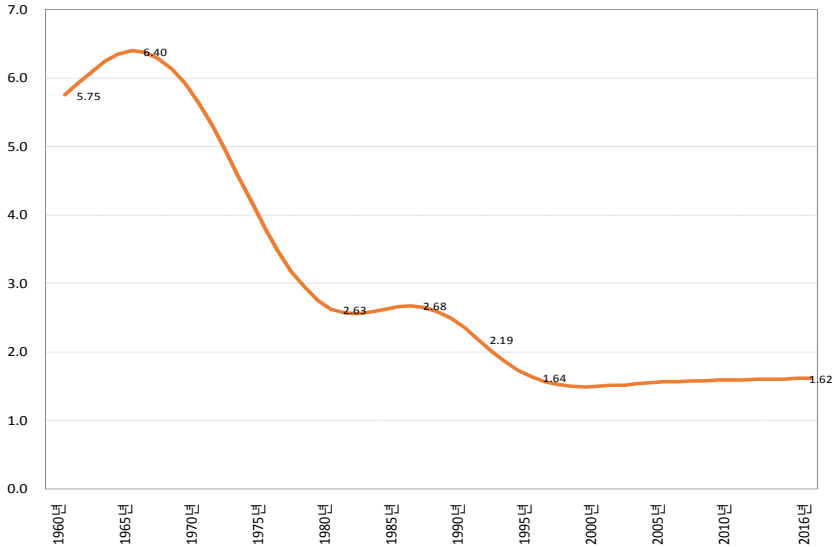


- 주: 1) 1997년부터 2017년까지의 인구 조출생률은 중국 국가통계국 연간 데이터에서 추출했다. <http://data.stats.gov.cn/easyquery.htm?cn=C01>.(검색일: 2019. 2. 1.)
- 2)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출생아수는 신화사(역주: 중국 언론사)의 데이터를 근거로 했다. http://www.gov.cn/shuju/2017-01/22/content_5162356.htm.(검색일: 2019. 2. 1.)
- 3) 1981년과 그전의 인구 데이터는 호적 통계 데이터에서 추출했다. 1982년,1990년 데이터는 해당 연도 인구 전면 조사데이터를 근거하여 추산했다. 기타 데이터는 인구 샘플링 조사 데이터를 통해 추산했다. 해당 연도의 출생자수는 중국 국가통계국에 관련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인구 출생률', '인구 사망률', '인구 증가율'에 지난해 연말 인구수를 곱하고 나서 반올림했다. http://blog.sina.com.cn/s/blog_4b3725690102w94b.html.(검색일: 2019. 2. 1.)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상승과 하락 등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1993년 대체출산율보다 낮아 2.03명을 기록하였다. 2000년 전후에는 최저치인 1.50명으로 낮아졌으며, 이후 소폭 상승하여 2013년 1.60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2-12 중국의 합계출산율

(단위: 명)



자료: World Bank Development Indicators

다. 여성의 경제활동

〈표 2-7〉은 중국의 연령대별 성별 경제활동 변화를 제시한 것이다. 〈표 2-7〉에서 15~19세, 16~19세, 20~24세의 취업률은 눈에 띄게 하락세를 보인다. 주요 원인은 중국의 남성과 여성의 교육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10년 인구전면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사람의 비중이 가장 크고, 16~19세의 비중은 93.31%, 20~24세의 비중은 70.71%이다. 〈표 2-8〉을 통해 취업자 중 남성과 여성의 교육 수준이 최근으로 올수록 높아지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변화는 노동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

국은 1957년부터 일괄통합분배 방식의 계획고용제도를 시행하였다. ‘계획고용 일괄통합분배’는 “모든 사람이 일을 하고 집집마다 일없이 노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를 외치는 대약진으로부터 시작되어 80년대에 완성되었다(金一虹, 2006: 171). 즉, 도시여성은 노동연령이 되고 노동 능력을 갖추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에 배치되었다(蔣永萍, 2000: 29). 60, 70년대 도시고용제도는 노동력 일괄통합분배정책의 연속선상에 있었다. 60년대 말 70년대 초 도시 여성은 고용절정기를 이룬다. 청년인 도시 신규노동력이 대규모로 농촌과 변두리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도시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상당히 많은 도시 주부들이 국영기업에 고용되었다. 70년대 말 도시 노동연령 여성의 고용비율은 이미 90%이상이었다(金一虹, 2006: 175). 중국에서 1970년대는 여성고용의 탈성별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국가의 개입이 두드러진다. 경공업, 중공업은 물론 여성 노동력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최대한 여성 노동력을 사용한다는 정신으로, 업종별로 성별구조를 조정하여, 업종간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국가가 강력하게 여성을 노동에 참여시켜, 다양한 여성 전문팀을 결성하거나, 일반적인 생산활동을 하거나 상관없이 모두 여성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고 이 때문에 피동적이고 높은 일관성을 보였다. 그러나 분명 여성의 사회생산 참여의 폭을 넓힌 것은 확실하며, 이는 사회의 여성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바꾸어 놓았다(金一虹, 2006: 172, 189). 또한 이 기간 동안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 고용이 정상적인 사회경제 현상으로 인식되어, 여성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나가 일을 하고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지는 것이 이미 전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았다(蔣永萍, 2000: 30).

그러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고용 역시 계획

고용체제에서 시장고용체제로 전환되었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계획 경제시대에는 여성취업이 정부 주도하의 통합배치였으나 1980년대 후 시장 취업 메커니즘이 계획 취업메커니즘을 대체하여 기업이 구직자를 뽑는 시스템이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노동력의 적자생존으로 인해 여성 근로자가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었다(宋少鹏, 2011; 彭青青等, 2017).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은 중국 복지제도의 개혁도 한 몫을 했다. 개혁개방 전 중국의 공기업과 정부기관은 무료 어린이집과 학교 이용 등 복지서비스를 통해 직장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가 가정과 개인에게 일상생활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였다(Du & Dongle, 2010). 그러나 개혁개방후로는 이러한 복지가 없어짐에 따라 여성들이 일을 포기해야 하거나 잠시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돌 봐야 했다. 게다가 현대사회에서 여성은 아이 성장에 있어 없어서 안 되는 돌보는 역할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직장을 포기하게 되었다(陶艳兰, 2013). 또 가사 서비스 가격 인상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방식에 영향을 미쳐 가정 구성원의 가사 분업을 초래했다. 중국 도시에서 남성과 여성의 월급수준 차이가 지속되어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근로자는 소득의 잠재적인 열위에 처해 있기 때문에 가정 분업을 통해 직장을 포기하고 집안 일만 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이 가속화되었다(彭青青等, 2017). 결국 중국에서 육아 및 가사부담으로 인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추세에 있고, 이는 한편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으로 인하여 출생아 수가 감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표 2-7 중국의 연령대별 성별 경제활동 인구 변화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1987년	60.94	67.13	95.06	88.31	98.77	87.56	99.16	88.58	99.16	87.94	98.92	84.05	97.64	74.12	92.82	54.43	81.11	38.60	62.49	21.54
1990년	61.38	68.22	92.38	89.62	97.87	90.79	98.58	90.93	98.83	91.02	98.66	88.16	97.68	81.01	93.32	61.90	83.60	44.94	63.18	27.21
1995년	50.98	55.56	91.97	86.40	97.49	88.99	97.72	90.00	97.88	90.03	98.06	88.96	97.18	81.92	92.55	66.76	81.70	45.91	58.78	28.05
2000년	42.82	46.35	83.96	79.40	94.70	83.07	95.56	85.34	95.12	85.62	94.50	83.37	94.20	78.45	89.32	66.84	79.59	54.48	60.23	38.89
2005년	35.79	38.30	79.70	71.42	93.37	78.04	94.56	80.83	94.73	83.26	93.65	82.25	91.82	74.73	87.48	64.23	77.26	52.48	59.24	38.45
2010년	32.07	29.73	71.78	64.95	92.82	78.71	95.01	80.57	95.04	81.94	94.69	82.62	93.13	78.01	87.75	61.49	79.04	53.29	57.80	40.29
2015년	21.41	16.89	58.30	48.46	87.76	70.61	90.98	73.29	91.09	75.11	90.60	75.82	89.38	72.38	85.13	57.31	73.77	43.39	51.63	34.05

자료: 중국국가통계국(1982, 1990, 2000, 2010)인구普查数据资料; 중국국가통계국(1987, 1995, 2005, 2015) 1%인구抽样调查资料

표 2-8 중국 취업자의 교육정도 분포

성별	연도	학교 다닌 적 없음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졸	4년제 대졸	대학원 졸업
남성	2015년	1.4	15.1	50.6	15.4	9.3	7.4	0.8
	2010년	1.9	20.9	51.2	15.6	6.1	3.8	0.4
	2005년	4.4	26.4	47.8	14.1	4.7	2.4	0.2
	2000년	4.9	29.7	45.9	14.2	3.6	1.6	0.1
여성	2015년	4.2	20.7	44.8	11.4	9.9	8.2	0.8
	2010년	5.2	27.6	45.8	11.7	5.8	3.6	0.3
	2005년	11.8	32.6	39.6	9.9	4.2	1.8	0.1
	2000년	12.1	36.6	36.6	10.8	2.8	0.9	0.1

자료: 중국국기통계국(2000, 2010), 인구普查, 중국국기통계국(2005, 2015), 1%人口抽样调查

3. 양국의 인구동향 비교

이상에서 한국과 중국의 인구동향과 여성의 경제활동 변화를 살펴보았다. 한국과 중국은 인구동향과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다. 총인구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만혼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핵심적으로 한국은 이미 초저출산국가에 해당하며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중국 역시 저출산 국가이며 급속하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중국의 실제 출산 수준은 줄곧 학술계의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고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대부분 학자가 공감하지만 중국이 저출산 함정(합계출산율 1.5명 이하)에 빠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류샹·왕핑(刘爽·王平, 2015)은 중국이 저출산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리용아이(靳永爱, 2014)는 중국이 아직 임계점을 돌파하지 않아 출산율이 반등할 여지와 잠재력이 있다고 여긴다. 일부 학자는 중국이 커다란 위험을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郭志刚, 2011; 吴帆, 2016; 王广州等, 2018; 计迎春·郑真真, 2018). 그러나 중국 국가통계국의 2019년 1월 21일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출생아 수는 1,523만 명으로 2017년에 비해 200만 명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5년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실시이후 출생아수의 반등은 있었지만 다시 감소한 것을 보면 중국의 경우도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안심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양국의 여성의 경제활동은 한국과 중국의 상황이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자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고용률은 높지 않는 수준이며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에서 M자형 곡선이 유지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여성의 경제

활동참가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최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중국에서도 육아와 가사는 여성이 주로 부담하고 있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있어 일을 포기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고용시장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선호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국의 여성 경제활동과 관련한 상황을 보면 아직은 한국과 비교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보육지원이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면 더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저출산은 인구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 정책적 요인 등 매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먼저 중국은 장기간 산아제한정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가임기여성인구가 감소한 것이 최근 저출산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다음은 사회적 요인으로 출산 의향 감소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다. 최근 30년 동안 중국인의 출산 인식은 사회발전, 출산율 저하 등의 영향을 받았다. 그 결과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의 출산 의향이 낮다. 나이가 어릴수록 낳고 싶은 자녀수가 적다(王广州等, 2018). 희망 자녀수에 대한 인식은 가임 인구 부모 세대의 자녀수, 가임 인구 동년배의 일반적인 자녀수와 그들이 처한 산아제한 정책 환경 등에 영향을 받는다. 사회화 과정은 퇴행 특성을 보이고 있어 가임 인구의 이상적인 가족 규모가 점점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사회 메커니즘의 작용으로 최종 출산 수는 대부분 부모세대보다 적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 따라서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 저출산율은 세대 간에 전이되어 자기강화가 이뤄지는 것이다(曹立斌·石智雷, 2017). 다음 중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세계 상위권에 있다. 그러나 많은

중국 여성이 가족과 직장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두 자녀 정책이 도입되면서 여성의 자아실현과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출산 역할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출산이 가져오는 혜택은 여성 소득 감소와 지출 증가 등 경제적 지출에 훨씬 못 미친다. 게다가 자녀 효과는 첫째 아이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은 아이를 덜 낳거나 아예 낳지 않는 경향이 있다(王广州等, 2018; 陈友华·苗国, 2016). 중국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반면에 출산율은 낮다. 이는 여성이 일과 가정의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曹立斌·石智雷, 2017). 사회와 가족의 양성불평등은 여성의 일과 가족 양립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는 출산율이 꾸준히 하락하는 주요원인이다. 중국의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한다'는 성별에 따른 전통적인 역할 분담 모드가 지속되어 여성의 출산, 특히 두 번째 자녀의 출산을 억압하고 있다(曹立斌·石智雷, 2017). 또한 교육 확대, 결혼 시기 연장, 결혼의 불안정성 등 원인 때문에 출산에 대한 고려 요소가 많아지고 더 신중해졌다. 그 결과 첫 자녀 출산 연령도 높아지고 자녀수도 감소했다(陈友华·苗国, 2016).

경제적 요인은 자녀관련 비용 문제를 들 수 있다. 소비 욕구와 기대 소득의 관계는 출산율의 변화에 반영된다. 상대소득이 줄면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저출산이 지속되고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경제 발전 전망은 어두워지고 젊은 세대의 기대소득은 낮아졌다. 한편 현대사회에서 젊은이들의 물질적 수요와 소비 욕구는 높은 편이다. 소비욕구와 기대 소득 간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젊은이들은 향후 본인의 경제상황이 아주 불안정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그 결과 출산을 줄이고 출산 나이를 늦추면서 그 시기의 낮은 출산율로 이어지게 되었다(王广州等, 2018; 黄玉琴·萧易忻, 2017). 또 중국은 생활비, 특히 출산비와 양육비가 많이 들

어간다. 이는 출산 의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치열해지는 사회적 경쟁과 높아지는 생활비가 출산율의 하락을 야기하고 있다(吴帆, 2016; 陈友华·苗国, 2016). 경제성장 자체도 출산율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蔡泳, 2010). 중국의 유동인구 출산율은 아주 낮은 수준이다. 농촌 호적을 갖고 있는 농촌 유동인구로 인해 전체 농촌 인구의 출산율이 저하되어 중국 전체 출산율도 덩달아 낮아졌다. 유동인구 자체가 지닌 신분상승 욕구가 크기도 하고, 유동으로 인해 결혼 및 출산 시기가 늦어진데다, 새로운 기회와 목표를 추구하면서 경쟁 효과가 생긴 것 등이 전부출산율을 떨어트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郭志刚, 2008).

문화적 요인으로는 중국인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젊은 세대는 삶의 방식에 대한 전통문화의 속박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 자아실현의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출산은 소득 감소와 지출 증가, 경력 단절, 승진 기회 상실 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여성이 자기가치를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성은 출산을 신중하게 자제하고 심지어 포기하기도 한다. 중국에는 출산 포기 여성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출산 포기 여성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吴帆, 2016; 陈友华·苗国, 2015; 2016). 게다가 중국은 아이 성별선호 현상이 뚜렷하다. 출산정책의 제한, 적은 이상적 자녀수 때문에 성별 선호를 만족시키는 주된 방식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아니라 태아 성별 진단과 태아 성별 결과에 따른 낙태다. 이는 그 해의 신생아 수 감소뿐만 아니라 출산지연, 출산 간격 확대 등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본래 태어날 수 있었던 여자 태아가 유산으로 죽었기 때문에 출산율이 더 낮아진 것이다(郭志刚, 2008).

정책적 요인은 중국에서 가족이나 개인에 대한 출산지원책이나 공공

보육정책이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사회와 가정에서 여전히 양성 불평등 현상이 있으며 육아를 위한 여성의 기회비용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여성의 출산 의향이 저하된다(黄玉琴·萧易忻, 2017; 吴帆, 2016; 陈友华·苗国, 2016). 산아제한 정책의 영향도 있다. 중국의 저출산은 산아제한 정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산아제한 정책이 취소된 후 2008년 중국의 출산율은 약 2.5명에 달했다(陶涛·杨凡, 2011). 산아제한정책은 출산율을 크게 저하시킨다(郭志刚, 2008; 陈卫, 2014). 산아제한정책이 완화되면서 누적효과로 인해 출산율은 몇 년 안에 반등할 것이다(靳永爱, 2014; 翟振武等, 2015). 그러나 두 자녀 정책이 도입된 후 2016년과 2017년 출생인구를 살펴보면 정책이 조정되고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았다(王广州等, 2018).

한국에서 저출산 관련 선행연구에서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요인은 대체로 결혼지연과 자녀출산 연기로 집약된다. 초혼 연령이 상승하고 있으며 초혼 연령의 상승은 직접적으로 출산 자녀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에서 초혼 연령의 상승은 청년세대의 고용불안정성에 기인한다. 특히 남성의 고용불안정성 증대에 따른 초혼연령 상승은 여성의 초혼연령 상승을 초래하고 주택마련비용의 상승 역시 남성의 결혼시장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여성에게 대부분 부과되고 있는 가사나 자녀돌봄의 책임,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기업 문화 등의 사회환경은 상당수의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 및 자녀 출산을 회피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한다. 한국에서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따른 어려움은 결혼 후 혹은 자녀 출산한 여성이 경력단절이 되는 것을 주위에서 목도하는 미혼 여성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 결혼 의향과 출산 의향을 낮춘다. 경제적 요인으로 낮은 경제성장기에 진입한 한국사회에서 절대

일자리 수의 감소와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성은 상대적으로 자녀양육 및 교육비 부담이 많은 현실에서 자녀출산을 꺼리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저출산의 핵심원인으로서 결혼지연과 자녀출산 연기는 고용 불안정문제, 양육 및 교육 부담문제, 주거비용 문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의 이슈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그 결과 한국 사회는 심각한 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저출산 요인을 보면 젊은 세대의 만혼화, 출산 의향 감소, 육아와 가사를 여성이 주로 하는 성불평등문제,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문제, 직장과 육아 병행 어려움 등 유사한 부분들이 많다.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

1. 한국
2. 중국
3. 양국의 정책 동향 비교



1. 한국

가. 인구억제정책의 추진 및 적극적 저출산 대책으로의 전환

1) 한국의 인구정책 개발

한국의 인구정책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는데 당시에 급격히 늘어나는 출생아수를 억제하여 사회발전을 도모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출산 억제정책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민의 능동적인 참여로 20여년 만인 1983년에 합계출산율 2.1명 이하의 인구대체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으로 낮추는데 성공하였다. 합계출산율이 1.6~1.7명으로 충분히 낮아진 1980년대 중반 이후에도 출산억제정책은 지속되었으며, 1996년에 들어서야 정부의 인구정책은 출산억제정책에서 인구자질향상을 위한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출산수준은 1.5명 미만으로 낮아졌고, 인구를 둘러싼 정책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급기야 2001년부터는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에 머무르면서 저출산 해결 및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가 국가 최대의 현안과제로 등장하였다(박승희·김사현, 2008; 김태현, 2012).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2004년 출산장려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한다고 선언하였으며(김두섭, 2007),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5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06년 8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4대 분야 237개 세부과제를 통해 5년간 42.2조원을 투입하였다(대한민국 정부, 2011). 이어 2011년부터는 3대 분야, 231개 세부과제, 109.9조원 규모(저출산 부문에는 60.5조원 투입)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었으며, 2016년부터는 197.5조원 규모(저출산 부문에는 108.4조원 투입)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2016).

그림 3-1 한국의 인구정책 개발



출처: 국가기록원(2018). ‘인구정책 어제와 오늘’.

2) 가족계획정책의 전개: 1970년대

가족계획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부를 중심으로 가족구성 계획을 세우는 일을 일컫는데 구체적으로는 부부의 생활능력이나 이상(理想)·연령 등을 고려하면서 산아(産兒)의 수나 출산 간격을 계획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임을 수단으로 하지만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의 사회적·문화적 생활향상을 지향하는 것이므로 자주적인 인간생활의 행복을 추구하는 점에서는 산아제한과는 일단 구별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임여성(不妊女性)에게 진료를 통해 임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가족계획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두산백과, 2018).

한국에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가족계획이 채택되어 그 사업이 구체화된 것은 1962년의 일이었다.⁴⁾ 「가족계획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그 당시 추정된 인구증가율 2.9%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66)」이 끝날 때까지 2.5%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7~1971)」이 끝날 때는 2.0%로 내리겠다는 목표를 세워 전국에 가족계획 상담소를 설치하고, 면(面)마다 1명 이상의 가족계획 요원을 배치하는 등 가족계획에 대한 지도 계몽 및 봉사를 실시하였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76년에는 연간 평균증가율 1.7%,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81년에는 1.5%까지 낮추는 계획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수용태세를 갖추므로써 인구증가억제에

4) 1961년 5·16 군사 정변을 통해 국가최고회의 의장이 된 박정희는 그해 10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구의 조절을 위하여 “가족계획이라는 새로운 국민운동안을 검토, 작성 중에 있다”고 발표한다. 이 기자회견에서 박정희는 “정부가 경제부흥에 아무리 애쓰더라도 인구의 무제한 팽창은 경제계획의 성공을 곤란케 만들 것” 입을 강조하였고, 그로부터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11월 13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부로 ‘가족계획사업’을 정식 결의한다. 12월 6일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명의로 가족계획을 국가시책으로 채택한다는 담화문이 발표되었고, 이와 동시에 피임약제와 기구의 수입 및 국내생산 금지가 모두 해제되었다(조은주, 2018: 19).

많은 효과를 거두게 되었으며, 주변 각국으로부터 성공적인 표본으로 주목을 받았다(두산백과, 2018).

가족계획이 구체화 된 1962년 이후 1963년까지 가족계획사업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마친 국가는 1964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가게 된다. 1963년까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기로, 지정 의사에 의한 정관 수술 시술 이외에는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족계획사업에 의한 출산조절 보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농촌의 읍면 행정단위마다 가족계획 계몽요원이 배치된 1964년부터로 볼 수 있다. 1970년대가 되면 계몽요원에 의한 직접적 설득에 의지하는 사업방식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배은경, 2004: 157-158).⁵⁾

이 시기를 전후한 가족계획사업의 역사와 개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다. 1991년에는 가족계획사업 30년을 맞이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는 각각 『인구정책 30년』과 『家協 30年史』 등을 발간하면서 사업 주체의 입장에서 가족계획정책의 흐름을 되짚어보기도 하였다(배은경, 2004: 158). 이와 함께 아래 <표 3-1>과 같이 가족계획정책의 추진 단계를 5년 단위로 나누어 제시한 연구가 존재하기도 한다(김초강·정혜경, 1999; 배은경, 2004:159에서 재인용).

5) 한국의 가족계획정책에 대해 홍승식은 1964~1971년까지를 요원활동 중심기, 1971~75년까지를 확대운영기, 1975년부터를 종합적 접근기로 나누었으며(홍승식, 1980: 31-39). 김미현은 1960년대를 조직화 및 발전 단계, 1970년대를 가족계획 확대기로 구분(김미현, 1993: 40)하였다(배은경, 2004: 158에서 재인용).

표 3-1 가족계획정책의 변천

		알맞은 자녀 운동기 (‘61~‘65)	세 자녀 운동기 (‘66~‘70)	두 자녀 운동기 (‘71~‘75)	가족계획 생활하기 (‘76~‘82)	한자녀 운동기 (‘83~)
정책목표		인구억제	인구억제	인구억제	인구억제	인구억제
표어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	3, 3, 35 (세살 터울 셋만 낳고 35세에 단산하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기르자	하루앞선 가족계획 십년앞선 생활계획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인 구 지 표	기준년도	(1964)	(1966)	(1975)	(1980)	(1985)
	총인구(천명)	24, 989	29, 160	34, 679	37, 124	41, 176
	인구증가율(%)	3.0	2.6	1.79	1.67	0.89
	합계출산율(%)	6.0	5.4	3.2	2.8	2.2
	피임실천율(%)	9.0	-	44.2	54.5	70.4
	이상남아수(명)	2.5	-	1.7	1.6	-
사업 조직	중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사회부 ■ 대한가족계획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사회부 ■ 대한가족계획협회 ■ 가족계획평가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사회부 ■ 대한가족계획협회 ■ 가족계획연구원 ■ 인구정책심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사회부 ■ 대한가족계획협회 ■ 가족계획연구원 ■ 인구정책심의위원회 	
	시·도	-	가족계획계 이동시술반	가족계획계 이동시술반	가족보건계 가족보건이동시술반	
	보건소	보건소·시술기관 재건국민운동조직	보건소·지정시술관 가족계획요원	보건소·지정시술관 가족계획요원	보건소·모자보건센터 지정시술기관·통합보건 요원	
	리(里)	-	가족계획 어머니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부녀회	
주요 피임수단	콘돔, 정관수술, 정제, 젤리, 다이아프럼 주기법	루프, 콘돔, 정관수술, 먹는 피임약, 기타	루프, 콘돔, 정관수술, 먹는 피임약, 난관수술 등	복강경수술, 정관수술, 자궁내장치, 콘돔, 먹는 피임약 등	복강경수술, 정관수술, copper 자궁내장치, MR, 돔, 먹는 피임약 등	
사업접근형태	진료소 중심	요원 중심	통합사업	사회지원정책을 통한 사업체제	강력한 인구억제정책	
사회적 지원시책	-	-	-	소자녀관 형성을 위한 유인 및 규제정책	남아선호관 불식을 위한 법 개정	

자료: 김초강·정혜경(1999: 341); 배은경(2004: 159)에서 재인용.

1970년대는 강력한 절대 권력을 바탕으로 한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정책의 방향을 정하였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더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국가의 안녕을 달성해야 한다는 미명하에 강력한 중앙집중화를 추진하게 된다(백승훈, 2012: 77). 대외적으로는 일부 사설기관들(록펠러재단, 미국인구협회 등)의 관심사에 머물러 있던 인구통제가 일약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으며, 미국 정부 및 UN이 공식적으로 제3세계의 인구통제 활동에 개입하기 시작하고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이 마련되면서 1970년대부터는 국제 인구통제 레짐의 전성기가 시작되었다. 이를 통해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인구통제 정책을 채택하게 되면서 한국에게는 역설적으로 국제 인구통제 레짐의 독점적 수혜자로서 상당한 지원을 받아오던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이전의 한국 가족계획사업들에 상당한 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배은경, 2004: 167). 이 같은 국제 인구통제 기관들의 지원 감소에 따라 외국의 원조를 이용하여 피임기구를 들여오고 계몽요원들의 대면접촉을 통해 피임수용에 대한 설득 후 무료피임 시술의 형식으로 주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직접 전달식 사업 방식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배은경, 2004: 168).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하에서 국가 주도의 가족계획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발육을 도모하고 국민향상에 기여하고자 「모자보건법(법률 제2514호, 1973.2.8.)」을 제정하였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에서 시행되어 온 가족 계획 정책/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합법적 인공유산에 대한 규정을 마련(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의 개정을 통한 인공유산에 따른 처벌 조항 폐지)하고

의사가 아닌 사람도 일정한 훈련을 이수하면 자궁내장치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모자보건 보다는 출산 억제를 위한 실적 위주의 가족계획사업을 뒷받침 하는 것이기도 하였다(배은경, 2004: 168, 백승훈, 2012: 82-83).

또한 인구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가족계획사업에 대해 각 부처의 협조를 바탕으로 소득법을 비롯하여 가족법을 개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74년에는 인적공제를 세 자녀까지로 제한하던 것을 1976년에는 두 자녀로 줄였다. 두 명의 자녀를 낳은 부부가 불임수술을 받게 되면 공공주택 입주우선권 부여하고, 기업의 가족계획사업비에 대해 손비 처리 등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백승훈, 2012: 81-82).

이와 더불어 70년대 접어들어 이전까지의 가족계획의 보급과 홍보활동만으로는 산아제한 정책의 효과를 얻을 수 없었다는 판단에 따라 가족계획정책에 대한 사업방식의 다양화를 모색하게 되는데 70년대부터는 인쇄매체·슬로건·표어·TV 등 각종 매체를 홍보사업이 크게 강화되었다. 1966년 셋으로 제시되었던 표준적 자녀수는 1971년 시작된 ‘둘 낳기 운동’으로 두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시기 ‘둘 낳기’라는 목표는 아들을 낳기 위해 계속 출산하는 관념을 고치지 않고서는 요원한 일이었다. 이에 따라 “딸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슬로건을 토대로 가족계획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이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표어로서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배은경, 2004: 169). 특히 1972년 정부 주도로 본격화된 새마을 운동과 결부되어 가족계획정책은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 이르기까지 보다 광범위한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연구되기도 하였다(양재모 외, 1975; 이성진 외, 1979; 김지자 외, 1979; 배은경, 2004: 170에서 재인용).

이러한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의 결과로 1972년 4.12명이던 합계출산율은 1975년 3.43명으로 낮아졌으며, 1980년에는 2.82명으로 이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 시기 입안된 대부분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가족계획 정책 또한 대부분 대통령의 지시를 비롯한 행정부를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의제화하고 입안되었다(백승훈, 2012: 82).

3) 1980년대의 가족계획정책: 인구증가 억제정책의 유지⁶⁾

1970년대 후반 정부는 남아선호사상을 약화시키고 소자녀관을 정착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두 자녀 가정을 확산하기 위해 의료보험 분담급여,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공무원 가족수당, 교육비 보조금의 비과세 범위를 두 자녀로 제한하는 식의 사회지원 시책을 강화·확대하면서 동시에 자녀 ‘하나 낳기 운동’을 전개하였다(홍문식, 1998; 박영창, 2005: 23). 이러한 정책 기조는 출산율이 대체출산율 2.1명 이하로 내려간 1980년대에도 계속 유지되었으며(박지은, 2018: 15), 한국전쟁 후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출산을 하게 되면 인구증가율이 급격히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1980년대에 들어서도 가족정책은 이전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인구증가 억제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추진된다.⁷⁾

6) 1980년대 이후의 가족계획정책에 대해서는 백승훈(2011)의 논의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7) 198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 인구는 4,000만이 넘어섰다. 1980년대 초부터 정부는 「인구증가 억제방안」 등을 마련하여, 매년 인구억제를 정부 각 부처에서 긴밀한 연계를 갖고 추진토록 하였다. 지방의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서도 대대적으로 펼쳐졌다. 방송매체를 통해서도 ‘우리는 초만원’ 등으로 4,000만에 대한 경각심을 연일 홍보하였다. 특히 1983년 7월 인구 4,000만이 넘는 것을 계기로, ‘인구폭발’이라는 용어가 부각되었다. 정부와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인구폭발’방지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인구증가의 심각성을 홍보하였다(위영, 2011).

이 시기 정부는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종료되는 1986년까지 합계출산율을 인구대체수준인 2.1명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1980년에 합계출산율이 2.8명으로 여전히 높고, 베이비붐 세대가 출산기에 집중되며, 남아 선호가치는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어서 출생아수의 지속적인 감소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더욱 강력한 인구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되었다. 1981년 12월에 발표한 새로운 인구증가 억제정책은 49개 시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피임시술비의 인상 등 가족계획사업 관리제도 개선, 새마을사업을 통한 사업 강화 등 피임보급 확산을 위한 시책, 피임실천 및 소자녀관 촉진을 위한 규제 및 보상제도, 자비 피임실천 촉진, 남녀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사회제도 개선, 그리고 홍보 및 교육 활동의 강화 등이다. 이때 사용된 표어들은 인구위기인식 제고, 한 자녀인식 제고, 남아 선호관 불식, 모자보건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특히, 출산율이 대체수준 이하로 낮아진 1980년대 중반 이후에도 한 자녀인식관련 표어가 중심을 이룰 정도로 출산억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국가기록원, 2018).

특히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낳은 가정에 대해 각종 불이익을 가하였는데 1983년에는 두 자녀까지만 세금 공제를 하였고, 공무원의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 수당도 두 자녀까지, 신생아의 분만급여도 두 자녀까지로 제한하는 등 다산 가정에 대한 부담을 늘리고 두 명 이하의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양면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결과 1983년 합계출산율이 2.06명에 도달하여 인구대체율의 기준인 2.1명 보다 낮아지는 결실을 거두게 되었고(백승훈, 2012: 90) 1985~1995년 기간 중에는 계속 1.7명 내외의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게 된다.

인구대체율 이하의 합계출산율을 달성하였지만 새로운 인구문제가 대

두되었다. 소자녀 가치관의 확산에 따른 적은 자녀수의 보편화에 대해 전통적 남아선호사상이 결부되고, 1980년대 초 본격 도입된 초음파 검사기기⁸⁾ 등 의료기기의 발달로 남아를 갖고자 하는 바람이 의료기술을 통해 구체적인 시도로 이어져 1980년 여아 100명당 남아의 수가 103.9명에서 1990년에는 116.5명으로 급증하는 등 남녀성비의 불균형이 발생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87년 「의료법」 개정(태아의 성 감별을 하지 못하도록 ‘의사면허 취소’ 등의 제재조항 신설) 등을 통해 남녀성비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정부는 강력하고 적극적인 인구조절 정책으로 인한 문제인 성비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신념을 주입하기 위한 또 다른 계몽을 시작하게 되었다⁹⁾(이삼식, 2001; 백승훈, 2012).

1970년대에 인구 억제를 위해 두 자녀로 제한하기 시작한 자녀의 수를 1980년대에는 1가구 1자녀까지 확대하였다. 이를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인구탑’이 세워졌다. 실시간으로 인구현황을 알려 인구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합계출산율이 1.6~1.7명으로 충분히 낮아진 1980년대 중반 이후에도 출산억제정책은 꾸준히 지속되었으며, 1996년에 들어서야 정부의 인구정책은 출산억제정책에서 인구자질향상을 위한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전환하였다(국가기록원, 2018).

8) 신성철(1987)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초음파 기기가 도입된 시기는 1969년이나, 이를 태아성감별에 이용한 시기는 1980년 이후이다(이삼식, 2001).

9) 1980년대 정부의 출산억제를 위한 표어인 “잘 기른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라는 문구에서 보듯 사회적으로 오랜 시간동안 형성된 소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심각한 성비불균형이 발생했다.

4) 1990년대의 가족계획정책: 인구자질 향상 정책 시기

인구억제정책은 1990년대 초부터 조금씩 변화를 겪었다. 즉, 노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출산을 저하가 초래할 사회적 문제점에 대해 관련 전문가나 연구기관에서 지적¹⁰⁾하였고, 정부는 1996년 30여 년간 추진해왔던 ‘인구 억제’를 포기하고, 출산장려를 주요 골자로 하는 ‘신인구정책’을 수립하기에 이르게 되었다(위영, 2011).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진 것인데(박지은, 2018) 신인구정책의 주요 추진 내용은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저출산 수준의 유지, 출생성비의 균형, 인공임신중절 방지, 남녀평등 및 여권신장, 청소년의 성활동 예방, 가족보전 및 복지증진’ 등이다(위영, 2011).

1987년 태아의 성 감별을 금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의 정부의 표어인 “아들바람 부모세대 짝꿍 없는 우리 세대”라는 문구에서 보듯 남녀성비불균형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성비불균형은 자녀들이 겪을 문제라는 보다 폭넓은 인식을 갖도록 적극적인 대국민 계몽을 추진하였다. 또한 출산과 관련된 여성의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1988년 정무장관 2실에 20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문제와 문화예술분야를 비롯한 여성 관련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는 1990년대 이후 본격적인 여성의 정치참여는 물론 가족정책과 관련된 밑거름이 되었다(백승훈,

10) 1995년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인구조절의 해법을 찾기 위해 인구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노동생산성이 감소하고 노령인구의 증가로 노인부양비 부담에 따른 복지비의 가중, 사회보험 재정 악화 등은 물론 국가경쟁력 약화에 따른 국가적 위기의식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산아제한정책을 폐지하고 구체적이고 뚜렷한 대안 없이 인구자질향상정책(신인구정책)으로 인구조절의 방향에 있어 급격하고 단절적 변화가 나타났다(백승훈, 2012: 113).

2012: 101).

1997년 산전·후 휴가 제도를 도입하고 그 기간을 60일로 하는 「모성 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이 시기에는 가족계획사업을 축소하고, 출생성비 불균형을 조정하는 등 첫 단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며 인구자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였다(박지은, 2018: 15). 그렇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출산율이 본격적으로 감소(1996년 1.58명, 1997년 1.54명, 1998년 1.47명)한 이후에도 1997년 말에 발생한 IMF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인식되어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이미 저출산에 이르러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국가의 경우 대체출산수준에 근접하였을 때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추진한 것과 비교한다면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다(장영식 외, 2010: 92).

5) 2000년대 이후의 가족계획정책: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대한 사회적 논의의 시작

2000년대 이후는 한국사회 저출산의 원인 규명을 통해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모색한 시기이다(김승권, 2003).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지속적 저출산 현상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학계와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다. 그렇지만 저출산이 정책 이슈로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2002년¹¹⁾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지속된다

11) 2002년 출산율이 1.17명으로 하락하여 저출산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하였으나,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 시기 각 부처의 출산 양육지원정책이 개별적, 단편적으로 추진되어 정책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출산율 제고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임신출산관련 비용 지원, 산전검사 보험급여 확대, 영유아 보육료 교육비 지원 확대, 소득세 공제한다 인상 등 출산 양육 관련정책이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결혼 및 출산장려 활동이 산발적으로 추진되었다. 농촌총각 결혼주선, 신혼부부 건강검진, 정·난관 복원 수술비 지원, 불임부부 검진 및 치료비 지원, 출산지원금 지급, 출산용품 지급,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출산시 도우미

면 국민연금 재정 고갈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이후 2004년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하였고,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시행하면서 저출산은 사회이슈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된다(정재훈, 2017: 82).

2005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06년 8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4대 분야 237개 세부과제를 통해 5년간 42.2조원을 투입하였다(대한민국 정부, 2011).

2006년에 수립된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에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통한 인구균형 유지,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기반 구축,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추진체계 및 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저출산대책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출산 기간 별 장기정책 목표는 제1차(2006~2010) 기간 중에는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을 구축하고, 제2차(2011~2015) 기간 중에는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를 확립하며, 제3차(2016~2020) 기간 중에는 OECD국가 평균 수준 출산율을 회복 및 고령사회에 성공적 적응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장영식 외, 2010: 1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이다. 이를 위해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방과 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자녀양육 가

지원, 보육료 지원, 양육비 지원 등을 그 예로 볼 수 있다(장영식 외, 2010: 92).

정에 대한 조세/사회보험 혜택 확대,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국내입양 활성화, 자녀양육가정에 아동수당 지급 등의 정책사업을 추진하였다. ②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이다. 이를 위한 사업은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 민간 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등이다. ③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이다. 이를 위해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불임부부 지원,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④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지원정책이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는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육아휴직제도 다양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가족친화적 기업인증제 도입 등 직장문화 개선 등이다. 그리고 ⑤ “학교·사회 교육 강화 및 가족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사회 교육을 강화하고,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⑥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을 조성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근절대책을 강화하였다. ⑦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 기능 강화,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학교의 건강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아동청소년의 창의성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과 관련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담고 있다(장영식 외, 2010: 96-96).

이어 2011년부터는 3대 분야, 231개 세부과제, 109.9조원 규모(그 중 저출산 부문에는 60.5조원 투입)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의 한계(맞벌이 가구, 베이비 붐 세대 등 정책적 수요가 높은 계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하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 체감도가 낮은 실정, 저출산·고령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 다방면에 걸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나 특정영역에 편중, 저출산·고령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 참여가 요구되나, 정부의 역할 강화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부족으로 효과성 제고에 한계)를 되짚어 본 후 “저출산·고령사회 성공적 대응으로 활력있는 선진국가로 도약”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향후 5년간 점진적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4대 분야 231개 세부과제를 추진하였다(대한민국 정부, 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는 ① “일과 가정의 양립일상화”를 위해 휴가휴직제도 개선, 유연한 근로형태 확산, 가족친화직장환경 조성 등을 ② “결혼·출산·양육 부담경감”을 위해 가족형성 여건조성, 임신·출산 지원확대, 자녀양육비용 지원확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③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계층 아동지원강화,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아동·청소년정책 추진 기반조성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장영식 외, 2010: 101).

2016년부터는 197.5조원 규모(저출산 부문에는 108.4조원 투입)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합계출산율을 현재 1.21명에서 2020년 1.5명으로 높여 초저출산 탈피, 노인빈곤율을 현재 49.6%에서 2020년 39%까지 감축하고자 하는 목표 하에 인구대체 수준 출산율(2.1명) 도약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제3차 기본계획」을 「브릿지 플랜 2020」이라

명명하고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그간의 미시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종전 기혼가구 보육 부담 경감에서 일자리, 주거 등 만혼·비혼대책으로 전환하고, 제도, 비용지원 위주에서 실천, 사회인식 변화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의 인식·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정부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지역과 20~3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의 저출산 대책 핵심 추진 방향은 [그림 3-2]와 같이 종전 보육·임신·출산지원을 내실화하고 초저출산 장기화의 핵심 원인인 만혼·비혼, 취업모의 출산 기피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5).

그림 3-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저출산 대책 핵심 추진 방향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나. 한국의 저출산 대응 가족지원정책

가족지원정책은 가족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가족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은 신혼부부 대상의 주거지원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임신·출산지원, 양육보육지원, 교육지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이들 정책 가운데 일부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1)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이후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자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청년층의 결혼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였다. 청년층 결혼지원정책은 주거마련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결혼에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20~44세 기혼 부인 대상 조사 결과, 기혼여성의 80%가 결혼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 그중에서 주택마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5.2%로(변용찬 외, 2010: 86-87; 김영란 외, 2015: 15에서 재인용) 나타나 주택비용 부담이 결혼과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당시 주거형태를 전월세를 선택하느냐와 자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혼시기가 달랐는데, 자가를 선택하는 경우 결혼시기가 늦어졌다(이삼식, 2013: 8; 김영란 외, 2015: 15에서 재인용). 또 이상호와 이상현(2011: 22; 김영란 외, 2015: 15에서 재인용)은 주택마련 비용을 결혼관습에 따라 남성 측에서 주로 부담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 남성의 초혼연령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여성의 초혼연령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처럼 주거비용과 결혼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에 결혼지원에 주거지원정책이 핵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신혼부부 대상 주거지원정책은 공급정책과 금융지원으로 구분되는데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 <표 3-2>와 같다. 주택 공급 정책은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주택, 신혼희망타운, 분양주택 특별공급이 있고, 금융지원으로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대출 상품이 있다. 지원 대상자는 결혼 후 일정기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이며, 제도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표 3-2 신혼부부 대상 주거지원정책

영역	지원	내용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주택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 신혼부부 우선공급	무주택 저소득층인 신혼부부에게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우선 공급함. 영구임대는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가 대상임. 국민임대는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70% 이하(전용면적 50㎡ 이하는 50% 이하)이면서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이면서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45㎡ 이하 주택에 대한 임대료는 지원(시세의 80% 이용 가능)
	보양전환 임대 특별공급	임대의무기간 10년 후 입주자가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물량 30%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신혼전용 매입임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80% 이하(50% 이하 우선 공급)이면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를 입주대상으로 함. 임대료 30%~50% 수준으로 임대 공급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주택도시보증기금이 리츠 설립,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만 40세 미만이면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의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신혼부부에게 공급.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10년간 고정유지
	신혼부부 전세임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70% 이하(50% 이하 우선 공급)이면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가 입주대상임. 시세의 30%~50%로 전세임대 가능
	공공지원주택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이면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대상. 시세의 70%~85% 임대료로 거주 가능
	신혼희망타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이면서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를 입주대상으로 설계한 아파트 또는 주택단지
	분양주택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대상으로 특별 공급 배정
	금융지원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대출상품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시가 15억원 이하로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우대금리 적용

자료: 국토교통부(www.molit.go.kr), 주거복지 로드맵의 '주거복지 시생활영서' 중 '신혼부부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하고, 마이홈(www.myhome.go.kr)과 주택도시보증기금(nhuf.molit.go.kr)에 제시된 상세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함(김재원: 2018. 12. 5.)

2) 자녀 양육 지원정책

자녀양육지원정책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정책 영역이다. 대상이나 지원내용에 따라 많은 지원제도들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임신·출산지원, 양육 및 보육지원, 교육지원으로 크게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임신·출산지원은 첫째, 관련 의료 비용 지원이 있다. 주요 지원은 임신·출산 의료비와 난임 관련 의료비 지원, 신생아 의료비와 건강관리 지원 등 의료비 지원이 있다. 임신출산의료비는 임신 1회당 60만원의 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이다. 난임의료비 지원은 체외수정 등 특정 시술로만 임신이 가능한 저소득층 부부에게 난임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로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의료급여수급자가 해당되며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 횟수가 다르다.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자이다. 신생아 의료비와 건강관리 지원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법정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며 신생아의 난청, 대사성 질환 진단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저소득층 산모와 신생아에게는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한다.

둘째, 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임신출산 시기 휴가 지원이 있다. 산전후 휴가는 출산을 전후로 3개월간의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유사산 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시 휴가기간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일로부터 3일간(유급) 필요시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셋째, 출산입양자 공제는 자녀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경우 1명당 200만원의 소득 공제를 해주는 지원제도이다.

양육 및 보육지원은 첫째, 육아기 시간 지원으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가 있다.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다.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월100만원, 하한액: 월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또 육아휴직 급여 특례제도¹²⁾가 있는데,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넘지 못한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지 않으며, 근로시간 단축시 급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할 차감된다.

12) 급여특례는 통상 부모 중 아버지가 하는 경우가 많아 '아빠의 달'로 칭하기도 한다.

둘째,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경제적 지원이 있다. 아동수당은 만 12세 이하 아동 전체에게 아동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0~6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되는 수당액은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되는데, 12개월 미만 20만원,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15만원, 24개월 이상~최장 84개월 미만 10만원이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내용은 아동 1인당 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이다.

셋째, 취학전 아동에 대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이다. 0~5세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비용이 전액 지원되며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도 지원된다.

넷째, 보육지원서비스로 아이돌봄서비스와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 가운데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가정에서 돌봄 지원을 받는 제도로 아이돌보미를 각 가정으로 파견한다. 단,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여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 이후 시간대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방과후 돌봄 서비스는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초등학교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방과후아카데미 등의 방과후 돌봄시설에서 제공한다.

표 3-3 육아지원정책

영역	지원	내용
임산·출산 지원	임산출산의료비지원	임신 1회당 60만원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지원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난임시술 비용 지원
	신생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예방접종 및 진단검사료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 지급
	유산·사산휴가	유산 또는 사산시 휴가기간 차등지급
	산전후휴가	출산시 3개월간 산전후 휴가 사용, 통상임금의 100%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 시 출산일로부터 3일간(유급), 필요시 5일(무급 2일) 사용
	출산·입양자 공제	출생 또는 입양신고한 입양자가 있는 경우 1명당 200만원 소득공제
양육 보육 지원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자녀 대상 1년의 유급 육아휴직 부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유급으로 근로시간 단축 제공
	아동수당	만6세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 전 계층 영유아 대상 수당 지급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0-5세 보육료 지원 (무상보육)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 대상 보육비용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재가돌봄서비스 지원
교육 지원	방과후 돌봄지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 이용지원
	교육급여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취약가족 자녀에게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 ■ 다문화가족대상 언어발달지원, 방문교육지원 등

자료: 복지포털www.bokjiro.go.kr와 고용보험https://www.ei.go.kr에서 해당분야 정책을 추출하여 요약정리함 (검색일: 2018. 12. 7.)

교육지원은 무상교육과 취약가족 교육비 지원이 있다. 한국의 경우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전액 무료로 학교를 다닌다. 무상교육은 등록금뿐만 아니라 교과서 비용, 급식비용까지 모두 면제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취약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 교육비용 지원이 있는데 주요 지원 제도는 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가족 교육지원이 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맞춤형 급여로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용을 지원하며 고등학생에게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를 지원한다.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가족의 경우 의무교육 이외의 교육지원은 소득기준에 따라 대부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그 외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 가족의 자녀 교육비 추가 지원제도가 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방문교육서비스 등 교육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

2. 중국

가. 인구억제정책 추진 및 두 자녀 정책으로의 전환¹³⁾

중국은 1980년대 이후 산아제한정책을 30여 년간 실시했고, 제한적인 조건에서 완화하는 과정을 거친 후 최근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였다. 중국의 인구억제정책은 ‘출산장려책-출산억제정책-산아제한계획-엄격한 산아계획’ 등 크게 네 단계로 나뉘어진다(KIEP 북경사무소, 2015: 2).

13) 본 절은 梁中堂(2014). “艰难的历程：从‘一胎化’到‘女儿户’”，《开放时代》第三期에 기반하여 발췌 정리하였으며, KIEP 북경사무소브리핑, 2015년 11월 27일, vol. 18 No 19. “중국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시행 배경 및 평가”를 참고함.

1) 1949년~1953년 출산장려책 실시

중국은 1949년 건국 초기에 인구 증가에 대해 정부가 지원, 홍보, 격려를 하며 다자녀를 둔 엄마들을 대상으로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즉, 1949년부터 1953년까지 인구증가를 정책기조로 내세우며 출산장려를 통한 노동력 확보와 생산력 증대를 도모하였다. 이 시기 마오쩌둥(毛澤東)의 인수론과 전통적인 중국 농경사회의 다산다복 개념을 바탕으로 인구수가 급증하였다(KIEP 북경사무소, 2015: 7-8).

2) 1953년~1970년 출산억제정책 실시

그러나 1953년 첫 인구조사 결과 예측치를 웃도는 인구성장을 기록하며 인구증가 문제가 대두되자 인구억제정책 시행 및 피임, 인공유산에 대한 각종 제재조치를 완화하였다(KIEP 북경사무소, 2015: 8).

1953년 정무원, 위생부 피임 및 인공유산법을 비준하였다. 1955년 3월 중국 위생부 당 조직의 「중국 공산당 중앙 정부에 제출한 출산 문제보고서(关于节制生育问题向党中央的报告)」¹⁴⁾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시를 계기로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국민의 피임과 계획 출산에 대한 요구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다(梁中堂, 2014: 12). 중국인이 전통적인 출산 방식이 도시의 새로운 생활방식이나 직장 생활에 더 이상 맞지 않아 옛날처럼 일찍 결혼하고 출산하거나 많은 자녀를 두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중국 공산당 중앙 정부와 국무원은 '어려운 삼년' 시기가 지나 경제가 호전되자 1962년 12월 「철저한 출산제한 정책에 대한 지시(关于

14) <http://cpc.people.com.cn/GB/64184/64186/66660/4493033.html>. (검색일: 2019. 2. 1.)

认真提倡计划生育的指示)」¹⁵⁾를 통해 “도시와 인구가 밀집한 농촌지역에서 출산제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정책이다”고 강조했다(梁中堂, 2014: 13). 또 1964년 국무원 위생부의 모자위생국은 각 직할시와 성에 산아제한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아제한기술 지도를 실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출산 제한 정책은 재정적인 토대가 있는 정부차원의 제도로 격상했다.

3) 1970년~2015년 산아제한계획 실시

중국 국무원은 1971년 「출산제한 추진에 대한 업무 보고서(关于做好计划生育工作的报告)」¹⁶⁾에서 “계획 출산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오(四五) 계획(第四个五年计划, 1971~1975)」에서 “(자녀)하나는 적지 않고, 두 명은 가장 적절하고, 세 명은 많다”고 언급하였다¹⁷⁾. 1973년 12월에는 중국 국무원 출산제한 팀장인 화궈푹(华国锋)이 최초로 “더 늦게(晚), 더 낮게(稀), 더 적게(少)”라는 산아제한방침을 정하였다(梁中堂, 2014:13)¹⁸⁾. 1978년 2월 26일 출산제한 추진과 인구 목표에 관한 내용은 처음으로 국무원 총리의 「정부보고서(政府工作报告)」에 실렸으며 3년 안에 중국의 인구 자연 증가율을 1%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가 세워졌다(梁中堂, 2014: 14). 1978년 3월 제5차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한 「중화인민공화국헌법(中华人民共和国宪法)」 제53조에서 ‘국가가 출산 제한 정책을 제창하고 추진한다’¹⁹⁾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출산제한이 처음

15) <http://cpc.people.com.cn/GB/64184/64186/66669/4493533.html>. (검색일: 2019. 2. 1.)

16)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11/19/content_10304.htm. (검색일: 2019. 2. 1.)

17) http://www.gov.cn/zhengce/2015-02/09/content_2816919.htm. (검색일: 2019. 2. 1.)

18) 吴忠观(1997). 人口科学辞典: 西南财经大学出版社.

으로 법으로 제정되어 중국 헌법에 기재되었다. 20세기말까지 중국의 인구수를 12억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1978년 중국 중앙정부는 「국무원 출산제한 팀 첫 업무 회의 보고서(关于国务院计划生育领导小组第一次会议的报告)」를 내놓으면서 국민의 혼인 연령과 자녀수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시했다(梁中堂, 2014: 14). 이에 따르면 “만혼(晩婚)은 농촌 남성이 만 25세, 여성이 만 23세 이후 결혼하는 것이다. 도시 같은 경우, 농촌보다 좀 더 늦은 나이로 적용된다. 부부는 아이 한 명을 권장하고, 최대 자녀 2명을 둘 수 있으며, 출산 간격이 3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서 1979년 1월 개최된 중국 출산계획 사무실 주임 회의를 계기로 ‘한 자녀 정책’ 시대와 ‘법률로 국가를 다스리는 법치시대’에 접어들면서 ‘한 자녀만 낳기를 장려하라’는 구호가 생겨났다(梁中堂, 2014: 15). 중국 국무원 출산제한팀의 효과적인 노력 덕분에 ‘한 자녀 정책’은 1979년 중국의 모든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1980년 9월 25일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에서 「중국 인구 증가 문제에 대해 모든 중국 공산당원, 공청단원에게 드리는 편지(关于控制我国人口增长问题致全体共产党员、共青团员的公开信)」에서 “부부는 자녀 한 명만 낳자”고 전국민에게 호소했다(梁中堂, 2014: 20).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두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제한적인 완화조치도 병행되었다. 1982년 「출산제한 추진에 대한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지시(中共中央, 国务院关于进一步做好计划生育工作的指示)」²⁰⁾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갖는 농촌 주민은 두 자녀를 둘 수 있다고 허용했다. 1984년

19) <https://baike.baidu.com/item/%E4%B8%83%E5%85%AB%E5%AE%AA%E6%B3%95>. (검색일: 2019. 2. 1.)
 20) <http://cpc.people.com.cn/GB/64184/64186/67029/4519160.html>. (검색일: 2019. 2. 1.)

중국 중앙정부가 국가계획생육위원회 당조직의 「출산제한에 대한 업무 보고서(关于计划生育工作情况的汇报)」²¹⁾에 대해 피드백을 줄 때 농촌 주민의 출산 제한은 일정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비준을 받을 경우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비준 없이 둘째 자녀를 낳거나 더 많은 자녀의 출산은 절대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제한적인 정책완화’이지, ‘무조건의 정책완화’는 아니었다. 1988년 3월 31일 「출산 제한업무보고 가이드라인(计划生育工作汇报提纲)」에 따르면 농촌 주민들은 기존 허용된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특별한 상황 외에 딸 한 명만 둔 가정(独女户)이 두 번째 자녀를 원할 경우, 첫 번째 자녀를 낳은 후 몇 년 지나면 두 번째 자녀를 낳을 수 있다(梁中堂, 2014: 30). 또 1988년 5월 9일부터 12일까지 중국 국가계획생육위원회에서 전국 계획생육위원회 주임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의 각 성(省), 시(市), 자치구(自治区)들이 「계획생육조례(计划生育条例)」를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梁中堂, 2014: 30). 농촌지역에서 본인이 외동딸일 경우 자녀 두 명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외동딸 가정’ 정책이 본격적으로 등장했으며 1991년 중국 모든 지역에서 실시되기 시작했다. 2002년 9월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인구 및 계획생육법」²²⁾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출산 정책을 유지하고 늦게 결혼하고 늦게 아이를 낳는 것을 장려하며 한 자녀 정책을 제창하되 법률법규 조건을 만족한 사람은 두 번째 자녀를 낳을 수 있다.

21) <http://cpc.people.com.cn/GB/64184/64186/66699/4495322.html>. (검색일: 2019. 2. 1.)

22) http://www.gov.cn/banshi/2005-08/21/content_25059.htm. (검색일: 2019. 2. 1.)

第十八条·国家稳定现行生育政策，鼓励公民晚婚晚育，提倡一对夫妻生育一个子女；符合法律、法规规定条件的，可以要求安排生育第二个子女。具体办法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代表大会或者其常务委员会规定

한편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중국의 인구 추세가 큰 변화가 일어났다. 노동력 문제, 고령화 문제와 인구 구조 문제 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2013년 11월 중국 공산당의 18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에 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여러 중요한 결정 사항(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²³⁾을 내놓으면서 출산 제한이라는 근본적인 국가 정책을 바탕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외동 자녀일 경우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고 출산 정책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2년 말 중국 대륙의 15세부터 59세까지의 노동인구가 동기대비 345만 명 줄었는데 이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최초의 노동력 인구 하락이었다. 2013년 현재, 중국의 60세 이상의 노인은 2억 243만 명에 달해 동기대비 853만 명이 증가했으며 모든 인구에서 15%를 차지하여 0.6% 포인트 증가했다. 2013년 12월 중국중앙정부와 국무원이 「출산정책에 대한 수정 의견(关于调整完善生育政策的意见)」²⁴⁾을 내면서 출산 정책조정의 중요한 의미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명시화했다. 부부 중 한 명이 외동 자녀일 경우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단독 두 자녀(单独两孩)’ 정책이 법으로 제정되고 실시되었다.

4) 2015년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실시

2015년 10월 29일 폐막된 제18기 5중전회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보다 개방하여 ‘전면적 두 자녀 정책(全面二孩)’의 시행을 발표하였다.²⁵⁾

23) <http://cpc.people.com.cn/n/2013/11/15/c64094-23559163.html>.(검색일: 2019. 1. 31.)

24) http://www.gov.cn/jrzq/2013-12/30/content_2557235.htm.(검색일: 2019. 1. 31.)

25)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5-10/29/c_1116983078.htm.(검색일: 2019. 1. 31.)

2015년 11월 3일 정식으로 발표한 「13·5 계획」에서는 전면적으로 소강 사회 건설 개혁심화 법치국가를 실현하고 당의 전반적인 전략의 틀 안에서 향후 중국이 중점적으로 새롭게 추진할 총 14개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14개 주요 추진전략 중 ‘인구발전전략’은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의 실시를 통해 적극적으로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비하고 출산율을 높여 내수 시장을 확장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²⁶⁾ ‘전면적 두 자녀 정책(全面二孩)’의 시행은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중국의 고령화 문제 해결, 도시화 추진, 내수시장 확대 등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이라고 하겠다 (KIEP 북경사무소, 2015: 10).

2015년 12월 31일 통과된 “중공중앙국무원,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의 개혁 및 산아제한 서비스 관리 완비에 관한 결정(中共中央国务院关于实施全面两孩政策改革完善计划生育服务管理的决定)”²⁷⁾에 따르면, 산아제한의 기본 국가 정책이 견지되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두 자녀 실시는 중요한 전략이다. 향후 산아제한의 기본 국가 정책이 견지되는 한편, 출산 정책, 서비스 관리 제도, 가족 발전 지원 시스템, 관리 체제의 종합적인 개혁은 통합 추진된다. 이는 다음을 의미한다.

첫째, 중국 산아제한의 정책적 기조는 여전히 출산에 대한 통제이며, 두 자녀 정책에서 출산의 완전 개방으로 발전하거나 출산 지원의 단계로 발전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업무의 중점이 출산 통제에서 출산 계획 서비스로 발전하였다.

셋째, 계획 서비스의 중점은 산아제한(계획출산) 가족에 대한 발전 지원

26) <http://cpc.people.com.cn/n/2015/1103/c399243-27772773.html>. (검색일: 2019. 2. 1.)

27) http://www.gov.cn/gongbao/content/2016/content_5033853.htm. (검색일: 2019. 2. 1.)

시스템에 유리하게 수립될 것이며, 이는 산아제한 가정의 지원 확대와 앞서 언급된 산아제한 장려 지원 정책의 확대 시행 추진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정책 조정 후 자율적으로 한 자녀만 출산하는 부부에 한 자녀 부모 장려 혜택 정책을 적용하여 시행하지 않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면적 두 자녀 정책으로 한자녀 부모에 대한 혜택은 시행하지 않게 되고, 출산의 완전한 개방은 아니기 때문에 출산에 대한 지원 또한 없다는 점이다.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면서 출산 장려,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정책을 확대해온 한국과 달리 중국은 아직 명시적으로 출산을 장려 또는 우대 지원 정책은 없는 것이다.

나. 중국의 가족지원정책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가정은 양로와 육아의 책임을 부담하는 주요 가족 복지 제공자였다. 1970년대 말 개혁 전 중국은 도시에 일종의 “탈가정화”의 복지 모델을 세워 가정의 역할을 대체하고 가정과 개인에게 각종 복지를 제공해왔지만, 개혁 이후 국가가 도시의 복지 시스템을 추진하고 농촌의 공동체가 해체되며 가족 복지의 제공 형태는 다시 전통적인 방식인 가정에 의존하는 형태로 돌아갔다. 전체적으로 중국의 현재 가족 정책은 평면적이고 취약부분에 대한 보완을 위주로 한다. 취약계층 가정에만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현금 지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서비스 시스템 역시 완비되지 못했다.

또한 그동안 중국의 가족 정책은 주로 산아제한 가정과 취약계층 가정에 중점을 두었고 소량의 지원금을 모두 이들 가정에 지원해왔다. 한 자녀화와 고령화가 나타남에 따라 중국은 아동 보육과 양로문제를 중시하

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족의 부양 책임을 추가로 분담하지 않았으며,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지원의 기초로 삼았다. 중국은 0~2세까지의 아동에 대해 특별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중앙 정부는 3~6세 아동의 취학 전 교육 책임을 주로 지방정부로 넘기고 있다.

1) 산아제한 가정 장려 및 지원 정책과 현금 보조

중국은 전국 범위에서 시행되는 복지제도의 아동 보조금, 가족 보조금 혹은 아동 세수 감면 혜택이 없다.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아래 <표 3-4>와 같이 산아제한 가정 장려 및 지원 정책과 현금 보조가 있었다. 산아제한 가정 장려 및 지원정책과 현금보조는 기본적으로 산아제한 가정 특별 보조 제도, 농촌의 일부 산아제한 가정 장려 및 보조 제도²⁸⁾와 서부 지역 “샤오성콰이푸(少生快富: 적게 낳아 빨리 부자되자) 프로젝트”²⁹⁾를 기본으로 하며, 한 자녀 부모 장려³⁰⁾ 등 지방정부 정책으로 뒷받침하고, 우선 혜택 정책으로 보완하는 복지 정책 시스템을 구성하였다(국가위생과산아계획위원회(国家卫生和计划委员会), 2014). 그러나 2015년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실시 이후 자율적으로 한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대한 장려혜택은 시행하지 않게 되었다.

28) http://www.gov.cn/gzdt/2006-10/17/content_415298.htm.(검색일: 2019. 2. 1.)

29) <http://www.nhfpc.gov.cn/jtfzs/s3581/201502/97f2a0c95ebc45f49eea20c075a9debc.shtml>.(검색일: 2019. 2. 1.)

30) http://www.gov.cn/banshi/2005-08/21/content_25059.htm.(검색일: 2019. 2. 1.)

표 3-4 산이제한 가정 징려 및 지원 정책과 현금 보조금

	정책 근거	예산 출처	지격 조건	징려금
산이제한 가정 특별 보조금	"전국 한 자녀의 실태로 인한 장애 가정 보조 제도 시범 방안"(2007) ¹⁾ , "산이제한 특수 취약 가정 보조 업무 개선에 관한 통지"(2013) ²⁾ , "산이제한 관련 체제 완화에 관한 의견"(2016) ³⁾	중앙 재정이 기본 기준에 따라, 상이한 비율로 동부, 중부, 서부 지역에 보조금을 제공	193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여성이 만 49세로 한 자녀만 출산하였거나 합법적으로 한 자녀를 임양하였으며, 현재 생존한 자녀가 없거나 외동 자녀가 법적으로 장애를 인정받은 경우(장애 3급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부터 전면 시행 ■ 2014년부터 한 자녀 실태로 인한 장애, 사망 가정 부부에 특별 보조금 기준이 각각 상향 조정, 도시 인당 매월 270만원, 340만원, 농촌 인당 매월 150만원, 170만원 ■ 2016년, 동등 한 자녀 실태로 인한 장애, 사망 가정 에 보조금 기준이 270만원, 340만원으로 통합 조정
농촌 일부 산이제한 가정 징려 및 보조금	"전국 농촌 일부 산이제한 가정 징려 보조 제도 관리 규범"(2006) ⁴⁾	중앙 재정이 기본 기준에 따라, 서부지역에 80%, 중부 지역에 50%를 부담, 동부 지역의 지출 시범 독려.	(1)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농업 호적 혹은 농촌 주거 호적 (2) 1973년~2001년간 산이제한 법률 범위 및 정책이 규정된 출산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3) 현재 한 자녀 생존 혹은 현재 두 자녀 생존 혹은 자녀가 사망하여 현재 무자녀인 경우 (4) 만 60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부터 전면 시행 ■ 2009년부터 인당 연간 720만원 이상, 사망 시까지 지급 ■ 만 60세 이상일 경우 징려 지원 제도의 현지 시행 시점의 실제 연령을 시지점으로 하여 지급
서부 지역 "사오성콰이푸(少生快富)·적게 낳아 빨리 부자되자" 프로젝트	"국가 인구 계획 출산 위원회, 재정부의 서부지역 산이제한 "사오성콰이푸(少生快富)·적게 낳아 빨리 부자되자" 프로젝트" 실시 방안"에 관한 통지"(2006) ⁵⁾	중앙재정과 지방 재정을 연도 예산에 포함시켜 계획, 중앙 재정이 80%, 지방 재정이 20% 부담, 지방 재정이 부담하는 예산은 성금 재정을 기반으로 함.	(1) 실시 범위: 정책 범위의 규정에 따라, 현재 보편적으로 3자녀 출산 허용이 시행되는 지역. (2) 실시 대상: 정책 범위의 규정에 따라, 3자녀를 출산할 수 있음에도 지원하여 한 자녀를 적게 낳고, 각 성(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 기적으로 유효한 피임 조치를 취한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네이멍구, 하이난, 쓰촨, 윈난, 간쑤, 칭하이, 닝샤, 신장 등 8개 성(구)에 전면 시행 ■ 지원 참여 신청자,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에 부부당 최소 3,000위안의 징려금을 1회 지급

표 3-4 계속

	정책 근거	예산 출처	지적 조건	장려금
한 자녀 부모 장려	"중국 인구와 신아제인 조례" (2002) ⁶⁾	부모 근무 사업체	〈한자녀 부모 경영중〉을 획득한 부모로, 국가와 성, 자치구, 직할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한자녀부 모 장려혜택을 누릴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역별 장려금액과 장려 기간이 상이함. ■ 베이징은 자녀 만 18세까지 매월 10위안, 장쑤는 자녀 만 14세까지 매월 20위안⁷⁾

자료: 1) <http://www.nhffc.gov.cn/zwgk/wtwj/201305/9cc5459a79db40b1b48df6618be985a8.shtml> (검색일: 2019. 2. 1.)
 2) <http://www.nhffc.gov.cn/jfzs/s3581/201312/20668b4e214e4a5ea2016417843d7500.shtml> (검색일: 2019. 2. 1.)
 3) http://www.mof.gov.cn/zhengwuxinxi/caizhengwengao/wg2016/wg201605/201609/t20160930_2431235.html (검색일: 2019. 2. 1.)
 4) http://www.gov.cn/gzdt/2006-10/17/content_415298.htm (검색일: 2019. 2. 1.)
 5) <http://www.nhffc.gov.cn/jfzs/s3581/201502/9772a0c95abc45f49eea20c075a9debc.shtml> (검색일: 2019. 2. 1.)
 6) http://www.gov.cn/banshi/2005-08/21/content_25059.htm (검색일: 2019. 2. 1.)
 7) 베이징: http://www.bjrd.gov.cn/tzgg/201603/t20160325_161814.html (검색일: 2019. 2. 1.) / 장쑤: <http://www.wjsjsw.gov.cn/gjqtsg/20180525/21116.html> (검색일: 2019. 2. 1.)

2) 출산 보험(生育保險)

중국의 현 출산보험(生育保險)제도는 2가지 모델이 공존한다.

첫째, 여성 근로자의 소재 근무기관에서 여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 급여와 출산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델은 점차 출산 보험 모델로 대체되고 있다.

둘째, 출산 보험이다. 2011년 발표된 「사회보험법」에 따르면, 모든 국가 기관, 기업, 사업단위,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 및 기타 사회 단체 등 각 유형의 고용 사업체 및 남성 근로자를 포함한 해당 근로자는 모두 반드시 출산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 사업체는 해당 사업체 급여총액의 일정 비율(0.5%미만)을 출산 보험금으로 납부하며 근로자 개인이 납부하지 않는다. 출산보험금은 출산보조금과 의료보조금을 지급한다. 근로자의 출산이 정책에 부합하고 해당 사업체가 출산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충분한 금액의 출산보험금을 만12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납부하였다면 의료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함께 출산 휴가를 받는다면 출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출산 보조금은 근로자의 고용 사업체에서의 전년도 월평균 급여를 근거로 산출하여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다.

3) 아동 지원금

중국은 보편적 복지제도 성격의 아동 지원금은 없다. 그러나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생활보조, 학비보조, 의무교육단계 학생에 대한 각종 비용 면제가 있다. 또한 일부 지방정부는 현금보조금을 지원하는 곳도 있다.

우선 빈곤취약계층 아동에게 기초적인 생활비를 보조하는 생활보조가 있다. 생활보조는 「민정부, 적정수준의 선별복지형 아동 복지제도 건설

시범 업무에 관한 통지(民政部关于开展适度普惠型儿童福利制度建设试点工作
工作的通知, 2013)」³¹⁾ 및 「적정수준의 선별복지형 아동 복지제도 건설
심화 시범 업무(关于进一步开展适度普惠型儿童福利制度建设试点工作,
2014)」³²⁾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방 각급 재정 예산을 사용한다. 보조금
은 각 지역 기준이 상이하며, 모두 고아 기초 생활의 비율 혹은 최저 생
활 보장비의 기준에 따라 제정. 그 중 고아 외의 취약계층 아동은 충칭시
의 기준이 비교적 높으며, 인당 매월 600위안이다.

취학전 교육보조는 「취학 전 교육 보조 제도 수립에 관한 의견(关于建
立学前教育资助制度的意见, 2011)」³³⁾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방 선행,
중앙 보조”의 원칙으로 시행된다. 중앙 재정은 지방에서 발표한 지원 정
책, 비용 투입 및 실시 효과 등의 요소에 따라 장려 및 보조금으로 지급
한다. 2012년 10월까지, 전국 27개 성, 시, 단독경제계획 시행도시에서
정식으로 시행하였다. 이용자격조건은 현금 이상의 교육 행정 부서의 인
가를 받아 설립된 복지형 유아원에 재학 중인 가정 경제 취약 아동, 고아
및 장애 아동이다. 보조금은 각 지역의 기준이 상이하다.

다음 도농 의무교육 단계 학생에 각종 비용 면제하는 제도³⁴⁾가 있다.
이는 「도농 의무교육 보조 경비 관리 방법(城乡义务教育补助经费管理办
法, 2016)」에 근거한다. 도농 의무 교육 학생(민간 학교 학생 포함)에 학
비 및 잡비 면제, 교과서 무료 제공, 가정 경제가 취약한 기숙사생에 생
활비를 보조하며, 도농 의무교육 학교(민간 학교 포함)는 학생 공용 경비의

31) <http://www.mca.gov.cn/article/xw/tzgg/201306/20130615478862.shtml>.(검색일: 2019. 2. 1.)

32) http://mzt.fujian.gov.cn/wsbs/tsrqkstd/etfl/etfl/201411/t20141119_833324.htm.(검색일: 2019. 2. 1.)

33) http://www.moe.gov.cn/jyb_xxgk/moe_1777/moe_1779/201308/t20130807_155306.html.(검색일:
2019. 2. 1.)

34) http://www.mof.gov.cn/gp/xxgkml/kjs/201611/t20161130_2511990.html

기본 정액을 기준으로 공용 경비를 지원한다.

또 농촌 의무 교육 단계 학생 학비 및 잡비 면제, 기숙사 생활비 보조 제도³⁵⁾가 있다. 이 제도는 2006년 농촌 초중학교 봄학기부터 시작하였다. 학비 및 잡비 면제 자금은 중앙과 지방이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서부 지역은 8:2, 중부 지역은 6:4, 동부 지역은 성에 따라 확정한다. 교과서 무료 배부 자금은 중부 및 서부 지역은 중앙에서 전액 부담하며, 동부 지역은 지방에서 각자 부담하고. 기숙사생 생활비 보조 예산은 지방에서 부담한다.

그리고 일반고교 가정의 경제적 취약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 장학금³⁶⁾이 있다. 이 제도는 「일반 고교 가정 경제 취약 학생 대상 국가 보조 제도에 관한 의견(关于建立普通高中家庭经济困难学生国家资助制度的意见) (2010)」에 근거하고 있다.

35)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6/content_185157.htm

36) http://www.gov.cn/zwgk/2010-09/26/content_1709863.htm(검색일: 2019. 2. 1.)

표 3-5 취약 아동에 대한 지원금/보조금

	법적 근거	예산 출처	자격 조건	보조금
취약 계층 아동 생활 보조	<p>*민정부, 적정수준의 선별복지형 아동 복지제도 건설시범 업무에 관한 통지(民政部关于开展适度普惠型儿童福利制度建设试点工作的通知)(2013)¹⁾</p> <p>*적정수준의 선별복지형 아동 복지제도 건설 시범 업무(关于进一步开展适度普惠型儿童福利制度建设试点工作)²⁾</p>	지방 각급 재정 예산	<p>취약계층 아동은 장애아동, 중증환아, 유방아 등 세 가지 유형, 취약 가정 아동은 부모가 중증장애 혹은 중증 환자인 아동, 부모가 장기복약중이거나 강제 마약 중독 치료중인 아동, 부모 중 한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명이 기타사유로 부양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아동, 빈곤 가정 아동 등 네 가지 유형, 일부 지역은 최저생활수준,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포함</p>	<p>각 지역 기준이 상이하며, 모두 고아 기초생활의 비율 혹은 최저생활보장비의 기준에 따라 제정. 그 중 고아 외의 취약계층 아동은 중상시의 기준이 비교적 높으며, 인당 매월 600만원임.</p>
취학 전 교육 보조	<p>*취학 전 교육 보조 제도 수립에 관한 의견(关于建立学前教育资助制度的意见)(2011)³⁾</p>	<p>*"지방 선별, 중앙 보조"의 원칙, 중앙 재정은 지방에서 발표한 지원 정책, 비용 투입 및 실시 효과 등의 요소에 따라 장려 및 보조금 지급. 2012년 10월까지, 전국 27개 성, 시, 단속경제계획 시행도시에서 정식으로 현지제도 시행</p>	<p>현금 이상의 교육 행정 부서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부가형 유아원에 재학중인 가정 경제 취약 아동, 고아 및 장애 아동</p>	<p>각 지역의 기준이 상이함, 선진시 가정 경제 취약 아동과 장애아동에 학생당 매월 350 위안의 교육비 지원, 고아 및 영사의 자녀에 학생당 매월 700위안의 교육비 지원, 매년 10개월로 산정하여 계산</p>
<p>도농 의무교육 단계 학생에 각종 비용 면제</p>	<p>*도농 의무교육 보조 경비 관리 방법(城乡义务教育补助经费管理办法)(2016)⁴⁾</p>	<p>중앙 재정은 도시 학생의 무료 교과서 및 기숙사 생 생활비 보조를 2017년 분학기 부터 시행. 공용경비 보조금은 중앙과 지방이 규정된 비율에 따라 분담</p>	<p>도농 의무 교육 학생 포함에 학비 및 잡비 면제, 교과서 무료 제공, 가정 경제가 취약한 기숙사생에 생활비 보조, 도농 의무교육 학교(민간 학교 포함)는 학생 공용 경비의 기본 장애표 기준으로 공용 경비를 지원</p> <p>지방에 집중 특수 취약 지역의 혼촌 교사 생활 보조 등 정책을 중한 장려 지원에 포함시켜 시행</p>	<p>재정부와 교육부는 의무교육 개혁 발전의 실정과 재정 상황에 근거하여 제5조에서 제7조의 관련 보조, 기금 및 분배 요소를 적절히 조정, 일부 성의 도농 의무교육 보조 경비 =도농 의무교육 경비 보장 체제 자금+특수 지역 교사 급여성 보조금+학생 영양개선 계획 보조금</p>

표 3-5 계속

	법적 근거	예산 출처	자격 조건	보조금
<p>농촌 의무 교육 단계 학생 학비 및 잡비 면제, 기숙사 생활비 보조</p>	<p>*국무원의 농촌 의무교육 경비 보장 체제 개혁 심화에 관한 통지(国务院 关于深化农村义务教育经费保障机制改革的 通知)³⁾</p>	<p>학비 및 잡비 면제 지출은 중앙과 지방이 비율에 따라 분담. 서부 지역은 8:2, 중부 지역은 6:4, 동부 지역은 상에 따라 확정. 교과서 무료 배부 지출은 중부 및 서부 지역은 중앙에서 전액 부담, 동부 지역은 지방에서 각자 부담. 기숙사 생활비 보조 예산은 지방에서 부담</p>	<p>2006년 농촌 초중학교 입학기부터 시작, 연도별, 지역별로 점진적 시행</p>	<p>현재 기숙사 생활비 보조 기준은 초등학교 학생당 매년 1,000위안, 중학생 학생당 매년 1,250위안</p>
<p>일반고교 가정의 경제 취약 학생 대상 국가 장학금</p>	<p>*일반 고교 가정 경제 취약 학생 대상 국가 보조 제도에 관한 의견(关于建立普通 普通高中家庭经济困难学生国家资助制度的 意见)⁶⁾</p>	<p>국가 장학금 필요 예산은 중앙과 지방이 비율에 따라 분담. 서부 지역은 8:2, 중부 지역은 6:4, 동부 지역은 상에 따라 확정. 성 이하의 분담 비율은 자체 확정</p>	<p>일반 고교 가정 경제 취약 학생은 전체 학생에 약 20%. 류판산 지역 등 11개 특수 빈곤 지역과 티베트, 사성장구(칭하이성, 쓰촨성, 윈난성, 간쑤성, 신장 지역), 신장 톈산 이남의 2지역 1 자치구(키장구, 허토펙구, 카펫라쑤키얼커 프 자치주)의 중등 직업 학교 농촌 학생(현, 도 시 제외) 전체에 장학금 지원</p>	<p>국가 장학금 평균 지원 기준은 학생당 매년 2,000위안. 구체적인 기준은 각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1,000위안-3,000위안 범위 내에서 확정. 2-3개 등급으로 나눌 수 있음.</p>

자료: 1) <http://www.mca.gov.cn/article/xw/tzgg/201306/20130615478862.shtml>. (검색일: 2019. 2. 1.)

2) http://mzt.fujian.gov.cn/wsbw/tsyqkxstd/etf/etf/201411/20141119_8333324.htm. (검색일: 2019. 2. 1.)

3) http://www.moe.gov.cn/jyb_xxgk/moe_1777/moe_1779/201308/t20130807_155306.html. (검색일: 2019. 2. 1.)

4) http://www.mof.gov.cn/gp/xxgkml/kjs/201611/20161130_2511990.html. (검색일: 2019. 2. 1.)

5)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6/content_185157.htm. (검색일: 2019. 2. 1.)

6) http://www.gov.cn/zwqk/2010-09/26/content_1708663.htm. (검색일: 2019. 2. 1.)

4) 휴가 정책

중국의 부모 복지정책은 주로 출산 휴가, 수유 휴가와 임신 기간 중 특수 업무 보호에 집중되어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 특별 규정(女职工劳动保护特别规定, 2012)”,³⁷⁾ “여성 근로자 금기 노동 범위의 규정(女职工禁忌劳动范围的规定, 1990)”,³⁸⁾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 1994)”,³⁹⁾ “아동 근로자 사용 금지 규정(禁止使用童工规定, 2002)”,⁴⁰⁾ “최저임금 규정(最低工资规定, 2003)”,⁴¹⁾과 “중화인민공화국 취업 촉진법(中华人民共和国就业促进法, 2008)”,⁴²⁾ 등 문건에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출산휴가 관련이다. 2012년 발표된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 특별 규정(女职工劳动保护特别规定)”에 따르면, 중국의 법정 출산휴가는 98일이며, 출산 전 15일간 쉴 수 있다⁴³⁾. 모든 국가 기관, 기업 단위 및 사회 기관의 여성 근로자는 모두 출산 휴가를 누릴 권리가 있다.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출산 보조금을 받는다. 출산 보험 기가입자의 경우, 고용 사업체의 전해 연도 직원 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출산 보험 기금에서 지급하며, 출산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여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 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고용 사업체에서 지급한다.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실시

37) http://www.gov.cn/zwgk/2012-05/07/content_2131567.htm.(검색일: 2019. 2. 1.)

38) <http://www.china.com.cn/chinese/funv/230997.htm>.(검색일: 2019. 2. 1.)

39) http://www.npc.gov.cn/wxzl/gongbao/2000-12/05/content_5004622.htm.(검색일: 2019. 2. 1.)

40) http://old.moe.gov.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moe_620/200408/1612.html.(검색일: 2019. 2. 1.)

41) http://www.mohrss.gov.cn/SYrlzyshbzb/zcfg/flfg/gz/201705/t20170522_271193.html.(검색일: 2019. 2. 1.)

42) http://www.gov.cn/flfg/2007-08/31/content_732597.htm.(검색일: 2019. 2. 1.)

43) http://www.gov.cn/zwgk/2012-05/07/content_2131567.htm.(검색일: 2019. 2. 1.)

후, 전국 31개 성, 구, 시에서는 출산 휴가를 모두 연장하였으며, 출산휴가의 계산 방법을 “국가 규정 휴가기간 98일+출산 장려 휴가”로 조정하여 계산한다. 출산 장려 휴가는 30일에서 3개월까지로 각 성(省)에 따라 상이하며,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는 128일에서 190일까지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가장 긴 곳인 티베트 지역은 1년까지 연장하였다.⁴⁴⁾

중국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정 배우자 출산 휴가 규정이 없다. 다만 상하이, 베이징, 광둥 등 26개 성, 시에서 3~30일까지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제공하는데, 대부분 “인구와 산아제한 조례”를 법적 근거로 하며, 만산에 대한 일종의 장려책으로 만산 간호 휴가로 불린다. “인구와 산아제한 조례”에 따르면, 기혼 여성 중 만 24세 이후 첫 자녀를 출산한 경우를 만산으로 규정한다. 간호 휴가는 근무시간 혹은 출산 휴가와 동일하게 간주되며, 급여, 장려금도 동일하게 지급한다.⁴⁵⁾

중국에는 또한 육아 휴직이 없다. 아이가 만 1세 미만의 영아일 경우, 어머니는 매일 1시간의 수유 시간을 갖는다. 각 지역에서 반포된 “인구와 산아제한 조례”에 따르면 만혼, 만산의 근로자는 모두 일정한 장려 휴가를 가지며 적게는 15일, 많게는 1년이지만 대부분 3개월 정도이다. 이 휴가는 수유 휴가 혹은 육아 휴가로 불린다. 일부 지역은 현지 실정에 따라 장려 휴가 기간의 육아 보조금 역시 출산 보험 범위에 포함시킨다. 장수(江蘇)성은 별도로 부부에게 5일간 육아 휴가를 제공한다.

44) <http://www.bjnews.com.cn/news/2017/07/31/452468.html>. (검색일: 2019. 2. 1.)

《31省份延长产假西藏最长达一年|政解》, 新京报, 2017-07-31, 李丹丹

45) 각 지방정부 〈人口与计划生育条例〉 참고

5) 보육지원 서비스

중국은 현재까지 독립적이고 성문화된, 전문적으로 아동 조기 발달을 대상으로 한 가족 정책이 없다. 기타 정책의 문건에서 관련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련 정책은 65항 정도(2008년말 기준)에 불과하다. 연구자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은 절반 이상은 아동의 건강, 특히 확실히 아동의 발달 초기에 적용되는 정책이며, 13.6%만이 아동 교육에 관한 것이다(徐浙宁, 2009). 이 소량의 정책은 또 기본적으로 모두 유아원 관리에 관한 것으로, 진정한 아동 보육과 취학 전 교육에 관한 내용은 없다.

〈교육법〉에서는 취학 전 교육 역시 중국 기본 교육의 구성 요소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의 취학 전 교육은 중국 교육 중 가장 투자가 적으며, 중국 교육 시스템 전체 중 가장 취약한 단계이다(杜鳳蓮, 2008). 따라서 중국의 취학 전 교육 시스템에서는 시장화 경향이 뚜렷이 드러나며, 유아원의 입학난은 보편적인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 발표된 「국가 중장기 교육 개혁과 발전 계획 강요(国家中长期教育改革和发展规划纲要, 2010~2020년)」⁴⁶⁾에서는 정부주도, 사회 참여, 국공립 및 사립의 병행 발전 체제를 제시하였으며, 농촌 공립 유아원 시스템의 중점 발전을 계획하였다. 2015년까지 취학 3년 전 유아원 입학률 62.0%, 취학 1년전 유아원 입학률 90.0%를 목표로 하고, 2020년까지 각각 75.0%, 95.0% 달성을 목표로 한다.

국무원은 같은 해 “현재 취학 전 교육 발전에 관한 몇 가지 의견(关于当前发展学前教育的若干意见)”⁴⁷⁾을 발표하여, 지방 정부에서 현지 취학

46) http://www.gov.cn/jrzq/2010-07/29/content_1667143.htm.(검색일: 2019. 2. 1.)

전 교육의 주요 의무를 부담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국공립 유아원을 역점 발전시키고, 사회적 역량을 동원하여 유아원을 설립하여 도시 내 커뮤니티에 완비된 유아원을 만들고, 농촌 지역에 유아원을 공공 서비스 시설의 한 부분으로 하여 건설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급 정부에서 취학 전 교육 경비에 투자를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2011년, 교육부와 재정부는 공동으로 “취학 전 교육 발전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에 관한 통지(关于加大财政投入支持学前教育发展的通知)”⁴⁸⁾를 발표하여, 취학 전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며 지방 재정을 주로 하고 중앙에서 장려금과 보조금의 형식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종합 장려금 및 보조금을 활용한 민간 유아원 지원과 취약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취학 전 교육 보조금 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 후 교육부와 재정부는 “중앙 재정의 도시 취학 전 교육 발전 장려 및 보조 자금 관리 잠정 시행 방법(中央财政扶持城市学前教育发展奖补资金管理暂行办法, 2011)”⁴⁹⁾을 발표하여, 구체적인 장려 및 보조 방법을 규정하였다.

국무원은 각 지역에서 동시에 “취학 전 교육 3년 행동 계획(学前教育三年行动计划)”⁵⁰⁾을 제정 및 시행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각 지역 경제 사회 발전 상황과 아동의 수요에 따라 각 지역의 취학 전 교육 발전 계획을 제정하였다. 또한, 정부는 차례로 “유아원 학비 관리 잠정 시행 방법(幼儿园收费管理暂行办法, 2011)”⁵¹⁾, “3~6세 아동 학습과 발전 지침(3—6

47) http://www.gov.cn/zwgk/2010-11/24/content_1752377.htm.(검색일: 2019. 2. 1.)

48) http://jkw.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109/t20110928_597060.html.(검색일: 2019. 2. 1.)

49) http://jyt.jiangsu.gov.cn/art/2012/5/16/art_37933_3192597.html.(검색일: 2019. 2. 1.)

50) <http://old.moe.gov.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s6811/201209/141495.html>.(검색일: 2019. 2. 1.)

51) http://www.ndrc.gov.cn/zcfb/zcfbtz/201201/t20120105_455074.html.(검색일: 2019. 2. 1.)

岁儿童学习与发展指南, 2012)”⁵²⁾를 발표하였으며, 교육부에서는 “유아원 업무 규범(幼儿园工作规程, 2013)”⁵³⁾, “유아원 설립 기준(幼儿园建设标准, 2010)”⁵⁴⁾, “유아원 교직원 자격 기준(幼儿园教职工配备标准, 2013)”⁵⁵⁾ 등을 개정하여 유아원의 수준과 보육 및 교육 수준을 보장하였으며, 유아원 설립 운영에 관한 진입 제도를 완비했다.

2010년 이후, 취학 전 교육은 확실히 더 많은 증시를 받게 되었으며, 각급 재정 역시 취학 전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으나, 이는 모두 3~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공공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0~3세 유아의 경우 “국가 중장기 교육 개혁과 발전 계획 강요(国家中长期教育改革和发展规划纲要, 2010~2020년)”⁵⁶⁾에서 “0~3세 영유아의 교육을 중시한다”라는 한 줄만 언급되었을 뿐이다. 0~3세의 영유아의 경우, 국가 차원이나 지방 정부 차원 모두 관련 지원 정책이 없으며, 해당 연령대의 유아의 보육은 모친 혹은 친족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거나, 시장에서 관련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방과 후 돌봄은 전국 규모의 제도적 보장이나 정책 지원이 부족하며, 일부 지방정부에서만 관련 법규를 발표하였다.

방과 후 돌봄과 관련하여, 2017년 교육부 판공청은 “초중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做好中小学生学习课后服务工作的指导意见)”⁵⁷⁾을 발표하여, 처음으로 부서 위원회 문건 형식으로 보육 업계에 직

52) http://www.moe.gov.cn/srcsite/A06/s3327/201210/t20121009_143254.html.(검색일: 2019. 2. 1.)
 53) http://www.moe.gov.cn/srcsite/A02/s5911/moe_621/201602/t20160229_231184.html.(검색일: 2019. 2. 1.)
 54) http://www.mohurd.gov.cn/wjfb/201704/t20170413_231464.html.(검색일: 2019. 2. 1.)
 55) http://www.gov.cn/zwgk/2013-01/23/content_2318295.htm.(검색일: 2019. 2. 1.)
 56) http://www.gov.cn/jrzq/2010-07/29/content_1667143.htm.(검색일: 2019. 2. 1.)
 57) http://www.moe.gov.cn/srcsite/A06/s3325/201703/t20170304_298203.html.(검색일: 2019. 2. 1.)

접적인 가이드와 규범을 제시하였다. 문건에서는 초등학생 방과 후 서비스와 관련해 학교가 주요 연결 역할을 하며, 초등학교에서의 관리, 인력, 장소, 자원 등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책임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것을 요구하였다. 여건은 안되지만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확실히 필요할 경우, 교육 행정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학교, 커뮤니티, 교외 활동센터 등과 협의하여 방과 후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정책이 이제 막 실시되어 효과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

3. 양국의 정책 동향 비교

한국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시행과 함께 인구정책을 도입하였다. 당시의 인구정책의 핵심은 출산 억제 정책이었다. 정부주도의 강력한 출산 억제정책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민의 능동적인 참여로 20여년 만인 1983년에 합계출산율 2.1명 이하의 인구대체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으로 낮추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이 1.6~1.7명으로 충분히 낮아진 1980년대 중반 이후에도 출산 억제정책은 지속되었다. 이후 2001년부터는 합계출산율이 1.3 미만으로 낮아졌고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었다, 2004년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한다고 선언하였으며(김두섭, 2007),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부터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다.

중국은 출산장려책-출산억제정책-엄격한 산아계획을 거쳐 2015년에 한자녀정책을 폐기하고 전면적 두 자녀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2015년

12월 31일 통과된 “중공중앙국무원,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의 개혁 및 산아제한 서비스 관리 완비에 관한 결정(中共中央国务院关于实施全面两孩政策改革完善计划生育服务管理的决定)”에 따르면 중국 산아제한의 정책적 기조는 출산의 완전개방으로 발전하거나 출산지원의 단계로 발전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며 출산 통제에서 출산 계획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국가주도의 강력한 인구억제정책을 추진하였다는 점은 동일하다.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한국은 2005년부터 범정부차원에서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중국은 2015년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출산을 완전 개방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즉, 한국은 중국과 비교하여 약 10여년 정도 앞서 출생 장려로 전환하고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해왔고 그 결과 한국에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을 급격하게 발전해왔다. 임신출산 지원, 무상보육 및 보육서비스 확대 등 보육관련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도입 및 지속적 개선 등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지원정책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명시적으로 출산 장려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지는 않고 있다. 중국의 자녀양육 지원 정책은 복지정책으로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있다. 그리고 출산휴가제도는 있으나 육아휴직제도는 없다. 또한 국가가 제공하는 보육 지원서비스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자녀보육은 거의 조부모 돌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중국에서 노부모들이 연금수혜자로 손자녀 돌봄을 지원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부모세대가 조부모가 될 경우 지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손자녀돌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제4장 서울과 베이징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 비교

1. 조사개요
2. 응답자 특성
3. 결혼 및 자녀 가치관 비교
4. 본인의 결혼 및 출산 의향 비교
5. 출산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6. 요약 및 시사점



본 장은 한국과 중국의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가치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장이다. 한국과 중국 모두 최근 만혼과 비혼이 증가하고 있다. 만혼과 비혼 현상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연결되어 있다. 그 결과 한국사회에서 청년 세대는 남녀 모두 결혼을 필수로 생각하는 경향이 줄어들고 있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더욱 그러하다. 중국도 한국과 유사하게 초혼연령이 상승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만혼 및 비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10여년 이상 국정핵심과제로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정책을 하고 있음에도 출산율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경우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없는 현실에서 결혼 및 출산 의향이 있을지, 한국과 비교하여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본 설문조사는 예산 등의 제약으로 서울과 베이징 거주 미혼여성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향후 종합적인 진단을 위하여 남성 및 기혼집단까지 포괄하여 비교 연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1. 조사개요

가. 조사 목적 및 조사 대상

한국과 중국의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을 비교분석하고자 조사를 기획하였다. 그러나 중국 전역을 조사하는 것을 예산 제약 및 조사 여건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조사 지역을 양국의 수도인 서울과 베이징으로 제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서울과 베이징에 거주하는

25세~34세의 미혼여성이다. 조사대상자 연령을 25세~34세로 한 것은 평균초혼연령을 기준으로 대략 ± 5 세를 하였다. 중국의 평균 초혼연령은 한국보다 낮으나 대도시 지역은 한국의 전체 초혼연령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국의 조사대상 연령 범위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표본은 국가별로 각각 400명이며, 조사결과 최종 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는 한국 411명, 중국 413명이다.

나. 조사 내용

조사 내용은 다음 <표 4-1>과 같다.

첫째,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다. 구체적으로 결혼 필수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 걱정하다고 생각하는 결혼 연령과 첫 자녀 출산 연령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결혼비용과 관련하여 결혼식비용, 신혼집 마련, 신혼살림마련, 신혼차량구입 등 세부 항목별로 남성측과 여성측이 동등하게 분담하는데 대한 동의 정도와 세부 항목에 따라 남성측과 여성측의 분담 비중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그 외 결혼과 관련하여 현재 결혼식 문화의 간소한 수준에 대한 의견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비혼이나 동거, 비혼출산, 무자녀 등 결혼과 가족형태 관련 항목과 자녀 돌봄, 경제적 부양, 가사 분담 등 성역할 관련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둘째, 자녀에 대한 일반적 가치와 태도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용, 이상적인 자녀수, 자녀가치관의 세부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 부모의 자녀 부양 책임 정도에 대한 동의 정도 등이다.

셋째, 응답자 본인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였다. 구체적

으로 현재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 앞으로 결혼의향이 있는지 여부와 그 이유, 결혼의향이 있는 경우 계획하고 있는 연령에 대한 생각, 결혼 후 희망 자녀수, 자녀 중 아들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자녀를 1명 이하만 희망하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마지막으로 결혼과 관련하여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 마련 비용에 대하여 부모의 지원에 대한 기대를 조사하였다.

넷째,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교육수준, 직업, 월평균 소득, 부모 동거 여부, 주거점유형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교육수준은 중국과 한국의 학제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범주를 달리하여 조사하고 양국의 교육수준을 비교하여 재범주화하였다. 중국의 경우 북경 호구 보유 여부 및 미보유한 경우 북경 거주 기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다음 부모 동거 여부와 주택 점유 형태를 알아보고 부모의 주거비 지원 여부를 파악하였다. 또 자가/전세인 경우 주거비 대출 여부 및 부담 금액을, 월세인 경우 월세 금액을 조사하였다.

여섯째, 부모 및 가족관련사항이다.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소득과 형제자매 여부 및 수를 조사하였다.

표 4-1 조사 항목 및 측정

영역	항목	측정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일반적 인식	결혼필수에 대한 의견	범주형 변수
	적정 결혼 연령	연속변수
	첫 자녀 출산 연령	연속변수
	결혼비용분담(4개항목)	4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함
	결혼비용 성별 분담 비중	연속변수
	결혼식 문화에 대한 의견	범주형 변수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의견	4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함
	성역할 인식(3개항목)	4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함
자녀에 대한 일반적 가치와 태도	자녀 필수에 대한 의견	범주형 변수
	이상적인 자녀수	연속변수
	자녀가치관(5개항목)	4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함
	부모책임의견(5개항목)	4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함
본인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	현재 결혼하지 않은이유	범주형 변수
	결혼의향 및 그 사유	범주형 변수
	결혼의향 있는 경우 계획 연령	범주형 응답
	결혼 후 희망 자녀수	연속변수
	자녀 중 아들 필요여부	범주형 변수
	자녀를 1명 이하만 희망하는 이유	범주형 변수
	부모의 결혼 및 신혼집 비용 지원 기대	범주형 변수
일반적 특성	연령	연속변수
	교육수준	(한국)고졸이하/전문대졸/대졸/대학원이상 (중국)무학/초등졸업/초중졸업/중등전문학교졸업/ 고중(高中)졸업/대학전문학교(大专)졸업/ 대학졸업/연구생이상졸업
	직업	고위경영진/전문직/사무직/생산직 및 서비스직/공무원 공직관련/기타/미취업
	월평균소득	연속변수
	부모동거여부	동거/비동거
	주택점유형태	(한국)자가/전세/월세/기타 (중국)자가/임대/기숙사/기타
	북경호구 보유여부 및 미보유자 북경 거주기간	범주형변수/연속변수(중국응답지만 해당)
	부모 및 가족관련 사항	연속변수
	연속변수	응답자 본인과 동일함
	연속변수	연속변수
	연속변수	연속변수

다. 표본 설계

1) 모집단 정의

본 실태조사를 위한 목표 모집단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 및 중국의 수도(서울, 베이징)에 거주하는 만 25세~34세 미혼여성으로 정의된다. 조사 모집단은 온라인 조사 특성 상 본 실태조사를 수행한 한국과 중국의 조사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온라인패널로 제한된다.

2) 표본크기 결정

표본크기는 가용 예산과 조사방법, 조사 소요기간 등의 조사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고, 표본오차의 수준을 검토하여 결정해야한다. 본 실태조사에서는 가용 예산의 제약으로 인하여 한국과 중국의 표본크기를 각각 400명으로 결정하였다. 한국과 중국 각각 400명 조사 시 기대되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4.9\%p$ 이다.

3) 층화

모집단 층화는 본 실태조사의 표본크기가 크지 않고, 온라인 조사 특성을 고려, 효율적인 층화를 위해 한국의 경우 서울 25개 구를 지리적 인접성을 고려하여 4개 권역으로 층화하고, 연령 구분을 만 25세~29세, 만 30세~34세의 2개 계층으로 층화하였다. 중국의 경우 베이징은 16개 구로 구성되어 있으나 만 25세~34세 여성 인구수에 대한 모집단 정보가 존재하지 않고, 중국 현지 조사여건상 구별 할당조사가 어려워 연령층만 한국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다음 <표 4-2>는 한국 서울의 층별 모집단 현황을 나타낸 것이며, 중국 베이징의 모집단 현황은 정보가 없어 제시하지 않았다.

표 4-2 한국 서울의 층별 모집단 현황

권역	연령	여성 미혼 인구(명)	구성비(%)
서울(전체)		511,304	100.0
북서부	25세~29세	53,353	10.4
	30세~34세	35,435	6.9
북동부	25세~29세	91,630	17.9
	30세~34세	57,235	11.2
남서부	25세~29세	98,809	19.3
	30세~34세	62,780	12.3
남동부	25세~29세	65,409	12.8
	30세~34세	46,653	9.1

주: 권역 구분

- 북서부: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 북동부: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 남서부: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동작구
- 남동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자료: 통계청(2015). 2015년 인구총조사의 지역별, 연령별 전체 여성 인구 대비 미혼 여성 인구

4) 표본배분

표본배분은 서울은 각 층별로 비례배분을 적용하였으며, 배분 결과 25세~29세는 242명, 30세~34세는 158명이다. 베이징의 경우 모집단 정보 부재로 연령층별로 유의적으로 표본을 배분하였다. 단, 베이징의 경우 평균 초혼 연령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하여 만 25세~29세 300명, 만 30세~34세 100명을 배분하였다. 다음의 <표 4-3>은 한국 서울의 표본배분 결과이다.

표 4-3 한국 서울의 층별 표본배분 결과

구역	연령	표본 크기	구성비(%)
서울(전체)		400	100.0
북서부	25세-29세	42	10.5
	30세-34세	28	7.0
북동부	25세-29세	72	18.0
	30세-34세	45	11.3
남서부	25세-29세	77	19.3
	30세-34세	49	12.3
남동부	25세-29세	51	12.8
	30세-34세	36	9.0

5) 표본추출

표본추출은 각 층 내에서 표본 추출틀을 기준으로 랜덤추출을 하였으며, 무응답을 고려하여 5배수의 예비표본을 추가로 구성하여 조사를 운영하였다.

6) 모수추정

통계조사에서 가중치 부여는 표본추출에 따른 추출률의 차이와 응답률 및 모집단에 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모집단의 구조와 표본 구조를 맞춤으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추정단계에서 가중치를 이용하면 모집단에 대한 특성치인 모수에 대한 비편향 추정량을 얻을 수 있다.

본 실태조사의 가중치는 추출률의 역수를 반영하는 설계 가중치와 응답률 보정 계수를 반영하는 2개의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 가중치(w_{ijk}^s)로 활용하였으며, 이는 모집단 정보가 존재하는 한국 서울에만 해당된다. 가

중치 산출을 위한 첨자와 산출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i : 권역을 나타내는 첨자 ($i = 1$ (북서부), 2 (북동부), 3 (남서부), 4 (남동부))
- j : 연령대를 나타내는 첨자 ($j = 1$ (만 24세~29세), 2 (만 30세~34세))
- N_{ij} : i 권역, j 연령대별 모집단 크기
- N : 전체 모집단 크기
- n'_{ij} : i 권역, j 연령대의 할당된 표본크기
- n_{ijk} : i 권역, j 연령대의 실제 조사 완료된 표본크기
- n : 실제 조사 완료된 전체 표본크기
- w^s_{ij} : i 권역, j 연령대 층 내 표준화 가중치

$$w^s_{ij} = \frac{N_{ij}}{n'_{ij}} \times \frac{n'_{ij}}{n_{ij}} \times \frac{n}{N} \dots\dots\dots \text{(식 1)}$$

모수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평균 또는 비율 추정은 식 (1)로 주어진 가중치를 이용하여 다음 식 (2)로 나타낼 수 있다.

$$\hat{y} = \frac{\sum_i \sum_j \sum_k w^s_{ij} y_{ijk}}{w^s_{..}} \dots\dots\dots \text{(식 2)}$$

여기서, w^s_{ij} 는 각 층별 응답자에 부여된 가중치이고, y_{ijk} 는 각 응답 결과로 모비율 추정의 경우는 특정 속성을 갖고 있는 경우는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다.

$w_{ij}^s = \sum_i \sum_j w_{ij}^s$ 는 전체 응답자에 대한 가중치의 합계이다.

앞서 제시한 모평균 또는 모비율 추정량에 대해서 증화의 효과를 고려한 분산 추정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widehat{var}(\hat{y}) = \sum_i \sum_j \frac{n_{ij}(1-f_{ij})}{n_{ij}-1} \sum_{k=1}^{n_{ij}} (e_{ijk} - \bar{e}_{ij.})^2 \dots\dots (식 3)$$

$$e_{ijk} = w_{ijk}(y_{ijk} - \bar{y})/w_{ij.} \dots\dots\dots (식 4)$$

$$\bar{e}_{ij.} = \left(\sum_{k=1}^{n_{ij}} e_{ijk} \right) / n_{ij} \dots\dots\dots (식 5)$$

모평균 및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준오차(standard error)와 상대표준 오차(relative standard error), 95% 신뢰수준에서의 오차 한계는 다음과 같다.

$$s.e(\hat{y}) = \sqrt{\widehat{var}(\hat{y})} \dots\dots\dots (식 6)$$

$$rse(\hat{y}) = \frac{s.e(\hat{y})}{\hat{y}} \times 100(\%) \dots\dots\dots (식 7)$$

$$\text{오차의 한계} = 1.96 \times \sqrt{\widehat{var}(\hat{y})} \dots\dots\dots (식 8)$$

2. 응답자 특성

가. 일반적 특성

1) 연령 및 교육수준

연령은 서울은 25~29세 60.5%, 30~34세 39.5%이며, 베이징은 25~29세 73.6%, 30~34세 26.4%이다. 응답자 평균연령은 서울 28.9세, 베이징 28.2세이다. 교육수준은 서울과 베이징의 학제에 따라 각각 조사하고 양국의 학제를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재범주화하였다. 조사 결과 서울과 베이징 모두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졸업이 서울 73.9%, 베이징 70.2%이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서울과 베이징 모두 전문대 졸업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인 서울과 베이징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표 4-4 응답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

		(단위: 명, %)		
구분		서울	베이징	통계량
연령	25~29세	249(60.5)	304(73.6)	-
	30~34세	162(39.5)	109(26.4)	
	평균연령	28.9(2.72)	28.2(2.41)	-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24(5.8)	8(1.9)	$\chi^2=13.511^{***}$
	전문대 졸업	52(12.7)	73(17.7)	
	대학교 졸업	304(73.9)	290(70.2)	
	대학원 졸업	31(7.6)	42(10.2)	
전체		411(100.0)	413(100.0)	

주: $p^{***}<.001$

2) 경제활동 및 월평균 소득

응답자의 경제활동을 보면 서울은 취업자 81.0%, 미취업자 19.0%, 베이징 취업자 88.9%, 미취업자 11.1%로 서울 미혼여성의 미취업자 비중이 베이징보다 더 많다. 취업자 중에서 직업 분포를 보면 서울은 사무직(70.6%)이 가장 많고 다음이 전문직(16.2%)이다. 베이징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사무직(44.1%)-전문직(25.6%)의 순이다. 베이징의 경우 사무직 비율은 서울보다 낮고 전문직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서울의 미혼여성은 200~300만원미만이 51.6%이며 다음은 300~400만원미만(21.5%)이다. 베이징은 10,000위안(약 166만원) 이상이 32.2%로 가장 많고 다음이 8,000(약 132만원)~10,000위안(약 166만원)미만(26.2%)이다.

표 4-5 응답자의 경제활동상태 및 직업

(단위: 명(%))

구분	서울	베이징
미취업	78(19.0)	46(11.1)
취업	333(81.0)	367(88.9)
전문직	54(16.2)	94(25.6)
사무직	235(70.6)	162(44.1)
생산직 및 서비스직	10(3.0)	27(7.4)
공무원공직관련	8(2.4)	36(9.8)
프리랜서/자영업	22(6.6)	12(3.3)
기타	4(1.2)	36(9.8)

표 4-6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

(단위: 명, %)

국가	구분	빈도(%)
서울	200만원 미만	55(16.4)
	200~300만원 미만	172(51.6)
	300~400만원 미만	72(21.5)
	400만원 이상	35(10.5)
	전체	411(100.0)
베이징	6,000위안 미만	72(19.6)
	6,000~8,000위안 미만	81(22.1)
	8,000~10,000위안 미만	96(26.2)
	10,000위안 이상	118(32.2)
	전체	413(100.0)

3) 주거 관련

〈표 4-7〉은 서울과 베이징의 부모 동거 및 주택점유형태이다.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을 보면 서울은 60.3%이며 베이징은 52.3%으로 서울이 베이징보다 더 많다. 서울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 주택점유형태는 자가가 72.8%로 대부분이다. 서울에서 부모 비동거의 경우에는 임대대 대부분인데 전세 46.6%, 월세 44.8%이다. 베이징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93.1%가 자가이다. 베이징에서 부모와 비동거하는 경우 주택 점유형태는 자가가 53.3%로 가장 많고 다음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비싼 일반임대(27.3%)로 나타났다.

베이징의 미혼여성은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자가에서 살고, 비동거의 경우에는 절반 정도가 자가에서 살고 있다. 반면 베이징과 달리 서울의 부모 비동거 미혼여성은 대부분 임대주거로 베이징과 비교하여 서울의 미혼여성이 주거점유형태상으로 더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

표 4-7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주택점유형태

(단위: 명(%))

구분		동거	비동거	전체	
서울	자가	180(72.8)	13(8.0)	193(47.0)	
	임대	전세	43(17.3)	76(46.6)	119(29.0)
		월세	23(9.3)	73(44.8)	96(23.4)
	기타	2(0.8)	1(0.6)	3(0.7)	
	전체	248(60.3)	163(39.7)	411(100.0)	
베이징	자가	201(93.1)	105(53.3)	306(74.1)	
	임대	저가/공공임대	6(2.8)	30(15.2)	36(8.7)
		친구친척임대	3(1.4)	1(0.5)	4(1.0)
		일반임대	3(1.4)	54(27.4)	57(13.6)
	기숙사	3(1.4)	7(3.6)	1(2.4)0	
	기타	-	-	-	
전체	216(52.3)	197(47.7)	413(100.0)		

최근 한국에서는 청년 주거비 부담이 결혼 지연의 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사실상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주거를 마련할 경우 주거비를 혼자서 모두 부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부모와 비동거하면서 자가와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의 주거비 지원 여부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서울은 절반정도인 51.9%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의 경우는 24.7%만이 부모의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인다. 주거비 대출 여부에 대해서도 서울은 47.2%가 받았고, 베이징은 34.3%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서울 미혼여성이 주거비에 대하여 부모의 지원이나 대출을 받는 경우가 베이징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 비동거이면서 월세인 경우 월세 금액은 서울은 평균 47.74만원 약 50만원 정도이며, 베이징은 2,440위안(약 40만원 내외)이었다.

표 4-8 주거비 부모지원 및 주거비 대출 여부와 월세 금액

(단위: 명(%))

국가	구분	서울	베이징	통계량
주거비 부모 지원 여부 ¹⁾	받았다	84(51.9)	47(24.7)	27.515***
	받지 않았다	78(48.1)	143(75.3)	
	전체	162(100.0)	190(100.0)	
주거비 대출여부 ²⁾	받았다	42(47.2)	36(34.3)	29.886***
	받지 않았다	47(52.8)	69(65.7)	
	전체	89(100.0)	105(100.0)	
월세 평균 금액 ³⁾		47.74만원 (n=73)	2,440위안 (n=85)	-

주 1) 부모 비동거이면서 점유형태가 자가, 전세, 월세 주거인 경우 응답

2) 부모와 비동거이면서 점유형태가 자가, 전세인 경우 응답

3) 부모와 비동거이면서 점유형태가 월세인 경우 응답

4) $p^{***} < .001$

베이징 미혼여성만 대상으로 베이징 호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⁵⁸⁾. 응답자 중 78.2%가 베이징 호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 호구가 아닌 경우 베이징 거주 기간을 보면 5년 미만이 45.6%, 5년~10년 미만이 36.7%였다.

표 4-9 베이징 응답자의 베이징 호구 여부 및 베이징 거주기간

(단위: 명(%))

	구분	빈도(%)
베이징 호구 여부	있다	323(78.2)
	없다	90(21.8)
	전체	413(100.0)
베이징 거주기간	5년미만	41(45.6)
	5년-10년미만	33(36.7)
	10년이상	16(17.8)
	전체	90(100.0)

58) 중국은 호구 이전이 자유롭지 못함. 베이징 거주자 중 베이징 호구가 없는 경우도 있음.

나. 부모 및 가족관련 사항

부모 및 형제자매 여부 등 가족관련 사항을 알아보았다. 부모의 평균 연령은 베이징보다 서울이 더 많았다. 서울은 아버지 59.52세, 어머니 56.54세이며, 베이징은 아버지 55.62세, 어머니 53.99세이다.

표 4-10 부모의 평균 연령

(단위: 세(표준편차))

구분	서울	베이징
아버지	59.51(4.564) [n=362]	55.62(5.619) [n=345]
어머니	56.53(4.334) [n=404]	53.99(5.026) [n=347]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서울과 베이징에서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가장 많았다.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서울은 아버지 47.2%, 어머니 63.9%, 베이징은 아버지 64.1%, 어머니 70.6%로 나타나 서울이 베이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더 적었다. 반면 대학교 졸업의 비중은 베이징에 비해 서울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서 부모의 교육수준은 서울이 베이징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겠다.

표 4-11 부모의 교육수준

(단위: 명, %)

	아버지			어머니		
	서울	베이징	통계량	서울	베이징	통계량
고등학교 졸업이하	171(47.2)	221(64.1)	55.849***	258(63.9)	245(70.6)	29.886***
전문대 졸업	30(8.3)	55(15.9)		33(8.2)	54(15.6)	
대학교 졸업	130(35.9)	65(18.8)		102(25.2)	47(13.5)	
대학원 졸업	31(8.6)	4(1.2)		11(2.7)	1(0.3)	
전체	362(100.0)	345(100.0)		404(100.0)	347(100.0)	

주: $p^{***} < .001$

부모의 경제활동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취업자 비중이 서울이 베이징보다 더 많다. 취업자는 서울의 경우 아버지 80.1%, 어머니 50.5%인데 베이징은 아버지 68.7%, 어머니 43.2%이다. 월평균 소득은 서울의 경우 아버지 약 455만원, 어머니 약 287만원이며, 베이징은 아버지 9,417위안, 어머니 7,067위안 정도이다.

표 4-12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및 월평균소득

(단위: 명(%), 만원, 위안)

구분		서울	베이징	
경제활동 상태	아버지	취업	290(80.1)	237(68.7)
		미취업	72(19.9)	108(31.3)
		전체	362(100.0)	345(100.0)
	어머니	취업	204(50.5)	150(43.2)
		미취업	200(49.5)	197(56.8)
		전체	404(100.0)	347(100.0)
월평균 소득	아버지	455.1 [465.270] (n=290)	9,417.7 [9,394.1] (n=237)	
	어머니	287.1 [446.028] (n=204)	7,067.4 [8,180.9] (n=150)	

주: []는 표준편차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가 서울이 90.5%, 베이징은 37.5%이다. 베이징에서 형제자매가 있는 비율이 낮은 것은 중국이 1자녀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해왔기 때문이다.

표 4-13 형제자매 여부

(단위: 명(%))

구분	서울	베이징	통계량
있다	372(90.5)	155(37.5)	250.834***
없다	39(9.5)	258(62.5)	
전체	411(100.0)	413(100.0)	

주: $p^{***} < .001$

3. 결혼 및 자녀 가치관 비교

가. 결혼 관련 가치관

아래 <표 4-14>는 결혼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이다. “반드시 해야 한다”에 대하여 서울 미혼여성은 2.9%, 베이징 미혼여성은 19.4%가 동의하였으며, “하는 것이 좋다”에 대해서는 서울 16.3%, 베이징 21.5%가 동의하였다. 결혼에 대하여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비율(반드시 해야 한다+하는 것이 좋다)이 베이징(40.9%)보다 서울(19.2%)이 더 낮은 것이다⁵⁹⁾. 반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결혼을 선택사항으로 생각하는 견해인데 서울은 66.7%이고 베이징은 39.5%로 서울이 베이징보다 동의 비율이 높다. 결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견해인 “하지 않는 것이 좋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에 대해서는 서울 12.4%, 베이징 18.9%로 베이징이 서울보다 더 높다.

서울의 미혼여성은 베이징의 미혼여성과 비교하여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고, 유보적인 견해인 선택사항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베이징보다 훨씬 높다. 또한 결혼을 강력하게 부정하는 견해인 “하지 말아야 한다”는 서울(2.2%)이 베이징(7.5%)보다 더 낮았다. 서울의 미혼여성이 결혼을 강력하게 부정하는 비율이 낮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서울의 미혼여성은 결혼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고 선택적이고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59) 2018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혼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를 보면 미혼여성 전체는 “해야한다(반드시 해야한다+하는 것이 좋다)”에 대하여 22.4%가 동의함(통계청, 2018).

표 4-14 결혼 필수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서울	베이징	통계량
하지 말아야 한다	9(2.2)	31(7.5)	953535***
하지 않는 것이 좋다	42(10.2)	47(11.4)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274(66.7)	163(39.5)	
하는 것이 좋다	67(16.3)	89(21.5)	
반드시 해야 한다	12(2.9)	80(19.4)	
잘모르겠다	7(1.7)	3(0.7)	
전체	411(100.0)	413(100.0)	

주: p***(<.001

다음은 결혼과 가족생활관련 항목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것이다. 항목의 내용은 비혼, 동거, 결혼 후 무자녀, 비혼 출산, 부부중심 결혼생활 등이다.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다”에 대해 서울은 4점 척도에서 3.17점, 베이징은 2.89점으로 서울의 동의 정도가 더 높다.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와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에 대해서도 서울이 베이징보다 동의 정도가 높았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부부당사자보다 가족 간의 관계를 우선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서울의 동의 정도가 베이징보다 낮았다. 이는 베이징의 경우 결혼은 가족관계가 더 우선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도 괜찮다”에 대해서는 서울 2.19점, 베이징 2.15점으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서 서울과 베이징 미혼여성의 동의 정도가 유사했다. 한국과 중국 모두 비혼 출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경우 법적인 혼인이 아닌 경우 출생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혼 출산에 대하여 동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가족생활 관련 최근의 변화인 비혼, 비혼동거, 결혼 후 무자녀, 부부중심의 결혼생활 등에 대하여 베이징보다 서울이 동의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표 4-15 결혼과 가족형태관련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 평균비교

(단위: 점)

구분	서울 (n=411)	베이징 (n=413)	F-value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다	3.17(.771)	2.89(.867)	24.293***
결혼을 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	2.78(.857)	2.55(.961)	13.308***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자녀를 가질 필요는 없다	3.28(.733)	2.83(.862)	64.221***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도 괜찮다	2.19(.963)	2.15(.967)	0.268
결혼생활은 부부당사자보다 가족 간의 관계를 우선해야 한다	1.87(.828)	2.34(.945)	57.669***

주: $p^{***} < .001$

자녀돌봄이나 가사, 경제적 부양자 역할 등 가족 내 역할에서 남녀의 동등한 분담에 대한 동의 수준은 양국 모두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다”는 서울 3.63점, 베이징 3.31점이며,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서울 3.43점, 베이징 3.32점으로 나타났다. 가사와 집안일의 동등한 분담에 대해서도 서울 3.58점, 베이징 3.37점이었다. 서울과 베이징을 비교하면 자녀돌봄이나 가사분담의 동등한 분담에 대한 동의 수준은 서울이 베이징보다 높다. 그러나 경제적 부양에 대하여 남녀의 동등한 역할은 서울과 베이징의 동의 수준이 유사하고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4-16 가족 내 성역할에 대한 동의 정도 평균비교

(단위: 점)

구분	서울(n=411)	베이징(n=413)	F-value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다	3.63(.620)	3.31(.783)	42.335***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책임이 있다	3.43(.618)	3.32(.675)	5.807
부부는 가사나 집안일을 공평하게 분담하여야 한다	3.58(.576)	3.37(.677)	23.250***

주: $p^{***} < .001$

적정한 결혼 연령과 첫 자녀 출산 연령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베이징보다 서울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적정 결혼 연령은 서울의 경우 남성 33.5세, 여성 32.1세이며, 베이징은 남성 29.8세, 여성 27.8세이다. 첫 자녀 출산 연령은 서울은 남성 34.2세, 여성 32.6세이며, 베이징은 남성 31.2세, 여성 29.1세이다. 대체로 서울이 베이징보다 2~3세 정도 높다.

표 4-17 적정 결혼 및 적정 첫 자녀 출산 연령에 대한 평균비교

(단위: 세)

구분		서울(n=411)	베이징(n=413)	F-value
적정 결혼	남성	33.50(2.583)	29.76(3.588)	295.922***
	여성	32.10(2.896)	27.75(3.196)	418.464***
첫 자녀 출산 연령	남성	34.18(2.825)	31.23(3.590)	170.860***
	여성	32.55(3.013)	29.06(3.276)	252.846***

주: $p^{***} < .001$

결혼비용에 대한 남녀의 동등한 부담은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비용,

신혼살림살이 비용, 신혼 차량 구입 비용⁶⁰⁾으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신랑측과 신부측이 동등하게 분담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결혼식 비용에 대한 동등한 분담은 서울이 베이징보다 동의 정도가 높았다. 그러나 신혼집 마련 비용, 신혼살림살이 마련 비용의 동등한 분담에 대한 동의 정도는 서울과 베이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차량 구입 비용은 중국의 결혼문화를 고려한 조사항목으로, 동등한 분담에 대한 동의 정도가 서울과 베이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경향의 유사함이 양국의 결혼문화 차이와 유관한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표 4-18 결혼비용의 동등한 분담에 대한 동의 정도 평균비교

(단위: 점)

구분	서울 (n=411)	베이징 (n=413)	F-value
결혼식 비용은 신랑측(신랑과 부모 포함)과 신부측(신부와 부모 포함)이 동등하게 분담해야 한다	3.06(.689)	2.85(.876)	15.094***
신혼집 마련 비용은 신랑측(신랑과 부모 포함)과 신부측(신부와 부모 포함)이 동등하게 분담해야 한다	2.83(.808)	2.80(.873)	0.319
신혼살림살이 비용은 신랑측(신랑과 부모 포함)과 신부측(신부와 부모 포함)이 동등하게 분담해야 한다	2.98(.717)	2.92(.768)	1.362
차량을 구입한다면 신랑측(신랑과 부모 포함)과 신부측(신부와 부모 포함)이 동등하게 분담해야 한다	2.82(.810)	2.82(.823)	0.000

주: p***<.001

60) 차량 구입 비용은 중국의 결혼문화를 고려한 문항임. 한국의 결혼문화에서 차량구입은 보편적이지 않음. 이러한 양국의 결혼문화 차이가 평균값의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결과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으나 검증하기 어려운 추정임을 밝힘.

항목별 결혼비용에 대하여 남성측(부모 포함)과 여성측(부모 포함)의 분담 비중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서울은 결혼식 비용에 남성 50.6%, 여성 49.4%로 거의 남녀 분담 비중이 거의 유사하다. 신혼집 마련은 남성측 59.9%, 여성측 40.1%로 남성측 분담 비중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 신혼살림살이 마련 비용은 남성측 45.6%, 여성측 54.4%로 여성측 분담 비중이 높다. 차량구입 비용은 남성측 58.1%, 여성측 41.9%로 남성측이 더 높다. 베이징은 4개 항목 모두 남성측 분담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또한 서울과 비교할 때 베이징은 여성측보다 남성측 분담 비중을 더 높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베이징에서는 결혼할 때 남성측이 더 많이 분담할 것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4-19 성별 결혼비용 분담 비중 평균비교

(단위: %)

	구분	서울 (n=411)	베이징 (n=413)	F-value
남성측 비중	결혼식 비용	50.61(10.163)	69.61(20.258)	298.312***
	신혼집 마련	59.87(14.281)	68.82(20.311)	53.545***
	신혼살림살이	45.61(15.433)	59.49(21.896)	110.492***
	차량구입	58.08(16.236)	63.16(24.154)	12.5742***
여성측 비중	결혼식 비용	49.39(10.163)	30.09(20.258)	298.312***
	신혼집 마련	40.13(14.281)	31.18(20.311)	53.545***
	신혼살림살이	54.39(15.433)	40.51(21.896)	110.492***
	차량구입	41.92(16.236)	36.84(24.154)	12.5742***

주: $p^{***} < .001$

나. 자녀 관련 가치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보면 “꼭 있어야 한다”에 대하여 서울은 5.8%만이 동의하였다⁶¹⁾. 반면 베이징은 30.3%가 동의하여 차이를 보인다.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에 대해서는 서울은 59.9%, 베이징은 31.7%가 동의하고 있다. 이를 보면 서울의 미혼여성은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생각을 하는 비중이 높고 베이징 미혼여성은 자녀가 있는 게 더 낫거나,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더 높다.

표 4-20 자녀 필수에 대한 의견

구분	(단위: 명(%))		
	서울	베이징	검정통계량 (χ^2)
없어도 무관하다	246(59.9)	131(31.7)	106.450***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125(30.4)	130(31.5)	
꼭 있어야 한다	24(5.8)	125(30.3)	
잘모르겠다	16(3.9)	27(6.5)	
전체	411(100.0)	413(100.0)	

주: $p^{***} < .001$

자녀양육의 가치는 4개 항목에 대하여 동의 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다”에 대해서 서울 2.97점, 베이징 3.25점으로 서울 미혼여성의 동의 정도가 베이징 미혼여성보

61)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의하면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에 대해 미혼여성은 28.4%만이 동의하고 있어(이삼식 외, 2015: 100) 본 조사 결과와 차이를 보임. 단, 여기서 미혼여성은 15~44세로 본 조사와 연령이 다름.

다 낮다. “노후 경제적 부양을 위해서 자녀가 필요하다”항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베이징보다 서울의 미혼여성이 동의정도가 낮다. 그러나 “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든 일이다”,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 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등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나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는 서울의 미혼여성의 베이징보다 동의 정도가 높았다. 이는 서울의 미혼여성은 베이징의 미혼여성보다 자녀 양육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21 자녀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평균비교

(단위: 점)

구분	서울 (n=411)	베이징 (n=413)	F-value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2.97(.677)	3.25(.737)	32.498***
노후 경제적 부양을 위해서 자녀가 필요하다	2.04(.812)	2.58(.874)	84.291***
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든 일이다	3.57(.599)	3.30(.704)	35.576***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 있다	3.45(.616)	3.17(.752)	32.581***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3.57(.556)	3.08(.772)	111.170***

주: $p^{***} < .001$

부모의 부양 책임 범위를 세분화하여 대학교육비, 취업전 경제적 지원,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비용, 결혼 후 지원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대학교육비나 취업이전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항목에 대하여 동의 정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 높는데 이러한 경향은 서울과 베이징 모두 동일하다. 서울과 베이징을 비교하면 모든 항목에 있

어서 서울보다 베이징이 부모의 책임에 대하여 동의 정도가 더 높았다. 서울의 경우 결혼비용, 신혼집마련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평균 각각 2.33점, 2.23점이며, 결혼 후 지원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2.02점이다. 결혼한 이후 경제적 도움과 손자녀 돌봄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서울의 미혼 여성은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데 베이징의 미혼여성들은 2.40으로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동의 정도가 높다. 결혼 후 손자녀 돌봄 지원은 중국의 경우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다. 종합하면 대체로 베이징의 미혼여성들은 자녀 부양에 대하여 부모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서울의 미혼여성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22 부모의 자녀부양 책임에 대한 동의 정도 평균비교

(단위: 점)

구분	서울 (n=411)	베이징 (n=413)	F-value
부모는 자녀의 대학 교육비를 책임져야 한다	2.90(.719)	3.05(.761)	9.083*
부모는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2.67(.803)	2.83(.804)	7.823*
부모는 자녀의 결혼식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2.33(.769)	2.66(.778)	37.551***
부모는 자녀의 신혼집 마련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2.23(.773)	2.62(.874)	46.249***
부모는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돌봐줄 책임이 있다(경제적 도움, 손자녀돌보기 등)	2.02(.758)	2.40(.894)	42.731***

주: p***<.001; p*<.05

4. 본인의 결혼 및 출산 의향 비교

가. 결혼 관련

현재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1순위와 2순위로 2개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아래 <표 4-23>는 1순위와 2순위를 중복응답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서울과 베이징 모두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이므로(21.1%)”, “결혼제도가 남자집안 중심이기 때문에(18.0%)”,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17.4%)”, “결혼하는데 드는 비용이 마련되지 않아서(17.2%)”의 순이다. 즉, 서울의 미혼여성은 결혼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결혼제도의 가부장성, 일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며 결혼비용 문제는 5번째 순서에 있다.

한편 베이징은 “결혼 후 생활비 지출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서(20.8%)”, “결혼생활과 직장일을 동시에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19.1%)”, “나의 여가문화생활에 지장있을까봐(15.3%)”,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14.8%)”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용문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대한 걱정이 순위가 높고, 개인 생활이나 일 우선은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았다. 특히 결혼제도가 남자 집단 중심이라는 결혼제도의 가부장성 관련 항목은 서울은 18.0%인 반면 베이징은 3.9%에 불과하여 차이가 있고 서울의 미혼여성들이 결혼하지 않는 사유 중 세 번째로 비중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베이징의 경우에는 경제적 문제나 일·가정 양립 등이 비중이 높아 경제적 지원 정책으로 가능하지만, 결혼제도의 가부장성 문제는 경제적 지원 정책보다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문화적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표 4-23 현재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순위+2순위

(단위: %)

구분	서울	베이징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37.3(1)	37.3(1)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이므로	21.1(2)	13.3(5)
결혼제도가 남편 집안 중심이기 때문에	18.0(3)	3.9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	17.4(4)	14.8(4)
결혼하는데 드는 비용이 마련되지 않아서	17.2(5)	11.4
나의 여가문화생활에 지장있을까봐	14.7	15.3(3)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12.7	13.1
소득이 적어서	12.5	12.6
결혼하면 나의 일에 영향이 있어서	10.5	12.1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	10.0	10.4
결혼생활과 직장일을 동시에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9.2	19.1(3)
실업상태여서	5.5	2.4
결혼 후 생활지출 비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4.5	20.8(2)
결혼에 적당한 나이를 놓쳤기 때문에	3.4	11.6
장애 또는 만성질환이 있는 가족 수발 때문에	0.5	0.2
본인의 건강문제 때문에	0.5	1.5
기타	3.4	0.2

주: ()안의 숫자는 비중이 높은 순서임

〈표 IV-24〉는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서 1순위 응답만 제시한 것이다. 서울과 베이징 모두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서울 20.2%, 베이징 21.1%)”가 중복응답과 동일하게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은 “결혼하기에는 아직 이른 나이이므로(12.9%)”, “소득이 적어서(9.0%)”,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7.9%)”, “결혼에 드는 비용이 마련되지 않아서(7.0%)”의 순이다. 베이징은 “결혼 후 생활지출비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서(12.6%)”, “소득이 적어서(9.0%)”,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8.5%)”, “결혼하는데 드는 비용이 마련되지 않아서(8.2%)”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미혼

여성들의 경우 “결혼제도가 남편 집안 중심이기 때문에”는 1순위와 2순위를 더한 중복응답에서는 순위가 높았지만 1순위만 볼 경우에는 순위가 낮았다. 이는 결혼하지 않은 이유에서 핵심 요인은 배우자감 문제, 연령 문제, 소득이나 결혼비용 문제이지만 부차적으로 결혼제도의 가부장성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베이징의 경우는 중복응답(1순위+2순위)과 1순위에서 유사하게 배우자감 문제와 비용 문제가 중요한 사유가 되고 있다.

표 4-24 현재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순위

(단위: %)

구분	서울	베이징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20.2(1)	21.1(1)
결혼 후 생활지출 비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1.0	12.6(2)
소득이 적어서	9.0(3)	9.0(3)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6.1	8.5(4)
결혼하는데 드는 비용이 마련되지 않아서	7.0(5)	8.2(5)
결혼생활과 직장일을 동시에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3.4	7.3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	4.1	7.3
결혼하면 나의 일에 영향이 있어서	6.3	6.1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이므로	12.9(2)	4.6
나의 여가문화생활에 지장있을까봐	5.4	4.4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	7.9(4)	4.4
결혼에 적당한 나이를 놓쳤기 때문에	0.7	3.6
실업상태여서	4.9	1.7
결혼제도가 남편 집안 중심이기 때문에	5.4	1.0
본인의 건강문제 때문에	0.3	0.5
장애 또는 만성질환이 있는 가족 수발 때문에	0.3	-
기타	2.2	-

주: ()안의 숫자는 비중이 높은 순서임

향후 결혼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결혼할 생각이 있다”가 서울 41.1%, 베이징 49.4%로 가장 많다. 또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는 서울 20.4%, 베이징 25.7%로 두 번째로 많았다. 서울과 베이징을 비교하면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베이징보다 서울이 8.3%p 낮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비중은 서울(20.2%)이 베이징(12.3%)보다 높다. 즉, 서울이 베이징과 비교하여 결혼의향이 낮은 수준이며, 결혼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다. 또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의 경우에도 서울이 11.9%, 베이징 6.1%로 서울이 더 높다. 전반적으로 서울의 미혼여성이 베이징의 미혼여성보다 결혼의향이 낮고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25 결혼할 생각이 있는지 여부

구분			(단위: 명(%))
	서울	베이징	검정통계량 (χ^2)
결혼할 생각이 있다	169(41.1)	204(49.4)	21.271***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84(20.4)	106(25.7)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49(11.9)	25(6.1)	
생각해본 적 없다	26(6.3)	27(6.5)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잘 모르겠다)	83(20.2)	51(12.3)	
전체	411(100.0)	413(100.0)	

주: $p < .001$

결혼할 의향이 있는 경우 그 이유는 서울은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서”가 64.5%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인생의 당연한 과정이므로(14.8%)”이다. 반면 베이징은 “인생의 당연한 과정이므로”가 38.2%로 가장 많고, 두 번

째가 “부모가 하라고 해서(19.1%)”,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서(18.6%)”의 순이었다. 서울보다 베이징의 미혼여성이 결혼을 당연한 과정으로 수용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서울의 미혼여성은 배우자감을 만날 경우 결혼을 생각하지만 베이징은 당연하게 결혼해야 하므로 배우자감을 찾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표 4-26 결혼할 생각이 있는 경우 그 사유

구분			(단위: 명(%))
	서울	베이징	검정통계량 (χ^2)
부모가 하라고 해서	2(1.2)	39(19.1)	106.948***
사회적으로 결혼하라는 압력이 있어서	8(4.7)	14(6.9)	
인생의 당연한 과정이므로	25(14.8)	78(38.2)	
자녀를 낳고 싶어서	4(2.4)	16(7.8)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서	109(64.5)	38(18.6)	
둘이 함께 받게 되면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으므로	18(10.7)	14(6.9)	
남자가 경제적으로 부양할 수 있으므로	1(0.6)	3(1.5)	
기타	2(0.6)	2(0.6)	
전체	411(100.0)	413(100.0)	

주: $p^{***} < .001$

나. 자녀 관련

결혼을 하게 되면 희망하는 자녀수는 몇 명인지 조사한 결과 서울 1.8명, 베이징 1.6명으로 서울이 베이징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를 보면 서울 17.4%, 베이징

22.1%로 베이징의 동의 비율이 높았다. 자녀 중에서 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베이징이 서울보다 높은 것이다.

표 4-27 결혼 후 희망 자녀수와 아들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서울	베이징
희망 자녀수	0명	5.4	1.9
	1명	18.0	35.6
	2명	42.5	41.6
	3명 이상	9.0	2.9
	잘모르겠다	24.8	17.9
	전체	411(100.0)	413(100.0)
	(평균 희망 자녀수)	1.8명	1.6명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	50(17.4)	73(22.1)
	아니다	237(82.6)	258(77.9)
	전체	411(100.0)	413(100.0)

자녀를 1명보다 적게 두기를 희망하는 경우 그 사유를 보면 서울과 베이징 모두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서울은 30.1%, 베이징은 29.7%이다. 두 번째는 서울은 “출산 및 육아로 본인의 여가문화생활에 지장있을까봐(1.4%)”, “출산 및 육아로 직장 내에서의 불이익이 우려되어서(9.3%)”의 순이었다. 베이징은 “아이를 맡길 사람이 없어서(16.8%)”, “아이를 맡길 시설이 없어서(7.7%)”의 순이다. 희망 자녀수가 0명인 경우와 1명인 경우를 구분하여 분석하여도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서울의 미혼여성들은 개인 생활에 자녀가 장애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명이상의 자녀는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이 있다고 하여도 추가적으로 출산할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반면 베이징의 경우에는 돌봄 사유가 많아 자녀돌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있을 경우 출산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4-28 자녀를 1명 이하로 두기를 희망하는 경우 그 사유: 1순위

구분	서울		베이징	
	서울	베이징	서울	베이징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30.1(1)	29.7(1)		
출산 및 육아로 본인의 여가문화생활에 지장있을까봐	11.4(2)	7.1(4)		
출산 및 육아로 직장 내에서의 불이익이 우려되어서	9.3(3)	6.5(5)		
소득이 적어서	7.3(4)	5.8		
가정 내에서의 가사 및 육아 부담이 공평하지 않아서	7.2(5)	1.3		
아이를 낳기에 나이가 많아서	5.3	3.9		
본인이 아이를 싫어해서	5.2	3.9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	5.2	5.2		
자녀 양육을 위한 적절한 주택이 마련되지 않아서	3.2	5.8		
아이를 맡길 사람이 없어서	3.1	16.8(2)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울 것 같아서	2.1	5.8		
실업상태여서	2.1	0.6		
본인의 건강문제 때문에	1.0	-		
장애 또는 만성질환이 있는 가족 수발 때문에	-	-		
아이를 맡길 시설이 없어서	-	7.7(3)		
기타	6.3	-		
사례수	93(100.0)	155(100.0)		

주: ()안의 숫자는 비중이 높은 순서임

표 4-29 희망 자녀수가 0명인 경우와 1명인 경우 각각 그 사유: 1순위

(단위: 명(%))

구분	0명인 경우		1명인 경우	
	서울	베이징	서울	베이징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4(18.2)	1(12.5)	25(33.8)	45(30.6)
출산 및 육아로 본인의 여가문화생활에 지장있을까봐	5(22.7)	2(25.0)	6(8.1)	9(6.1)
출산 및 육아로 직장 내에서의 불이익이 우려되어서	1(4.5)	2(25.0)	8(10.8)	8(5.4)
소득이 적어서	1(4.5)	1(12.5)	6(8.1)	8(5.4)
가정 내에서의 가사 및 육아 부담이 공평하지 않아서	3(13.6)		4(5.4)	2(1.4)
아이를 낳기에 나이가 많아서			5(6.8)	6(4.1)
본인이 아이를 싫어해서	4(18.2)	2(25.0)	2(2.7)	4(2.7)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			5(6.8)	8(5.4)
자녀 양육을 위한 적절한 주택이 마련되지 않아서			3(4.1)	9(6.1)
아이를 맡길 사람이 없어서			3(4.1)	26(17.7)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울 것 같아서			2(2.7)	9(6.1)
실업상태여서	1(4.5)		1(1.4)	1(1.4)
본인의 건강문제 때문에			1(1.4)	
장애 또는 만성질환이 있는 가족 수발 때문에				
아이를 맡길 시설이 없어서				12(8.2)
기타				
사례수	22	8	74	147

다. 결혼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 관련

결혼 시 결혼비용과 신혼집 마련 비용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베이징보다 서울이 더 높다. 결혼비용을 지원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서울 35.8%, 베이징 13.6%이며, 신혼집 비용을 지원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서울 48.4%, 베이징 18.4%이다.

표 4-30 결혼비용과 신혼집 관련 부모 지원 기대

(단위: 명(%))

구분		서울	베이징	검정통계량 (χ^2)
결혼비용 지원	전액지원	14(3.4)	91(22.0)	97.752***
	일부지원	250(60.8)	266(64.4)	
	지원받기 어려움	147(35.8)	56(13.6)	
	전체	411(100.0)	413(100.0)	
신혼집 마련 비용 지원	전액지원	15(3.6)	64(15.5)	97.692***
	일부지원	197(47.9)	273(66.1)	
	지원받기 어려움	199(48.4)	76(18.4)	
	전체	411(100.0)	413(100.0)	

주: $p^{***} < .001$

5. 출산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출산양육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은 국가와 직장으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국가의 정책에 대한 의견은 서울과 베이징 모두 “지원해야 한다(어느 정도 지원해야한다+전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비중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전혀 지원할 필요가 없다+별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보다 높다. 서울과 베이징을 비교하면 지원해야한다는 응답이 서울 92.9%, 베이징 74.6%로 서울이 더 높다. 직장의 지원에 대한 의견 역시 서울과 베이징 모두 지원해야한다는 비율이 높고, 베이징과 비교하여 서울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31 국가 및 직장의 양육지원에 대한 의견 비교

(단위: 점)

구분		서울	베이징	검정통계량 (χ^2)
국가	전혀 지원할 필요가 없다	6(1.5)	19(4.6)	67.186***
	별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	15(3.6)	56(13.6)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한다	273(66.4)	260(63.0)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109(26.5)	48(11.6)	
	잘 모르겠다	8(1.9)	30(7.3)	
직장	전혀 지원할 필요가 없다	3(0.7)	18(4.4)	89.000***
	별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	16(3.9)	65(15.7)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한다	267(65.0)	255(48.9)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116(28.2)	42(10.2)	
	잘 모르겠다	9(2.2)	33(8.0)	

주: $p^{***} < .001$

출산양육지원내용에 대한 필요정도를 보면 모든 항목에 대하여 서울과 베이징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베이징보다 서울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원내용 중에서 가장 필요정도가 높은 항목은 서울과 베이징 모두 출산휴가(서울 3.77점, 베이징 3.60점)-육아휴직(서울 3.73점, 베이징 3.54점)의 순이다. 필요정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서울은 “자녀 양육 및 비용 지원”이며, 베이징은 “자녀 양육 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이다.

표 4-32 출산양육지원 항목별 필요정도 비교

(단위: 점)

구분	서울 (n=411)	베이징 (n=413)	F-value
자녀 양육 및 비용 지원	3.30(.675)	3.18(.033)	6.226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 확충	3.72(.539)	3.27(.714)	101.427***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	3.57(.610)	3.08(.777)	105.167***
자녀 양육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	3.35(.677)	3.11(.814)	21.421***
출산휴가	3.77(.491)	3.60(.626)	18.975***
육아휴직	3.73(.538)	3.54(.662)	21.481***
배우자 출산휴가	3.68(.561)	3.48(.688)	20.762***

주: $p < .001$

6. 요약 및 시사점

서울의 미혼여성은 결혼에 대하여 선택사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베이징보다 높고, 필수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낮다. 하지만 미혼, 비혼 동거, 무자녀 등 다양한 결혼형태에 대하여 서울 미혼여성이 베이징 미혼여성보다 동의 수준이 더 높았다. 그러나 비혼 출산에 대해서는 서울과 베이징 미혼여성 모두 부정적인 경향을 보여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양국 모두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의 경우는 법적인 혼인을 하지 않을 경우 출생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비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녀돌봄, 가족의 경제적 부양, 가사 등에 대해서는 서울과 베이징 미혼 여성 모두 남녀가 동등하게 분담해야한다는 생각에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남녀의 동등한 분담에

대한 생각은 결혼비용 분담에 대해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결혼비용 분담 비중을 남성 측과 여성 측으로 비율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결혼비용의 동등한 분담에 대하여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측의 분담 비중을 더 높게 응답하였다. 서울과 베이징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베이징의 미혼여성들이 남성 측이 결혼비용 전반에 대하여 더 많은 비율로 분담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베이징의 경우 신혼집과 결혼식 비용에 대한 남성측 분담 비중이 높아서 결혼관련 경제적 부담은 남성측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에 대하여 동의하는 비율이 서울 5.8%, 베이징 30.3%로 서울이 베이징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 자녀 양육의 긍정적 가치에 대해서는 서울이 베이징보다 동의 정도가 낮으며,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서울이 베이징보다 동의 정도가 높았다. 즉, 서울의 미혼여성은 자녀를 거의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부모의 자녀 부양 책임에 대한 동의 정도는 베이징이 더 높다. 특히 결혼 이후의 경제적 도움과 손자녀 돌봄 지원은 서울보다 베이징의 동의 정도가 높는데 이는 중국에서 조부모 손자녀 양육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본인의 결혼의향은 서울이 낮으며, 베이징 미혼여성은 결혼을 당연하게 수용하는 경향이 서울보다 높다. 한편 서울의 미혼여성이 결혼하지 않는 사유 중 세 번째로 많은 것이 “결혼제도가 남편집안 중심이므로”로 나타나 경제적 문제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비중이 높게 나타난 베이징과 차이를 보인다. 즉, 서울의 미혼여성은 결혼관련 경제적 문제도 중요하지만 결혼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요소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향후 한국의 가족문화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경

우 젊은 여성들의 결혼 의향이 높아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혼할 경우 희망 자녀수는 서울 1.8명, 베이징 1.6명으로 서울이 약간 더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산은 적은 것이 서울의 현실이다. 자녀를 1명 이하로 두기를 희망하는 사유는 서울과 베이징 모두 자녀 양육 및 교육 비용 부담이 가장 많아서 경제적 사유가 핵심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이후 사유를 보면 서울은 “본인의 여가문화생활에 지장있을까봐”, “직장 내에서 불이익 우려”의 순이며, 베이징은 “아이를 맡길 사람과 시설이 없어서”이다. 베이징의 경우 현재 보육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돌봄 지원도 거의 없기 때문에, 향후 자녀 돌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있을 경우 출산을 더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베이징과 달리 서울의 미혼여성의 경우 출산을 꺼리는 사유가 개인 생활에 대한 욕구와 일에 있어서 커리어 지속이 사유가 되고 있다는 점은 저출산 대책에 있어서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다양한 불이익이 지속되는 한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및 시사점
2. 정책제언



1.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인구동향, 인구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저출산의 주요한 요인으로서 결혼 및 출산 가치관에 주목하여 양국의 수도인 서울과 베이징의 미혼여성의 가치관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저출산은 강력한 인구억제정책을 시행한 정책적 요인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주도의 인구억제정책에 대하여 일반국민들이 수용하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가족계획정책 사례에서 보듯이 “적게 낳아서 잘 키우자”는 국가의 설득 논리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인구 억제 정책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 모두 소자녀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양국의 인구억제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한 것이었다. 결혼이나 출산은 개인의 사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며 동일한 사회경제적 여건에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출산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즉, 결혼과 출산행위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개인의 가치관 요인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 결과 한국과 중국은 이제 인구에 있어서 저출산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국가는 자녀를 낳으라고 하지만 일반 국민 개개인은 자녀를 낳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엄격한 가족계획을 실시할 때 국가가 제시한 소자녀의 장점이 오히려 출생을 장려하는 국가에 반박하고 대응하는 논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즉, 한국에서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사회경제적 장애요인

을 제거하고자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 낮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일반국민 개개인의 결혼이나 출산 의향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에서 국가적으로는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현상이지만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전체 사회를 위하여 굳이 본인이 아이를 낳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전면적 두 자녀 정책으로 전환한 중국에서 향후 출산율 반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명시적으로 출생 장려에 대한 우대 정책이 없고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실시이후 한 자녀에 대한 우대와 두 자녀에 대한 패널티를 없앴을 뿐이다. 또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나 보육관련 공적 서비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도 없기 때문이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의 정책환경은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정책 환경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긍정적인 점은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 측면이다. 서울과 베이징을 비교했을 때 베이징의 미혼여성들은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결혼의향도 높고, 출산의향도 높다. 또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은 서울보다 높은 수준이며,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서울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결혼을 하지 않는 사유나 출산을 적게 하려는 사유가 경제적 비용 문제나 돌봄 문제가 더 많았다. 서울에서는 근본적으로 결혼제도의 문제, 자녀 보다는 개인 생활을 중시하는 태도 등이 많았던 것과는 비교되는 지점이다. 베이징 미혼여성의 응답 경향을 볼 때 중국에서 향후 돌봄 지원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확충하고 결혼과 자녀 양육관련 경제적 지원제도,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를 도입한다면 출산을 할 의향이 더

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실시 이후 출생아 수가 증가하였다. 그런데 출생 순서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아 출산은 2016년 40.3%에서 2017년 51.2%로 늘어났지만 첫째아 출생 규모는 줄어든 것이다. 즉,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실시 이후 둘째 출산이 증가한 것이 출생아 수가 증가한 직접적인 원인인 것이다. 한편 두 자녀 정책 시행 이후 두 자녀 출산 의향을 알아본 조사에 의하면 두 자녀 출산을 원하는 비율이 전체의 20.5% 수준으로 나타나 두 자녀를 원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두 자녀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교육, 의료, 위생, 생활환경 등 공공서비스 자원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⁶²⁾(KIEP 북경사무소, 2017). 따라서 첫째아 출생 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며, 두 자녀 정책에도 불구하고 둘째아 출산 의향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에서도 한국과 유사하게 낮은 출산율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목해야한다. 따라서 중국에서 현재 제공되지 않는 자녀 양육 관련 다양한 지원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직은 결혼제도와 자녀 가치관이 서울보다는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출산을 적게 하려는 사유로 주로 경제적 요인과 돌봄지원서비스 부족을 중요한 사유로 꼽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정책을 도입 확대 실시할 경우 한국과 달리 출산의향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한국에 비해 중국은 저출산 문제에 관련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합계출산율이 한국보다 높고, 미혼여성의 결혼

62) 중국 부녀자 연합회와 베이징 사범대학이 공동으로 2016년 4월부터 10월에 전국 10개 성(베이징, 랴오닝, 산둥, 장쑤, 허난, 안후이, 광둥, 광시, 산시, 쓰촨 등) 21개 시의 0세~15세의 아이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이 가정 교육에 미친 영향 조사>

및 출산 의향도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과 달리 새롭게 도입할 정책 수단은 거의 없어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의향이 매우 낮아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한국에서 여성의 결혼 및 출산 의향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결혼과 출산을 포함한 일상생활 전반에 있어서 성불평등 문화구조가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사회문화적 전환이 요구되며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에서 출산을 관련 전망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중국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국의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중국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은 결혼이나 자녀 관련 사회문화적인 구조의 변화가 요구된다. 특히 명시적인 차별은 없지만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차별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

2. 정책제언

가. 한국 : 가족제도의 성불평등 구조 변화

한국에서 저출산 대응정책은 질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사회경제적 요인이 결혼과 출산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관련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하고 여성의 결혼출산 의향이 낮아지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결혼제도는 다분히 가부장적이다. 또 육아와 가사는 여전히 여성의 책임으로 간주된다. 공적인 영역에서 차별은 명시적으로 사라졌지만 보이지 않게 여성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이 증가 추세이지만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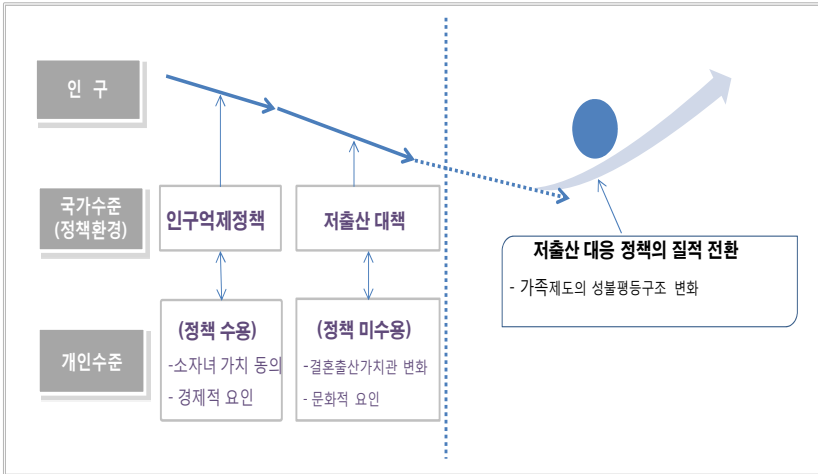
보다 낮은 비율이다. 또 가족이나 일상생활에서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들이 남아 있다. 최근 한국은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저출산 대책에서 출산을 강요하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고 성평등과 아동에 집중하는 등 프레임을 바꾸었다.⁶³⁾

가장 핵심적으로는 결혼과 출산을 포함한 가족생활, 일상생활에서 성불평등한 구조, 가부장적 문화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한국 사회는 중국보다 가족지원 관련 재정지출이 많은 국가이다. 그러나 여전히 자녀돌봄의 주요한 책임은 가족이 맡고 있으며 가족 안에서 여성의 역할로 되어 있다. 또 일상생활 중에서 가족생활 측면에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요소가 많다. 예를 들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족호칭의 경우도 남편의 집안에 대한 호칭은 거의 존대하는 것 등이 그렇다. 제사나 장례 등에서도 남성 중심의 문화가 당연시 되고 있다. 젊은 미혼여성을 중심으로 이러한 가족문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측면으로 인하여 결혼을 기피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래 [그림 5-1] 과 같이 한국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은 성불평등한 사회문화구조 및 가족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겠다.

63) 이태일리(2018. 12. 6). 저출산대책 패러다임 바꾼다...육아휴직 의무화·부모보험 도입 검토(<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259054&memberNo=3939441&vType=VERTICAL>)

그림 5-1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방향



성불평등한 사회문화구조 및 가족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 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문화 구조 내 성불평등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명시적으로 법이나 제도상 성차별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가부장적 가족제도인 호주제가 폐지되었고, 민법상 상속 등에 있어서도 딸과 아들의 차별은 없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경제활동상 남녀 차별은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는 교육 기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가족 내 역할에서 육아나 가사는 여성이 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 내 역할로 인하여 기혼여성들은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은 여전하다. 또, 가부장적 가족관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 명절이나 제사 등 여성의 부담이 있으며, 남편의 가족 관계를 중시하는 가족문화가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음은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법제도상 성불평등 실태가 아닌 사회문화구조 내 부

리깊이 남아 있는 가부장적 규범이나 가부장적 규범에 기반한 불평등 실태를 불평등의 내용, 불평등이 작동하는 장소나 방식, 관계 등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부장적 가족관계 호칭의 재정비, 가부장적 가족의례 문화 개선 등이다.

둘째, 가족 내 육아 및 가사 분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참고로 김영란 외(2018: 150)는 성평등한 가사노동 수행을 위하여 가사노동의 핵심 주체로서 남성의 주체성 회복과 역량 강화를 돕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확대 등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를 위한 물리적 구조적 조건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 엄마(여성)을 중심으로 구성 운영되어 온 자녀양육환경(예를 들어 녹색어머니회 등) 정비, 남성의 육아 및 가사 수행 기술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성불평등한 가족제도 및 사회문화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전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구조나 의식구조는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첫 번째 정책과제를 통해 발굴된 성불평등 실태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변화를 이끌어 내기위한 문화적인 혁신 운동 및 캠페인 추진이 필요하다.

나. 중국 : 가족지원정책 도입

중국에서는 가족지원정책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결혼 및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보육지원을 위한 공공서비스,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등이다.

결혼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은 주거비가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또, 결혼식을 간소화하도록 유도하는 인식개선도 고려가능하다.

다음 자녀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수혜자격 기준을 확대하거나 초등학교와 유치원 과정을 의무화하여 교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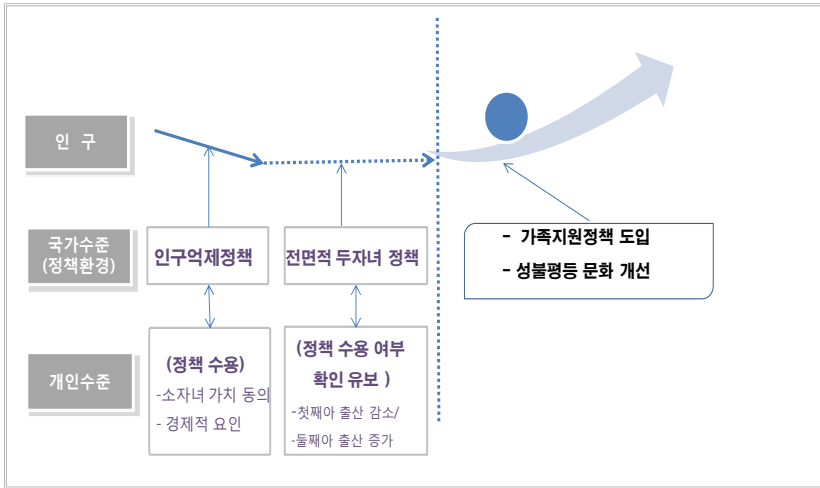
보육지원을 위한 공공서비스는 현재는 거의 없고 대부분 조부모가 돌봄을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자녀를 적게 낳으려는 이유로 “돌봄 시설이 없어서”, “돌봄 사람이 없어서” 등 돌봄 사유의 비중이 높았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자녀 돌봄에 있어서 조부모 자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공적 보육지원서비스는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적 보육지원서비스 이용 시 보육료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도 도입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는 일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을 들 수 있다. 중국은 현재 출산휴가는 있으나 육아휴직제도가 없기 때문에 영아돌봄은 조부모가 지원하며 조부모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일을 그만두거나 비용이 비싼 민간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일하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에서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가장 먼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한국의 사례에 의하면 가족지원정책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성불평등한 가족문화가 지속될 경우 여성의 결혼 및 출산 의향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국에서도 한국과 동일하게 성

불평등한 사회문화구조를 개선하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림 5-2 중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방향



Ⅱ 참고문헌 Ⅱ

[한국 문헌]

- 국가기록원(2018). '인구정책 어제와 오늘' <http://theme.archives.go.kr/next/populationPolicy/viewPolicy.do>
- 김두섭(2007). 『IMF 경제위기와 한국 출산력의 변화』, 서울: 집문당.
- 김미현(1993). 『한국가족정책에 나타난 국가-가족관계』.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승권. (2003). 한국사회에서의 저출산의 원인과 정책방향.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란, 장혜경, 주재선, 황정임, 김지경(2015). 『저출산대책의 정책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서울: 기획재정부.
- 김영란, 선보영, 김필숙(2018). 『가사노동시간 측정 및 행동평가 기준의 젠더불평등성 개선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지자, 이덕성, 임종권(1979). 『통반장을 통한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보급 방안: 시범사업 최종 보고서』, 서울: 가족계획연구원.
- 김초강, 정혜경(1999). 『모아보건·인구·가족계획』, 서울: 수문사.
- 김태현(2012). 우리나라 인구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보건복지포럼』, 191: 6-16.
- 대한민국 정부(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서울: 대한민국 정부.
- 대한민국 정부(2016).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서울: 대한민국 정부.
- 두산백과(doopedia)(2018). '가족계획',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24736 (검색일: 2018.9.3.)
- 박승희, 김사현(2008). 『여성노동자의 저출산 원인과 여성친화적 노동시장 정책』, 서울: 뉴패러다임센터.
- 박영창(2005). 『저출산 관련 정책평가 및 입법과제』. 한국법제연구원.

- 박영창(2005). 『저출산 관련 정책평가 및 입법과제』,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 박지은(2018). 여성의 추가 출산의향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배우자 가사·육아분담시간과 여성의 공평인식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배은경(2004). 한국사회 출산조절의 역사적 과정과 젠더: 1970년대까지의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 박사학위논문.
- 백승훈(2012). 『한국 가족정책의 형성과 변화 -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동양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 신성철(1987). 우리나라 출생아 성비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통계학회지』, 12(1): 30-40.
- 양재모, 최지훈, 김영기, 권호연, 신민웅(1975). 『교회활동을 통한 도시 영세민의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인구 및 가족계획연구소.
- 위영(2011). 『기록으로 읽는 '인구정책' 어제와 오늘』, 기록인(국가기록원).
- 이삼식(2001). 남아선호 의식과 행위간 일치성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21(2): 79-105.
-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성진, 이진환, 장성수, 유혜정(1979). 『새마을 부녀회 회장을 통한 가족계획사업의 평가: 서울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행동과학연구원.
- 장영식, 김나연, 이성용, 진달래(2010). 한국의 인구정책 동향과 전망,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서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정재훈(2017). 『저출산·고령사회와 그 적들』, 서울: EM실천.
- 조은주(2018). 『가족과 통치』 서울: (주)창비.
- 통계청(1960~2050).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1970~2015). 「인구총조사」

- 통계청(1970~2017). 「인구동향조사」
- 통계청(1990; 2017b). 「인구동향조사: 초혼연령」
- 통계청(2000~2017).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2015). 「인구총조사: 전체 여성인구 대비 미혼 여성 인구」
- 통계청(2016). 「혼인통계」
- 통계청(2017a). 「2017년 출생통계」
- 통계청(2017c).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통계청(2017d). 「사회조사」
- 통계청(2018). 「사회조사」
- 통계청(2019). 통계설명자료, <https://meta.narastat.kr/metasvc/index.do?iemInputNo=0000145409092> (검색연월일 2019.1.1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1). 『인구정책 30년』
- 홍문식(1998). 출산력 억제정책의 영향과 변천에 관한 고찰, 『한국인구학』 21(2): 182-227.
- 홍승식(1980). 『가족계획과 사회개발: 가족계획사업의 단계적 추진』, 한국사회개발 연구.
- KIEP 북경사무소 CSF이슈분석, “중국인이 두자녀를 원하지 않는 이유”, 2017-03.
-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중국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시행 배경 및 평가”. 2015년 11월 27일 Vol. 18 No 19.

[한국 인터넷 사이트]

- 고용보험 <https://www.ei.go.kr>(검색일: 2018. 12. 7.)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검색일: 2018. 12. 5.)
- 마이홈 www.myhome.go.kr(검색일: 2018. 12. 5.)
- 복지로 www.bokjiro.go.kr(검색일: 2018. 12. 7.)
- 주택도시기금 www.nhuf.molit.go.kr(검색일: 2018. 12. 5.)
- 이데일리(2018. 12. 6.). 저출산대책 패러다임 바꾼다...육아휴직 의무화·부모보험

도입 검토(<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259054&memberNo=3939441&vType=VERTICAL>)

[중국 문헌]

China Population and Employment Statistical Yearbook 2017-1991, and the data of 2000 from census 2000.

China Population Statistics Yearbook 1996-2017,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Du F, Dong X.(2010).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Childcare Choices in Urban China During the Economic Transition," Gender equality and China's economic transformation: Informal employment and care provision, 173 -91 .

HU Deng, GUO Lin.(2009). "The survey on marriage intention and fertility intention of female college students," *Lanzhou Journal*, No.11

Jiawei Hou et al.(2014). "A change in the desired fertility of Chinese Population: 1980-2011," *Chinese Social Sciences*, No.4

WANG Jun, WANG Guangzhou. (2016). "A Study on the Difference between Fertility Intention and Fertility Behavior with China Low Fertility Level," *Population Journal*, No.2

World Bank Development Indicators.(1960-2016). TFR of China.

YANG Juhua, DU Shenghong.(2017). "Theoretical thinking about 'it being better to get married well than to have a good job'," *Journal of Humanities*, No.10

计迎春, 郑真真, 2018. "社会性别和发展视角下的中国低生育率", 《中国社会科学》第8期。

郭志刚, 2008. "中国低生育水平及其影响因素", 《人口研究》第4期。

郭志刚, 2011. "六普结果表明以往人口估计和预测严重失误", 《中国人口科学》第6期。

国家统计局人口统计司, 1988. 《1987年全国1%人口抽样调查资料》, 中国统计出版社。
国家统计局人口和就业统计司, 2006. 《2005年全国1%人口抽样调查资料》, 中国统计出版社。

国家统计局人口和就业统计司, 2016. 《2015年全国1%人口抽样调查资料》, 中国统计出版社。

靳永爱(2014). “低生育率陷阱：理论、事实与启示”, 《人口研究》第38卷第1期。

金一虹(2006). “铁姑娘”再思考—中国文化大革命期间的社会性别与劳动”, 《社会学研究》第1期。

陶涛, 杨凡(2011). “计划生育政策的人口效应”, 《人口研究》第1期。

陶艳兰(2013). “世上只有妈妈好——当代城市女性的母职认同与实践”, 《妇女研究论丛》第6期。

梁中堂(2014). “艰难的历程：从‘一胎化’到‘女儿户’”, 《开放时代》第5期。

刘爽, 王平(2015). “对‘单独二孩’政策新的认识与思考”, 《人口研究》第2期。

普查数据都是在国家统计局的官网上查到的, <http://www.stats.gov.cn/tjsj/pcsj/>

宋少鹏(2011). “回家’还是‘被回家’? ——市场化过程中给‘妇女回家’讨论与张洪国社会意识形态转型”, 《妇女研究论丛》第4期。

吴帆(2016). “欧洲家庭政策与生育率变化——兼论中国低生育率陷阱的风险”, 《社会学研究》第1期。

王广州, 周玉娇, 张楠(2018). “低生育陷阱：中国当前的低生育风险及未来人口形势判断”, 《青年探索》第5期。

蒋永萍(2000). 50年中国城市妇女的就业的回顾与反思”, 《劳动保障通讯》第3期。

翟振武, 陈佳鞠, 李龙(2015). “中国出生人口的新变化与趋势”, 《人口研究》第2期。

曹立斌, 石智雷(2017). “低生育率自我强化效应的社会学机制的检验与再阐述”, 《人口学刊》第1期。

陈友华, 苗国(2015). “意料之外与情理之中：单独二孩政策为何遇冷?” 《探索与争鸣》第2期。

陈友华, 苗国(2016). “社会变迁背景下的低生育率：新机制与新特点”, 《人口与发

展》第5期。

陈卫(2014). “2000年以来中国生育水平估计”, 《学海》第1期。

蔡泳. (2010). “社会经济发展对生育率下降的作用——国际的经验和江浙的比较”, 曾毅等:《低生育水平下的中国人口与经济发展》,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彭青青, 李宏彬, 施新政, 吴斌珍(2017). 中国市场化过程中城镇女性劳动参与率变化趋势[J], 金融研究, 2017(06):33-49.

黄玉琴, 萧易忻(2017). “低生育率陷阱”风险下如何实现生育率翻转?——东亚和欧美的经历及对中国的启示. 《福建论坛 (人文社会科学版) 》第5期。

吴忠观(1997). 人口科学辞典: 西南财经大学出版社

[중국 통계]

중국국가통계국(1982, 1990, 2000, 2010). 人口普查数据资料

중국국가통계국(1987, 1995, 2005, 2015). 1%人口抽样调查资料

중국 각 지방정부. 人口与计划生育条例

중국민정통계연감(1990~2017) CRUDE MARRIAGE RATE OF CHINA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China Population Statistics Yearbook 1996-2017,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China Population and Employment Statistical Yearbook 1991, 2011, 2016, 2017

World Bank Development Indicators

[중국 인터넷 사이트]

신화사 http://www.gov.cn/shuju/2017-01/22/content_5162356.htm(검색일: 2018. 11. 15.)

<http://data.stats.gov.cn/easyquery.htm?cn=C01>(검색일: 2019. 2. 1.)

<http://www.shanghai.gov.cn/nw2/nw2314/nw2315/nw5827/u21aw1351535.html>(검색일: 2019. 2. 1.)

<http://data.stats.gov.cn/easyquery.htm?cn=C01>(검색일: 2019. 2. 1.)

http://www.gov.cn/shuju/2017-01/22/content_5162356.htm(검색일: 2019. 2. 1.)

http://blog.sina.com.cn/s/blog_4b3725690102w94b.html(검색일: 2019. 2. 1.)

<http://cpc.people.com.cn/GB/64184/64186/66660/4493033.html>(검색일: 2019. 2. 1.)

<http://cpc.people.com.cn/GB/64184/64186/66669/4493533.html>(검색일: 2019. 2. 1.)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11/19/content_10304.htm.
(검색일: 2019. 2. 1.)

http://www.gov.cn/zhengce/2015-02/09/content_2816919.htm(검색일: 2019. 2. 1.)

<https://baike.baidu.com/item/%E4%B8%83%E5%85%AB%E5%AE%AA%E6%B3%95>(검색일: 2019. 2. 1.)

<http://cpc.people.com.cn/GB/64184/64186/67029/4519160.html>(검색일: 2019. 2. 1.)

<http://cpc.people.com.cn/GB/64184/64186/66699/4495322.html>(검색일: 2019. 2. 1.)

http://www.gov.cn/banshi/2005-08/21/content_25059.htm(검색일: 2019. 1. 30.)

<http://cpc.people.com.cn/n/2013/1115/c64094-23559163.html>(검색일: 2019. 1. 31.)

http://www.gov.cn/jrzg/2013-12/30/content_2557235.htm(검색일: 2019. 1. 31.)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5-10/29/c_1116983078.htm(검색일: 2019. 1. 31.)

<http://cpc.people.com.cn/n/2015/1103/c399243-27772773.html>(검색일: 2019. 1. 31.)

2019. 1. 31.)

http://www.gov.cn/gongbao/content/2016/content_5033853.htm(검색일: 2019. 1. 31.)

http://www.gov.cn/gzdt/2006-10/17/content_415298.htm(검색일: 2019. 2. 1.)

<http://www.nhfpc.gov.cn/jtfzs/s3581/201502/97f2a0c95ebc45f49eea20c075a9debc.shtml>(검색일: 2019. 2. 1.)

http://www.gov.cn/banshi/2005-08/21/content_25059.htm(검색일: 2019. 2. 1.)

<http://www.nhfpc.gov.cn/zwgk/wtwj/201305/9cc5459a79db40bfb48df6618be985a8.shtml>(검색일: 2019. 2. 1.)

<http://www.nhfpc.gov.cn/jtfzs/s3581/201312/206b8b4e214e4a5ea2016417843d7500.shtml>(검색일: 2019. 2. 1.)

http://www.mof.gov.cn/zhengwuxinxi/caizhengwengao/wg2016/wg201605/201609/t20160930_2431235.html(검색일: 2019. 2. 1.)

http://www.gov.cn/gzdt/2006-10/17/content_415298.htm(검색일: 2019. 2. 1.)

<http://www.nhfpc.gov.cn/jtfzs/s3581/201502/97f2a0c95ebc45f49eea20c075a9debc.shtml>(검색일: 2019. 2. 1.)

http://www.gov.cn/banshi/2005-08/21/content_25059.htm(검색일: 2019. 2. 1.)

http://www.bjrd.gov.cn/tzgg/201603/t20160325_161814.html(검색일: 2019. 2. 1.)

<http://www.wsjsw.gov.cn/gjjqtsq/20180525/21116.html>(검색일: 2019. 2. 1.)

<http://www.mca.gov.cn/article/xw/tzgg/201306/20130615478862.shtml>
(검색일: 2019. 2. 1.)

http://mzt.fujian.gov.cn/wsbs/tsrqkstd/etfl/etfl/201411/t20141119_8333

24.htm(검색일: 2019. 2. 1.)

http://www.moe.gov.cn/jyb_xxgk/moe_1777/moe_1779/201308/t20130807_155306.html(검색일: 2019. 2. 1.)

http://www.mof.gov.cn/gp/xxgkml/kjs/201611/t20161130_2511990.html
(검색일: 2019. 2. 1.)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6/content_185157.htm(검색일: 2019. 2. 1.)

http://www.gov.cn/zwgk/2010-09/26/content_1709863.htm(검색일: 2019. 2. 1.)

<http://www.mca.gov.cn/article/xw/tzgg/201306/20130615478862.shtml>
(검색일: 2019. 2. 1.)

http://mzt.fujian.gov.cn/wsbs/tsrqkstd/etfl/etfl/201411/t20141119_833324.htm(검색일: 2019. 2. 1.)

http://www.moe.gov.cn/jyb_xxgk/moe_1777/moe_1779/201308/t20130807_155306.html(검색일: 2019. 2. 1.)

http://www.mof.gov.cn/gp/xxgkml/kjs/201611/t20161130_2511990.html
(검색일: 2019. 2. 1.)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6/content_185157.htm(검색일: 2019. 2. 1.)

http://www.gov.cn/zwgk/2010-09/26/content_1709863.htm(검색일: 2019. 2. 1.)

http://www.gov.cn/zwgk/2012-05/07/content_2131567.htm(검색일: 2019. 2. 1.)

<http://www.china.com.cn/chinese/funv/230997.htm>(검색일: 2019. 2. 1.)

http://www.npc.gov.cn/wxzl/gongbao/2000-12/05/content_5004622.htm
(검색일: 2019. 2. 1.)

http://old.moe.gov.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moe_620/20

0408/1612.html(검색일: 2019. 2. 1.)
http://www.mohrss.gov.cn/SYrlzyhshbzb/zcfg/flfg/gz/201705/t20170522_271193.html(검색일: 2019. 2. 1.)
http://www.gov.cn/zwggk/2012-05/07/content_2131567.htm(검색일: 2019. 2. 1.)
http://www.gov.cn/flfg/2007-08/31/content_732597.htm(검색일: 2019. 2. 1.)
<http://www.bjnews.com.cn/news/2017/07/31/452468.html>(검색일: 2019. 2. 1.)
http://www.gov.cn/jrzg/2010-07/29/content_1667143.htm(검색일: 2019. 2. 1.)
http://www.gov.cn/zwggk/2010-11/24/content_1752377.htm(검색일: 2019. 2. 1.)
http://jkw.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109/t20110928_597060.html(검색일: 2019. 2. 1.)
http://jyt.jiangsu.gov.cn/art/2012/5/16/art_37933_3192597.html(검색일: 2019. 2. 1.)
<http://old.moe.gov.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s6811/201209/141495.html>(검색일: 2019. 2. 1.)
http://www.ndrc.gov.cn/zcfb/zcfbtz/201201/t20120105_455074.html(검색일: 2019. 2. 1.)
http://www.moe.gov.cn/srcsite/A06/s3327/201210/t20121009_143254.html
(검색일: 2019. 2. 1.)
http://www.moe.gov.cn/srcsite/A02/s5911/moe_621/201602/t20160229_231184.html(검색일: 2019. 2. 1.)
http://www.mohurd.gov.cn/wjfb/201704/t20170413_231464.html(검색일: 2019. 2. 1.)
http://www.gov.cn/zwggk/2013-01/23/content_2318295.htm(검색일:

2019. 2. 1.)

http://www.gov.cn/jrzq/2010-07/29/content_1667143.htm(검색일: 2019.

2. 1.)

http://www.moe.gov.cn/srcsite/A06/s3325/201703/t20170304_298203.html

(검색일: 2019. 2. 1.)

부록

1. 조사표(국문)
2. 조사표(중문번역본)



부록(1): 조사표(국문)

33 ()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가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여성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 및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 관련 국가 정책 수립을 위해 「여성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해주신 모든 내용과 결과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연구 윤리 및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SQ 1

?

- 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 ③ 사별 ④ 이혼

조사 중단

SQ 2

?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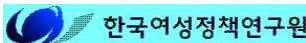
→

1984년 ~ 1993년 출생자만 조사 진행

SQ 3

?

- ① 은평구 ② 서대문구 ③ 마포구 ④ 용산구 ⑤ 종로구
 ⑥ 중구 ⑦ 노원구 ⑧ 성북구 ⑨ 중랑구 ⑩ 도봉구
 ⑪ 강북구 ⑫ 동대문구 ⑬ 성동구 ⑭ 광진구 ⑮ 강서구
 ⑯ 양천구 ⑰ 금천구 ⑱ 영등포구 ⑲ 구로구 ⑳ 관악구
 ㉑ 동작구 ㉒ 서초구 ㉓ 강남구 ㉔ 송파구 ㉕ 강동구



조사 관련 문의처 :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이강욱 연구원, ☎ 02-3702-2624

I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일반적 인식

1

?

- ① 하지 말아야 한다
- ②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③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 ④ 하는 것이 좋다
- ⑤ 반드시 해야 한다
- ⑥ 잘 모르겠다

2

?

☞ [G-CAWI] □ 응답 범위 제한 : 만 17세 이하, 만 50세 이상

	(1)	(2)
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세	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세

3

?

☞ [G-CAWI] □ 응답 범위 제한 : 만 17세 이하, 만 50세 이상

	(1)	(2)
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세	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세

4

?

(1)) () (①	②	③	④
(2)) () (①	②	③	④
(3)) () (①	②	③	④
(4)) () (①	②	③	④

4-1 가 ?
(100%가)

※ [G-CAWI] □ 함 100% 확인

	()	()
(1) (,)	□□□□ %	□□□□ %
(2)	□□□□ %	□□□□ %
(3) (가 ,가)	□□□□ %	□□□□ %
(4)	□□□□ %	□□□□ %

5 (,) ?

- ① 매우 간소하다 ② 약간 간소하다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과도하다 ⑤ 매우 과도하다 ⑥ 잘 모르겠다

6 ‘ 가 ’ ?

(1)	①	②	③	④
(2) 가	①	②	③	④
(3) 가	①	②	③	④
(4)	①	②	③	④
(5) 가	①	②	③	④

7 ‘ ’ ?

(1)	①	②	③	④
(2) 가	①	②	③	④
(3) 가	①	②	③	④

II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와 태도

8

가

?

- ① 없어도 무관하다 ②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③ 꼭 있어야 한다 ④ 잘 모르겠다

9

?

G-CAWI □ 응답 범위 제한 : 11명 이상

- ① 이상적인 자녀수 : 명
 ② 잘 모르겠다

10

?

(1) 가	①	②	③	④
(2) 가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4)	①	②	③	④
(5)	①	②	③	④

11

?

(1)	①	②	③	④
(2) 가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4)	①	②	③	④
(5) 가 (,)	①	②	③	④

III 본인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

12

가

? 가

2가

1

2

- ① 소득이 적어서
- ② 실업상태여서
- ③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
- ④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 ⑤ 결혼하는데 드는 비용이 마련되지 않아서
- ⑥ 결혼 후 생활지출 비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 ⑦ 결혼하면 나의 일에 영향이 있어서
- ⑧ 결혼생활과 직장 일을 동시에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 ⑨ 나의 여가문화생활에 지장이 있을까봐
- ⑩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이므로
- ⑪ 결혼에 적당한 나이를 놓쳤기 때문에
- ⑫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
- ⑬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 ⑭ 결혼제도가 남편 집안 중심이기 때문에
- ⑮ 장애(신체적·정신적) 또는 만성질환(와상상태 포함)이 있는 가족 수발 때문에
- ⑯ 본인의 건강문제(정신적·신체적 장애 포함) 때문에
- ⑰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3

?

- ① 결혼할 생각이 있다

13-1

가

? 1가

- ① 부모가 하라고 해서
- ② 사회적으로 결혼하라는 압력이 있어서
- ③ 인생의 당연한 과정이므로
- ④ 자녀를 낳고 싶어서
- ⑤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서
- ⑥ 둘이 함께 별개 되면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으므로
- ⑦ 남자가 경제적으로 부양할 수 있으므로
- ⑧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3-2

가

?

G=CAWI

응답 범위 제한 : 응답자 만 연령 미만

만

세

- ②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 ③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 ④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잘 모르겠다)

→

14

가

15

14

?

G-CAWI □ 응답 범위 제한 : 11명 이상

① 희망 자녀수 : 명

② 잘 모르겠다

14-1

G-CAWI □ 14 항에서 ①에서 1명 이상인 응답자에게만 질문

?

① 예

② 아니오

14-2

G-CAWI □ 14 항에서 0명 또는 1명인 응답자에게만 질문

가 1 ?
가 2가

1

2

- ① 소득이 적어서
- ② 실업상태여서
- ③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
- ④ 자녀 양육을 위한 적절한 주택 마련이 어려워서
- ⑤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 ⑥ 아이를 맡길 사람이 없어서
- ⑦ 아이를 맡길 시설이 없어서
- ⑧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직장 내에서의 불이익이 우려되어서
- ⑨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본인의 여가문화생활에 지장이 있을까봐
- ⑩ 아이를 낳기에 나이가 많아서
- ⑪ 본인이 아이를 싫어해서
- ⑫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울 것 같아서
- ⑬ 가정 내에서의 가사 및 육아 부담이 공평하지 않아서
- ⑭ 장애(신체적·정신적) 또는 만성질환(와상상태 포함)이 있는 가족 수발 때문에
- ⑮ 본인의 건강문제(정신적·신체적 장애 포함) 때문에
- ⑯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5

가 (: , , , , , , ,) ?

① 전액지원

② 일부 지원

③ 지원받기 어려움

16

가 ?

① 전액지원

② 일부 지원

③ 지원받기 어려움

IV 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생각

17

가

?

- ① 전혀 지원할 필요가 없다
- ② 별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
- ③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한다
- ④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⑤ 잘 모르겠다

18

(,)

?

- ① 전혀 지원할 필요가 없다
- ② 별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
- ③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한다
- ④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⑤ 잘 모르겠다

19

?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4)	①	②	③	④
(5) 가	①	②	③	④
(6)	①	②	③	④
(7) 가	①	②	③	④

가 | 7

V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DQ 1-1

?

- | | |
|-----------|----------|
| ① 무학(미취학) | ⑤ 전문대 졸업 |
| ② 초등학교 졸업 | ⑥ 대학교 졸업 |
| ③ 중학교 졸업 | ⑦ 대학원 졸업 |
| ④ 고등학교 졸업 | |

DQ 1-2

?

- ① 취업 ② 미취업 → DQ 1-3

DQ 1-2-1

?

- | | |
|------------------------|-------------------------|
| ① 고용주(직원 수 10명 이상) | ⑥ 공무원, 공직 관련 |
| ② 고위 경영진(총괄 책임자/이사 등) | ⑦ 프리랜서/자영업(직원 수 10명 미만) |
| ③ 전문직(변호사/회계사/교사/의사 등) | ⑧ 전업 주부 |
| ④ 사무직 | ⑨ 학생 |
| ⑤ 생산직 및 서비스직 | ⑩ 은퇴 |
- (블루 칼라 : 생산/제조, 서비스, 판매 등) ⑪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DQ 1-2-2

()

?

- ☞ G-CAWI □ 응답값 재확인
 □ 귀하의 월 평균 소득(세전)이 0,000만원이 맞습니까? *기간, 금액 단위를 확인해주세요

만원

DQ 1-3

?

- ① 예
 ② 아니오

DQ 1-4

?

-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무상

DQ 1-4-1 [G-CAWI] □ **DQ 1-3** 형에서 '㉔ 아니오', **DQ 1-4** 형에서 '㉑ 자가', '㉒ 전세', '㉓ 월세' 인 응답자에게만 질문
 ? (, ,)

- ① 예
- ② 아니오

DQ 1-4-2 G-CAWI □ **DQ 1-4** 형에서 '㉑ 자가', '㉒ 전세' 인 응답자에게만 질문
 ?

- ① 예
- ② 아니오 → **DQ 1-5**

DQ 1-4-2-1 ?
 ① 예 ② 아니오 → **DQ 1-5**

DQ 1-4-2-2 ?
 □ G-CAWI □ 응답값 재확인
 □ 귀하의 월 평균 대출 이자금이 0,000만원이 맞습니까? *기간, 금액 단위를 확인해 주십시오
 [][][][][] 만원

DQ 1-4-3 G-CAWI □ **DQ 1-4** 형에서 '㉓ 월세' 인 응답자에게만 질문
 ?

□ G-CAWI □ 응답값 재확인
 □ 귀하의 월세가 0,000만원이 맞습니까? *기간, 금액 단위를 확인해 주십시오
 [][][][][] 만원

DQ 1-5 가 ?

- ① 있다
- ② 없다 → **DQ 2-1** 항목으로 이동

DQ 1-5-1 , ?

(1)		[][]	명
(2)		[][]	명
(3)		[][]	명

VI

응답자 부모님의 일반적 특성

DQ 2-1

?

- ① 아버지, 어머니 모두 계심
- ② 아버지만 계심
- ③ 어머니만 계심
- ④ 아버지, 어머니 모두 안 계심 → 조사 종료

☞ G-CAWI ☐ DQ 2-1 항 응답 결과에 따라 '아버지', '어머니' 해당 문항 출현

DQ 2-2-1

?

☞ G-CAWI ☐ 응답 범위 제한 : (응답자 출생연도 - 15) 이상

년

DQ 2-2-2

?

☞ G-CAWI ☐ 응답 범위 제한 : (응답자 출생연도 - 15) 이상

년

DQ 2-3-1

?

- | | |
|-----------|----------|
| ① 무학(미취학) | ⑤ 전문대 졸업 |
| ② 초등학교 졸업 | ⑥ 대학교 졸업 |
| ③ 중학교 졸업 | ⑦ 대학원 졸업 |
| ④ 고등학교 졸업 | |

DQ 2-3-2

?

- | | |
|-----------|----------|
| ① 무학(미취학) | ⑤ 전문대 졸업 |
| ② 초등학교 졸업 | ⑥ 대학교 졸업 |
| ③ 중학교 졸업 | ⑦ 대학원 졸업 |
| ④ 고등학교 졸업 | |

DQ 2-4-1 ?

① 취업 ② 미취업 → **DQ 2-4-2**

DQ 2-4-1-1 () ?

G-CAWI 응답값 재확인
 귀하의 월 평균 소득(세전)이 0.000만원이 맞습니까? *기간, 금액 단위를 확인해주세요

만원

DQ 2-4-2 ?

① 취업 ② 미취업 → **조사 종료**

DQ 2-4-2-1 () ?

G-CAWI 응답값 재확인
 귀하의 월 평균 소득(세전)이 0.000만원이 맞습니까? *기간, 금액 단위를 확인해주세요

만원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부록(2): 조사표(중문번역본)

统计法第33条(保密)

- ① 在统计调查过程中所公开的有关个人、法人或团体等的秘密事项必须保密。
- ② 为了完成统计调查而搜集的有关个人、法人或团体的秘密事项等资料，不得用于统计以外的目的。

女性的婚姻生育价值观调查

问候语

您好！

韩国女性政策研究院为了解女性的婚姻生育价值观及对低出生率应对政策的态度，目前正在进行一项「未婚女性的婚姻生育价值观调查」。

您所回答的所有内容及调查的结果均不会用于研究之外的其他用途，我们也将遵守研究伦理及统计法第33条中的保密规定对上述内容进行严格保密。

2018年 11月

调查前提问

SQ 1 您的婚姻状况是？

- ① 未婚 ② 已婚 ③ 丧偶 ④ 离异

调查终止

SQ 2 您是哪一年出生的？

--	--	--	--

年 →

仅对1984年 ~ 1993年出生的女性进行调查

SQ 3 请问您目前居住在哪里？

- ① 东城区 ② 西城区 ③ 朝阳区 ④ 丰台区
⑤ 石景山区 ⑥ 海淀区 ⑦ 门头沟区 ⑧ 房山区
⑨ 通州区 ⑩ 顺义区 ⑪ 昌平区 ⑫ 大兴区
⑬ 怀柔区 ⑭ 平谷区 ⑮ 密云区 ⑯ 延庆区

■ 调查相关问题请咨询：☎韩国盖洛普咨询公司, 李康旭 研究员, ☎ 02-3702-2624

I 对婚姻及家庭生活的一般认识

1 您是如何看待结婚这件事的？

- ① 不应该结婚
- ② 不结婚会比较好
- ③ 结也行，不结也行
- ④ 结婚比较好
- ⑤ 一定得结婚
- ⑥ 不知道

2 一般情况下，如果要结婚的话，您认为多少岁结婚会比较好？
请分别填写您认为男性、女性适合结婚的年龄(周岁)。

☞ G-CAWI □ 回答范围限制：满17周岁以下，满50周岁以上

分类	(1) 男性		(2) 女性	
周岁	满	<input type="text"/>	满	<input type="text"/>

3 一般情况下，您认为生第一胎的最佳年龄是多少岁？
请分别填写您认为男性、女性适合生第一胎的年龄(周岁)。

☞ G-CAWI □ 回答范围限制：满17周岁以下，满50周岁以上

分类	(1) 男性		(2) 女性	
周岁	满	<input type="text"/>	满	<input type="text"/>

4 在“结婚费用”方面，您对下列各项内容的看法是？

评价项	完全不赞同	不太赞同	基本赞同	非常赞同
(1) 婚礼的费用应该由男方和女方平等地分担	①	②	③	④
(2) 准备婚房的费用应该由男方和女方平等地分担	①	②	③	④
(3) 新婚的家具、家电等各项生活用品的费用应该由男方和女方平等地分担	①	②	③	④
(4) 买车的费用应该由男方和女方平等地分担	①	②	③	④

2 | 韩国女性政策研究院

4-1 那么您认为这些费用该由谁来承担？

※ [G-CAWI] □ 回答范围限制：两者之和需为100%

评价项	男方	女方
(1) 婚礼的费用(婚纱、婚宴等费用)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2) 准备婚房的费用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3) 购置新婚家具、家电等各项生活用品的费用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4) 买车的费用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5 您对当前社会的婚礼文化(费用、仪式程序等)有什么看法？

- ① 非常简朴 ② 比较简朴 ③ 一般
④ 稍有些奢侈 ⑤ 过分铺张奢侈 ⑥ 不知道

6 在“生活方式及家庭形态”方面，您对下列各项内容的看法是？

评价项	完全不同意	不太赞同	基本赞同	非常赞同
(1) 不结婚，单身生活也不错	①	②	③	④
(2) 不结婚，男女同居的生活也不错	①	②	③	④
(3) 即使结了婚，也不是一定要孩子	①	②	③	④
(4) 未婚生子也没关系	①	②	③	④
(5) 婚姻生活应以两个家庭之间的关系为优先，夫妻双方当事人为其次	①	②	③	④

7 在“性别角色”方面，您对下列各项内容的看法是？

评价项	完全不同意	不太赞同	基本赞同	非常赞同
(1) 父亲和母亲一样有照顾子女的职责	①	②	③	④
(2) 女性与男性一样有赚钱养家的责任	①	②	③	④
(3) 夫妻两人应公平地分担家务事	①	②	③	④

II 对子女的价值观及态度

8 您认为一定要有孩子吗？

- ① 没有也无妨 ② 有比没有强 ③ 一定要有 ④ 不知道

9 一般来说，您认为有几个孩子是最理想的？

※ [G-CAWI] □ 回答范围限制：11人以上

- ① 理想的孩子人数： 人
② 不知道

10 在“孩子及养育孩子”方面，您对下列各项内容的看法是？

评价项	完全不赞同	不太赞同	基本赞同	非常赞同
(1) 生下孩子并抚养他长大，是一件有价值的事	①	②	④	⑤
(2) 为了老后能得到经济方面的赡养，需要有孩子	①	②	④	⑤
(3) 照顾孩子是一件辛苦的事情	①	②	④	⑤
(4) 因为孩子，可能无法做自己想做的事	①	②	④	⑤
(5) 抚养孩子会成为经济方面的负担	①	②	④	⑤

11 在“父母的责任”方面，您对下列各项内容的看法是？

评价项	完全不赞同	不太赞同	基本赞同	非常赞同
(1) 父母应承担子女的大学学费	①	②	④	⑤
(2) 父母应承担抚养费直至子女就业	①	②	④	⑤
(3) 父母应承担子女的婚礼费用	①	②	④	⑤
(4) 父母应承担子女婚房的费用	①	②	④	⑤
(5) 父母在子女结婚后仍有照顾他们的责任 (经济上的帮助，照看孙子、孙女等)	①	②	④	⑤

III 您对自己的婚姻及生育的看法

12 您到现在仍未结婚的原因是什么？请以此选出重要的两项。

第1位

第2位

- | | |
|---------------------------------|-------------------------|
| ① 收入太低 | ② 处于失业状态 |
| ③ 工作不稳定 | ④ 房子没准备好 |
| ⑤ 结婚经费(嫁妆、聘礼等)没准备好 | ⑥ 担心婚后生活成本提高 |
| ⑦ 担心结婚会影响自己的工作 | ⑧ 感觉难以兼顾婚姻生活和事业 |
| ⑨ 担心婚姻会减少个人闲暇时间 | ⑩ 认为自己的年龄结婚还太早 |
| ⑪ 错过了适婚年龄 | ⑫ 更想专注于做自己的工作和事业 |
| ⑬ 没有合适的人选 | ⑭ 因为婚姻制度是以丈夫的家庭为中心 |
| ⑮ 有残疾(身体或精神方面)或慢性病(包括瘫痪)的家人需要看护 | ⑯ 因为自己的健康问题(包括身心两方面的障碍) |
| ⑰ 其他(请填写: _____) | |

13 您有结婚的想法吗？

- ① 有

13-1 您想要结婚的原因是什么？请选出最重要的。

- ① 父母催婚
 ② 社会舆论压力
 ③ 结婚是人生必经之路
 ④ 想生孩子
 ⑤ 遇到了灵魂伴侣
 ⑥ 两个人的收入能享受更稳定的生活
 ⑦ 男方具有足够经济能力支撑整个家庭开支
 ⑧ 其他(请填写: _____)

13-2 如果结婚的话, 您打算多少周岁结？

回答范围限制: 不能低于受访者的年龄

满 周岁

- ② 以前曾经有过, 但现在没有
 ③ 以前没有, 现在也没有
 ④ 没有想过
 ⑤ 还没决定(不知道)

→ 至 14

14 如果条件允许的话, 婚后您想要几个孩子?

☞ [G-CAWI] □ 回答范围限制: 11人以上

- ① 想要的孩子人数: 人
- ② 不知道

14-1

☞ [G-CAWI] □ 仅对在 14 问中回答1人以上的受访者提问

您认为您的子女中必须要有儿子吗?

- ① 是 ② 否

14-2

您不愿意孩子或是只想要1个孩子的原因是什么?
请依次选出最重要的2项。

☞ [G-CAWI] □ 仅对在 14 问中回答0或1人的受访者提问

第1位

第2位

- | | |
|-------------------------|--------------------------------------|
| ① 收入太低 | ② 处于失业状态 |
| ③ 工作不稳定(非正式员工、临时工等) | ④ 为养育孩子准备合适的住房较困难 |
| ⑤ 孩子抚养及教育方面的开销大 | ⑥ 没有适合照顾孩子的人 |
| ⑦ 没有适合照顾孩子的设施 | ⑧ 担心生产和育儿会对自己的工作造成不利影响 |
| ⑨ 担心生育和照顾孩子会减少个人闲暇时间 | ⑩ 年龄太大, 不适合生孩子 |
| ⑪ 自己讨厌小孩 | ⑫ 夫妻二人世界的生活应该会很愉快 |
| ⑬ 因为家务事和育儿的分工不公平 | ⑭ 有残疾身体或精神方面或慢性 illness(包括癫痫)的家人需要看护 |
| ⑮ 因为自己的健康问题(包括身心两方面的障碍) | |
| ⑯ 其他(请填写: _____) | |

15 如果您结婚, 您认为父母会出钱支持您结婚的费用吗?

(结婚费用: 婚礼、聘礼或嫁妆、新婚家具及家电、买车等, 不包括买婚房)

- ① 全额支持 ② 部分支持 ③ 很难得到支持

16 如果您结婚, 您认为父母会出钱支持您买婚房吗?

- ① 全额支持 ② 部分支持 ③ 很难得到支持

IV 对生育相关政策看法

17 您认为国家在子女的养育方面应给到何种程度的支持？

- ① 完全没有支持的必要
- ② 不是很有支持的必要
- ③ 应提供一定程度的支持
- ④ 应全部支持
- ⑤ 不知道

18 您认为工作单位(公司、企业等)在子女的生育及抚养方面应给到何种程度的支持？

- ① 完全没有支持的必要
- ② 不是很有支持的必要
- ③ 应提供一定程度的支持
- ④ 应全部支持
- ⑤ 不知道

19 您认为在生育和抚养子女方面需要多大程度的支持？

支持内容	完全不需要	不太需要	有点需要	非常需要
(1) 抚养子女费用方面的现金补贴	①	②	③	④
(2) 增设适合照顾孩子的设施	①	②	③	④
(3) 提供适合照顾孩子的人	①	②	③	④
(4) 所得税扣除	①	②	③	④
(5) 产假	①	②	③	④
(6) 育儿假	①	②	③	④
(7) 陪产假	①	②	③	④

女性的婚姻生育价值观调查 | 7

V 受访者的一般特征

DQ 1-1 您的最高学历是？

- | | |
|--------|---------|
| ① 未入学 | ⑤ 高中毕业 |
| ② 小学毕业 | ⑥ 大专毕业 |
| ③ 初中毕业 | ⑦ 大学毕业 |
| ④ 中专毕业 | ⑧ 研究生毕业 |

DQ 1-2 您目前的经济活动状况如何？

- ① 就业 ② 未就业 → 至 **DQ 1-3**

DQ 1-2-1 您的职业是？

- | | |
|--------------------------------------|-------------------------|
| ① 雇主 (员工超过10人) | ⑥ 公务员、公职人员等 |
| ② 高层管理者(总负责人/理事等) | ⑦ 自由职业者/个体经营户 (员工未滿10人) |
| ③ 专职人员 (律师/会计师/教师/医生等) | ⑧ 全职主妇 |
| ④ 办公室文员 | ⑨ 学生 |
| ⑤ 生产及服务业务工作者
(蓝领: 生产/制造, 服务, 销售等) | ⑩ 退休 |
| | ⑪ 其他(请填写 _____) |

DQ 1-2-2 您每个月的平均收入(含税)是多少？

再次确认答案
 您每个月的平均收入(含税)是, 000元吗? *请确认期间和单位

元

DQ 1-3 您和父母一起生活吗？

- ① 是
② 否

DQ 1-4 您目前所居住的房子是？

- | | |
|----------|----------|
| ① 自有住房 | ② 租/住廉租房 |
| ③ 租/住亲友房 | ④ 租/住私人房 |
| ⑤ 集体宿舍 | ⑥ 其他 |

DQ 1-4-1

☞ [G-CAWI] □ 仅对 DQ 1-3 问中回答 '② 否', DQ 1-4 问中回答 '① 自有住房' 或 '② 租/住廉租房', '③ 租/住亲友房', '④ 租/住私人房' 的受访者提问

您现在居住的房子费用(购房费用、每月的房租等)是否接受了或正在接受父母经济上的支持?

① 是 ② 否

DQ 1-4-2

☞ [G-CAWI] □ DQ 1-4 问中回答 '① 自有住房' 的受访者提问

您所住的房子是您贷款购买的吗?

① 是 ② 否 → 至 DQ 1-5

DQ 1-4-2-1

您还有剩余的利息要还吗?

① 是 ② 否 → 至 DQ 1-5

DQ 1-4-2-2

您每月平均支付的贷款利息大约是多少?

☞ [G-CAWI] □ 再次确认答案
□ 您确定每月平均支付的贷款利息是, 000元吗? *请确认期间和单位

□ □ □ □ 元

DQ 1-4-3

☞ [G-CAWI] □ DQ 1-4 问中回答 '② 租/住廉租房', '③ 租/住亲友房', '④ 租/住私人房' 的受访者提问

您现在所住的房子每月支付的租金大约是多少?

☞ [G-CAWI] □ 再次确认答案
□ 您确定每月支付的租金是, 000元吗? *请确认期间和单位

□ □ □ □ 元

DQ 1-5

您有亲兄弟姐妹吗?

① 有 ② 没有 → 至 DQ 2-1

DQ 1-5-1

那么, 您有多少兄弟姐妹?

选 项	兄弟和姐妹的人数
(1) 兄弟的人数	□ □
(2) 姐妹的人数	□ □
(3) 共	□ □

DQ 2-4-2 您母亲目前的经济活动状况如何？

- ① 就业 ② 未就业 → **调查终止**

DQ 2-4-2-1 您母亲每个月的平均收入(含税)是多少？

☞ G-CAWI ☐ 再次确认答案
☐ 您母亲每个月的平均收入(含税)是. 000元吗？*请确认期间和单位

元

DQ 2-5 您有北京户口吗？

- ① 是 ② 否

DQ 2-5-2 您来北京多久了？

年 个月

非常感谢您参与本次调查。
我们一定会好好利用这份调查资料。